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4년 제2호



2024. 12.

제1부

2024년 조세행정 동향

I	서문(Introduction) / 3
II	역할(Responsibilities) 및 징수(Collection) / 5
III	등록(Registration) 및 신원확인(Identification) / 11
IV	조세행정 평가(Assessment) / 15
V	서비스(Services) / 24
VI	규정 준수 관리(Compliance management) / 39
VII	징수(Collection) / 56
VIII	분쟁(Disputes) / 68
IX	기관 구성(Institutional setups) 및 거버넌스(Governance) / 79
X	예산(Budget) 및 인력(Workforce) / 92
XI	텍스 갭 추정(Tax Gap Estimation) / 101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북미 / 123

- 1. 미국 123
 - 가. 자사주매입에 대해 소비세 부과 123
 - 나. 팁 소득(Tip Income) 비과세 법안 관련 보고서 발표 124
 - 다.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시행 관련 보고서 발표 125
 - 라. 법인 대체 최저한세(CAMT) 관련 제안 규정 발표 126
 - 마.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최종 규정 발표 128
 - 바. 에너지 세액공제 최종 규정 발표 129
- 2. 캐나다 130
 - 가.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시행 관련 법안 통과 130
 - 나. 심플파일(Simple File) 세정지원 서비스 확대 131
 - 다. 미국과의 분쟁 해결 협의에 대한 성명 발표 132
 - 라. 온실가스 배출 상한 규정 초안 발표 133

II 유럽 / 134

- 1. 영국 134
 - 가. 에너지 이익 부담금 인상안 발표 134
 - 나. 디지털 플랫폼 보고 규칙에 대한 지침 발표 135
 - 다. 2024년 가을 예산안 발표 136
 - 라. 필라2 추가세액 납부에 대한 지침 발간 138

목 차

2. 아일랜드	139
가. 2024년 여름 경제 성명서 발표	139
나. R&D 세액공제 인상 발표	140
다. 은행 부담금 적용기한 2025년으로 연장 발표	140
라. 2025년 예산안 발표	141
3. 스위스	143
가. 암호화자산 관련 자동정보교환 파트너 국가 결정에 대한 의견수렴 개시	143
나. 소득산입규칙(IIR) 2025년부터 적용 및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연기 발표	143
다. 노령유족연금(AHV) 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금융거래세 제정 반대	144
4. 프랑스	145
가. 음악 및 뮤직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과세 행정지침 발표	145
나. 역외 탈세 방조 처벌 규정에 대한 행정지침 발표	146
다. 2025년 예산안 발표	147
라.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정보교환 관련 법령 발표	149
5. 벨기에	149
가.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중간예납 개시 발표	149
나. DAC 6 및 DAC 7 관련 개정 법안 의회 제출	150
6. 룩셈부르크	151
가. 「글로벌최저한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151
나. 법인세율 인하 관련 세법 개정안 의회 제출	153
다. 2025년 예산안 발표	154
라. CbCR 질의응답 개정	156
7. 독일	157
가. 세법개정안 연방정부 승인	157
나. 전기자동차 인센티브 추가 발표	159
다. 필라2 규칙에 따른 모회사 통지를 위한 공식 양식 발표	159
라. 최저생계비 면제 관련 법안 발효	160

CONTENTS

8. 포르투갈	161
가. 자본 시장 강화 및 경제 활성화 관련 세금 패키지 승인	161
나. 원천세 세율 변경안 발표	164
다. 2025년 예산안 발표	165
9. 스웨덴	167
가. 소규모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맥주에 대한 세금 감면 제안	167
나. 2025년 예산안 의회 제출	168
다. 글로벌최저한세 개정안 승인	169
10. 노르웨이	170
가. 필라2에 대한 협의 개시	170
11. 덴마크	171
가. 필라2에 대한 협의 개시	171
나. 2025년 예산안 발표	172
다. 국내 항공 여객 운송에 0%의 부가가치세율 적용에 대한 공개 협의 개시	172
라. 2024/25년 정부 입법프로그램 발표	173
12. 핀란드	174
가. 2025년 예산안 초안 발표	174
나. TV세 및 공영방송서비스에 대한 VAT 개정안 공개 협의 개시	176
다. 2025년 예산안 의회 제출	176
라. DAC 8 이행에 관한 공개 협의 개시	178
13. 네덜란드	179
가. 전력 생산자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도입 법안 승인	179
나. 뮤추얼펀드에 대한 조세 중립적 전환 승인 법령 개정	179
다.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	180
라. 필라1 Amount B 채택에 따른 세금 영향 발표	181
14. 그리스	182
가. 2024년 8월 한 달 전기 생산자에 대한 특별 징수 제정	182

15. 오스트리아	183
가. 2025년 세금 감면 법안 승인	183
나. 필라2 CbCR 세이프하버 규정 관보 게재	184
16. 스페인	185
가. DAC8 시행을 위한 초안 발표	185
나. 횡재세 연장 등 세법개정안 발표	186
17. 이탈리아	187
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규칙 발표	187
나.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지침 발표	187
다. 2024년도 일부 세법개정안 승인	188
라. 동일 납세자 명의 계좌 간 단순 외화 이전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 제외	190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 191

1. 일본	191
가. 이노베이션 박스 관련 규정 공포	191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개정 제안	192
2. 중국	193
가. NEEQ 거래 주식 배당금, 양도소득 감면 혜택 연장 발표	193
나.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및 토지 부가세 규정 완화	193
3. 싱가포르	194
가. 2025년 다국적 기업 최저한세 세부 사항 발표	194
나. 「경기 부양 인센티브법」 개정안 의회 통과	195
다.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법 관보 발표	196
4. 인도	197
가. 직접세 세금 조정 제도(VSV) 시행	197

- 나. 2024~2025년도 「소득세법」에 따른 공정가액 범위 명확화 198
- 5. 인도네시아 198
 - 가. 선도 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 연장 198
- 6. 뉴질랜드 201
 - 가. 경차 유류소비세 도로사용료(RUC)로 전환 201
 - 나. 독립계약자 지위 관련 「고용관계법」 개정 계획 발표 201
 - 다. 과세 목적 거주 관련 해석서 초안 발표 202
- 7. 호주 203
 - 가. 국세청 내 필라2 컨설팅 관련 실무단 설치 203
 - 나. 대규모 납세자 대상 신규 GST 보충 신고 관련 지침 제공 204
 - 다. 필라2 관련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안 승인 205

IV 국제기구 / 207

- 1. OECD 207
 - 가. 필라1 Amount B 문서 및 필라2 행정지침·GloBE 규칙 Q&A 발간 · 207
 - 나. BEPS Action 5 유해조세환경 관련 최근 진행 상황 발표 208
 - 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XML 스키마 보고서 발간 209
- 2. EU 210
 - 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행정협력지침 개정에 관한 이사회 지침 채택 210

제1부

2024년 조세행정 동향

<표 1-II-1> 조세행정당국이 담당하는 세목별 비율(2022년) 5

<표 1-II-2> 조세의 징수 외 조세행정당국의 역할(2022년) 6

<표 1-II-3> 조세행정당국의 역할 확대 사례 6

<표 1-II-4> 조세범죄수사 담당기관(2022년) 7

<표 1-II-5> 총 세입징수액 변화(2018~2022년) 7

<표 1-II-6>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되는 소득유형(2022년) 10

<표 1-II-7>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비율(2018~2022년) 10

<표 1-II-8> 원천징수 절차 지원 10

<표 1-III-1> 등록 채널 종류(2022년) 12

<표 1-III-2> 조세의 징수 외 조세행정당국의 역할(2022년) 12

<표 1-III-3> 디지털 신원확인(Digital Identities) 사용(2022년) 13

<표 1-III-4> 디지털 신원 인증 및 권한 부여(2022년) 14

<표 1-III-5> 신원관리 14

<표 1-IV-1> 세목별 평균 전자 신고율(2014년 및 2022년) 16

<표 1-IV-2>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전자 채널의 사용 사례 16

<표 1-IV-3> 미리 채움에 사용되는 항목(2022년) 17

<표 1-IV-4> 발전된 미리채움신고서 사례 18

<표 1-IV-5> 오류 감지 기술 사례 19

<표 1-IV-6> 세목별 신고기한 준수율 비교(2018~2022년) 20

<표 1-IV-7> 세목별 납부기한 준수율 비교(2018~2022년) 22

CONTENTS

〈표 1-IV-8〉 부가가치세 환급 처리 방식	23
〈표 1-V-1〉 서비스·지원 전략과 서비스 제공 기준(2022년)	24
〈표 1-V-2〉 납세자의 선호도 이행 및 충족 사례	25
〈표 1-V-3〉 서비스 채널별 수요(2018~2022년)	26
〈표 1-V-4〉 온라인 서비스 제공(2022년)	27
〈표 1-V-5〉 자동 응답 온라인 서비스(2022년)	28
〈표 1-V-6〉 셀프 서비스 강화 사례	28
〈표 1-V-7〉 가상 어시스턴트, 인공지능, API 활용(2022년)	30
〈표 1-V-8〉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례	31
〈표 1-V-9〉 교육 및 기업 지원 이니셔티브(2022년)	32
〈표 1-V-10〉 교육 및 지원 이니셔티브 사례	32
〈표 1-V-11〉 정부 협업 서비스(2022년)	34
〈표 1-V-12〉 제3자 개발자와의 협업(2022년)	35
〈표 1-V-13〉 서비스 향상을 위한 API 활용 및 제3자 개발 협업 사례	36
〈표 1-V-14〉 포괄적 서비스(2022년)	37
〈표 1-V-15〉 포괄적 서비스 사례	38
〈표 1-VI-1〉 조세행정당국의 규정 준수 위험 관리 전략(2022년)	40
〈표 1-VI-2〉 텍스 캡 분석(2022년)	41
〈표 1-VI-3〉 무작위 감사(2022년)	42
〈표 1-VI-4〉 세무 행정의 데이터 활용 소스	42
〈표 1-VI-5〉 데이터 거버넌스(2022년)	43
〈표 1-VI-6〉 분석 목적의 빅데이터 및 AI 사용(2022년)	45
〈표 1-VI-7〉 세무 행정에 데이터 과학을 활용하는 국가 비율 변화(2018년, 2022년) ..	46
〈표 1-VI-8〉 신고서 제출 이후, 공식 감사 이전 조세행정당국의 개입(2022년)	49
〈표 1-VI-9〉 규정 준수에 대한 일반적 접근(2022년)	50
〈표 1-VI-10〉 납세자의 비공개에 대한 행정 제재(2022년)	51

표 목차

〈표 1-VI-11〉 개입 효과성 측정(2022년)	52
〈표 1-VI-12〉 세무조사 수정율 및 추가 징수세액(2018~2022년)	53
〈표 1-VI-13〉 세무조사 사례	53
〈표 1-VI-14〉 조세범칙조사 기소건수 및 전년 대비 변화율(2018~2022년)	54
〈표 1-VI-15〉 납세규정 준수 부담에 대한 평가(2022년)	55
〈표 1-VII-1〉 징수관리 개선 사례	57
〈표 1-VII-2〉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기능	58
〈표 1-VII-3〉 평균 체납율의 변화(2018~2022년)	60
〈표 1-VII-4〉 세목별 순세수 대비 기말 평균 체납 징수액 비율 변화 (2018~2022년)	63
〈표 1-VII-5〉 납세자의 체납액 납부 지원 사례	64
〈표 1-VII-6〉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체납액 징수 사례	65
〈표 1-VII-7〉 예방적 접근 사례	67
〈표 1-VIII-1〉 분쟁 해결: 사용 가능한 검토 체계(2022년)	69
〈표 1-VIII-2〉 분쟁해결 사건 관리 사례	69
〈표 1-VIII-3〉 분쟁해결: 2018~2022년 동안 개시된 사건 수 변동	71
〈표 1-VIII-4〉 분쟁해결: 2018~2022회계연도 말 계류 중인 사건 수 변동	71
〈표 1-VIII-5〉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자 1천명당 개시된 내부 검토 사건 수의 평균 변화(2018~2022년)	73
〈표 1-VIII-6〉 세법 적용에 대한 결정(2022년)	76
〈표 1-VIII-7〉 납세자 분류별 협력적 납세순응 접근방식(2022년)	77
〈표 1-IX-1〉 캐나다 - 경영위원회	81
〈표 1-IX-2〉 세무행정기관에 위임된 권한(2022년)	82
〈표 1-IX-3〉 내부 통제 기능(2022년)	84
〈표 1-IX-4〉 세무행정 및 윤리 사례	84
〈표 1-IX-5〉 외부 통제 및 기타 감독(2022년)	85

CONTENTS

〈표 1-IX-6〉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88
〈표 1-IX-7〉 납세자의 권리 및 불만 처리를 위한 특별 기구	89
〈표 1-IX-8〉 세무행정과 납세자 간의 관계에 대한 사례	89
〈표 1-X-1〉 2018~2022년 각국의 조세행정당국 운영 관련 지출 변화	92
〈표 1-X-2〉 2018~2022년 조세징수비용 비율 변화	94
〈표 1-X-3〉 2018~2022년 평균 인력 감소 비율 및 채용 비율	97
〈표 1-XI-1〉 정책 갭(Policy Gap)의 예시	102
〈표 1-XI-2〉 예시-비준수 원인별 택스 갭	104
〈표 1-XI-3〉 각국의 택스 갭 팀 창설 연도	105
〈표 1-XI-4〉 성공적인 택스 갭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	106
〈표 1-XI-5〉 예시 - 무작위 감사 프로그램	108
〈표 1-XI-6〉 미탐지 보정 계수 또는 인상 계수(Uplift Factor)	110
〈표 1-XI-7〉 미탐지 보정 계수(non-detection multiplier) 산출 방법	111
〈표 1-XI-8〉 택스 갭 추정의 주요 도전 과제	111
〈표 1-XI-9〉 미신고 노동으로 인한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PIT) 갭	114
〈표 1-XI-10〉 법인세 갭 추정 사례	115
〈표 1-XI-11〉 부가가치세 갭 추정 사례	116
〈표 1-XI-12〉 소비세 갭 추정 사례	117
〈표 1-XI-13〉 기타 예시	117
〈표 1-XI-14〉 택스 갭 사용 예시	118
〈표 1-XI-15〉 택스 갭 측정에 대한 COVID-19 팬데믹의 영향	119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표 2-II-1> 룩셈부르크 개정 법인세율 153
<표 2-II-2> 포르투갈 장기 보유 증권 개인소득세 소득공제 비율 및 실효세율 161
<표 2-II-3> 저가 임대료에 할당된 적격 자산 비중에 따른 소득공제율 162
<표 2-II-4> 연간 맥주 생산량에 따른 세금 감면율 167
<표 2-II-5> 핀란드 2025년 소득세 소득기준 및 누진세율 변화 177
<표 2-II-6> 에너지 절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188
<표 2-III-1> 투자 수준에 따른 조세 감면 199

제1부

2024년 조세행정 동향

[그림 1-II-1] 국내총생산 대비 세수 비율(2022년)	8
[그림 1-II-2] 국내총생산 및 총 정부세수 대비 세수 비율(2022년)	8
[그림 1-II-3] 주요 수익 유형별 평균 세수 비율(2022년)	9
[그림 1-III-1] 인구 비율에 따른 개인 납세자 등록 비율(2022년)	11
[그림 1-IV-1] 각 관할권의 주요 세목별 신고기한 준수율(2022년)	21
[그림 1-IV-2] 각 관할권의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기한 준수율(2022년)	21
[그림 1-V-1] 가상 어시스턴트의 유형(2022년)	30
[그림 1-VII-1] 총 순세수 대비 총 체납액 비율-비율이 50% 초과하는 정부(2022년)	60
[그림 1-VII-2] 총 순세수 대비 총 체납액 비율-비율이 50% 미만인 정부(2022년)	61
[그림 1-VII-3] 총 연말 체납액에 대한 총 연말 징수 가능한 체납액(2022년)	61
[그림 1-VII-4] 총 체납액 추이(2021~2022년)	62
[그림 1-VII-5] 납세자 대상 체납액 납부 지원 관련 권한(2022년)	64
[그림 1-VII-6] 체납액 강제적 납부 관련 권한(2022년)	66
[그림 1-VIII-1] 내부 검토 절차: 회계연도 말의 사건 수 변화(2021~2022년)	72
[그림 1-VIII-2] 외부기구의 독립 검토: 회계연도 말의 사건 수 변화(2021~2022년)	72
[그림 1-VIII-3]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자 1천명당 개시된 내부 검토 사건의 수(2022년)	73
[그림 1-VIII-4] 행정당국의 승소 사건 비율(2022년)	74
[그림 1-IX-1] 제도적 체계(2022년)	81
[그림 1-IX-2] 통제 및 기타 감독 기능(2022년)	87

그림 목차

[그림 1-X-1] 총 운영 관련 지출 대비 인건비(2022년)	93
[그림 1-X-2] 국가별 조세징수비용 비율 변동 그래프(2022년)	94
[그림 1-X-3] 조세행정당국 직원의 연령(2022년)	96
[그림 1-XI-1] 택스 갭을 유발하는 불이행 요인	103
[그림 1-XI-2] 총 택스 갭(Gross tax gap) vs 순 택스 갭(Net tax gap)	104
[그림 1-XI-3] 택스 갭을 추정하는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	107
[그림 1-XI-4] 데이터 원본별 상향식 방법론의 수	109
[그림 1-XI-5] 관련 택스 갭 구성 요소를 측정하는 관할권 수	113



제1부

2024년 조세행정 동향 Tax Administration 2024



I 서문(Introduction)

- ▣ OECD 조세행정 시리즈(Tax Administration Series, 이하 TAS)는 조세행정당국이 경제 전반의 디지털화, 기술 혁신 및 COVID-19 팬데믹과 같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다뤄 왔으며, 그 결과 조세행정당국은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자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그 운영모델을 변경하고 있음

 - ▶ 특히 이번 2024년 발간본에서는 2023년 국제 조세행정조사(International Survey on Revenue Administration, 이하 ISORA)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세행정이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함
 - 거버넌스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 규정 준수 위험의 이해와 관리
 - 규정 미준수 방지와 해결
 - 납세자 서비스 선호도를 파악하고 충족
 - 인력관리
- ▣ TAS에 포함된 조세행정당국은 ISORA 2023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것과 함께 조세행정 혁신사례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사례는 전 세계 조세행정당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 또한 이번 TAS 개정판에서는 조세기술 이니셔티브 목록(Inventory of Tax Technology Initiatives, 이하 ITTI)을 사용하였으며, ITTI는 전 세계 조세행정의 디지털화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호간 학습과 협력을 통한 조세행정의 발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함
- ▣ 조세행정의 운영방향과 관계없이 조세행정의 주된 목표는 세금을 적시에 정확하게 징수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하의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각국의 조세행정에 대해 살펴봄

 - ▶ (제2장) 조세행정당국이 담당하는 조세의 범위 및 통계값과 세금징수 이외의 역할에 대해 다룸

- ▶ (제3장) 모든 납세자의 등록 및 신원확인에 관한 조세행정당국의 업무를 설명하고, 조세행정당국이 디지털 신원 확인에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해 다룸
- ▶ (제4장) 세금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조세 평가 기능을 검토, 신고·납부를 위한 e-채널 사용을 살펴보고 조세행정당국의 미리채움신고서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신고·납부 적시성에 대해 설명함
- ▶ (제5장) 조세행정당국이 납세자가 스스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는지와 이를 어떻게 장려하는지에 대해 설명함
- ▶ (제6장) 조세행정당국이 데이터와 새로운 기술 도구를 사용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식별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서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와 세금 신고서 제출 전후 의무 불이행을 방지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함
- ▶ (제7장) 조세행정당국의 체납 징수 방법과 최근 체납 징수 기능의 특징을 살펴보고, 조세행정당국의 징수권과 그 행사방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함
- ▶ (제8장) 불가피하게 납세자와 조세행정당국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납세자 권리 보호와 조세행정당국의 권한행사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해 다룸
- ▶ (제9장) 조세행정당국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부구조와 제도적 장치에 대해 살펴봄
- ▶ (제10장) 조세행정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봄
- ▶ (제11장) 조세 격차의 개념과 이에 대한 연구 및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조세행정당국이 조세 격차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봄

II 역할(Responsibilities) 및 징수(Collection)

- ▣ 조세행정의 주된 목적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나, 조세행정당국의 업무 범위는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왔음
 - ▶ 이 장에서는 조세행정당국이 수행하는 역할과 순 세입징수액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규정 준수를 위한 원천징수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봄

1 조세행정당국의 역할

- ▣ (세금의 징수)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행정당국의 업무 범위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TAS에 포함되는 조세행정당국이 징수하는 세목 유형은 <표 1-II-1>과 같음

<표 1-II-1> 조세행정당국이 담당하는 세목별 비율(2022년)

(단위: %)

개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	내국 소비세	차량세	부동산세	부유세	상속·증여세 및 기타 세금	기타 상품 및 서비스세	사회 보장 기여금	관세
98.3	100.0	94.8	63.8	46.6	44.8	24.1	48.3	55.2	39.7	44.8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28, Table 2.1. 재인용

- ▣ (세금징수 외 역할) 많은 국가에서 조세행정당국은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 이외에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조세행정당국은 더욱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조세행정당국은 일반적으로 세금 징수 이외에도 재산의 평가(예: 부동산 세금 관리

관련), 납세자에게 경제적 혜택(예: 복지 혜택 제공)을 제공하거나 정부 기관의 대출(예: 학자금 대출 또는 자녀 양육비)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조세 시스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역할(예: 도박 활동 또는 인구 등록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기도 함

- ▶ 조세행정당국이 수행하는 역할의 확대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주된 역할인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소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견고한 관리체계, 위험관리 및 적절한 자원배분이 필요함

〈표 1-II-2〉 조세의 징수 외 조세행정당국의 역할(2022년)

(단위: %)

복지	아동 지원	부동산 평가	학자금 대출	인구 대장	퇴직 저축	복권·도박 게임·카지노	국유재산 대장관리	차량 등록
13.8	8.6	27.6	8.6	5.2	12.1	27.6	6.9	1.7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29, Table 2.2. 재인용

〈표 1-II-3〉 조세행정당국의 역할 확대 사례

국가	내용	
브라질	Sinter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nter 프로그램은 브라질 연방 국세청(RFB)에서 관리하는 도시 및 농촌 부동산의 지리 및 재무데이터를 통합한 공공시스템으로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환경 개선 - 토지 정규화에 대한 정보, 삼림 벌채 및 불법 화재 지역 매핑, 아마존 열대 우림의 핫스팟, 원주민 및 기타 전통 공동체에 대한 정보 - 토지 강탈, 자금 세탁, 탈세 및 광물 밀수 퇴치 지원 - 등록코드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법적 확실성 향상 - 신뢰할 수 있고 포괄적인 부동산 정보를 적시에 제공
이탈리아	부동산 디지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이후 이뤄진 부동산 매매 시 신고된 가격 및 매매된 매물들의 주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음 • OMI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매 6개월마다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및 임대 시세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
한국	복지세정 관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의 운영을 담당함 • 실시간 소득 확인 시스템을 통해 개별 근로자의 소득 정보를 월 단위로 수집하며, 이 정보를 사회 보험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복지혜택이 필요한 개인을 적시에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p. 29~30 저자 요약 작성

㉓ **(조세 범죄 수사)** 조세행정당국은 건전한 금융 시스템의 수호자로서 자금 세탁, 부정부패, 테러 자금 조달 및 기타 금융 범죄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세범죄 수사에 중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 ▶ ISORA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의 조세행정당국이 직접 또는 다른 기관(경찰이나 검찰 등)의 지시와 권한에 의해 단독으로 조세범죄 수사에 관여하고 있으며, 조세행정당국에 조세범죄수사권이 없는 경우 경찰이나 검찰 등 타 기관이 수사업무를 수행함

〈표 1-II-4〉 조세범죄수사 담당기관(2022년)

(단위: %)

조세행정당국이 수사권을 갖고 조세범죄수사를 직접 담당	타 기관의 지시 또는 권한에 따라 조세행정당국이 조세범죄수사를 담당	조세행정당국 이외의 기관이 조세범죄수사를 담당
43.1	17.2	44.8

주: 조세범죄 및 형사소송 여부에 따라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지는 국가의 경우 복수응답이 가능하여 조세범죄 수사 담당기관의 합계가 100%를 초과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31, Table 2.3. 재인용

2 세입징수

㉓ **(세수 변화)** 조세행정당국의 세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증가하였는데, 이는 COVID-19 팬데믹 당시 많은 정부에서 봉쇄 조치를 도입하고 사업체에 강제적으로 폐쇄 명령을 내림으로써 매출 및 과세 소득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이 회복된 것에 기인함

〈표 1-II-5〉 총 세입징수액 변화(2018~202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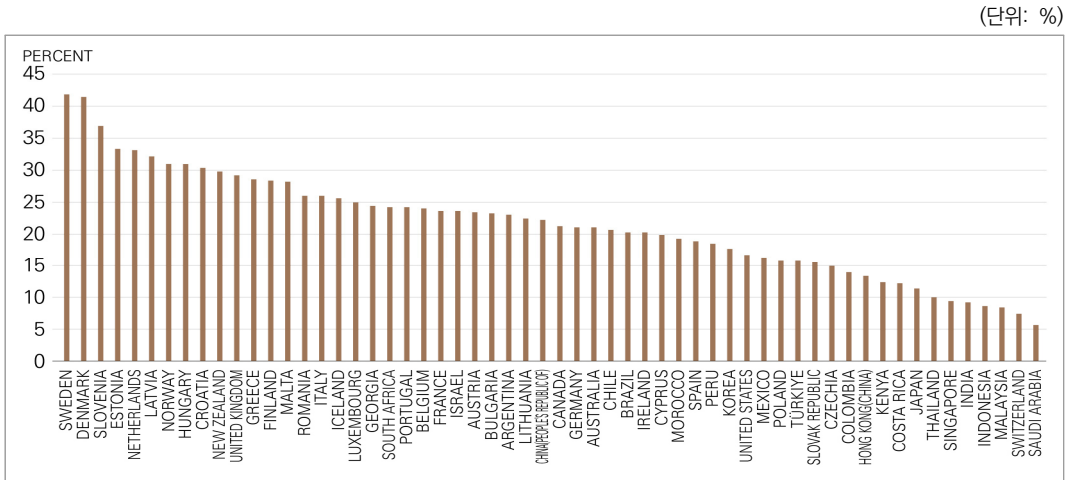
변동	2018~2019	2019~2020	2020~2021	2021~2022
증가(조세행정당국 비율)	96.5	22.8	94.7	96.5
감소(조세행정당국 비율)	3.5	77.2	5.3	3.5
평균 비율 변동	+6.2	-3.8	+17.2	+17.3

주: 이 표는 관할 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인도의 간접세 위원회 데이터는 2021 회계연도부터만 제공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32, Table 2.4. 재인용

▣ (GDP 대비 세수 비율)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행정당국이 거둬 들인 세수는 10% 미만에서 40% 이상(스웨덴, 덴마크)이며, 평균 22%인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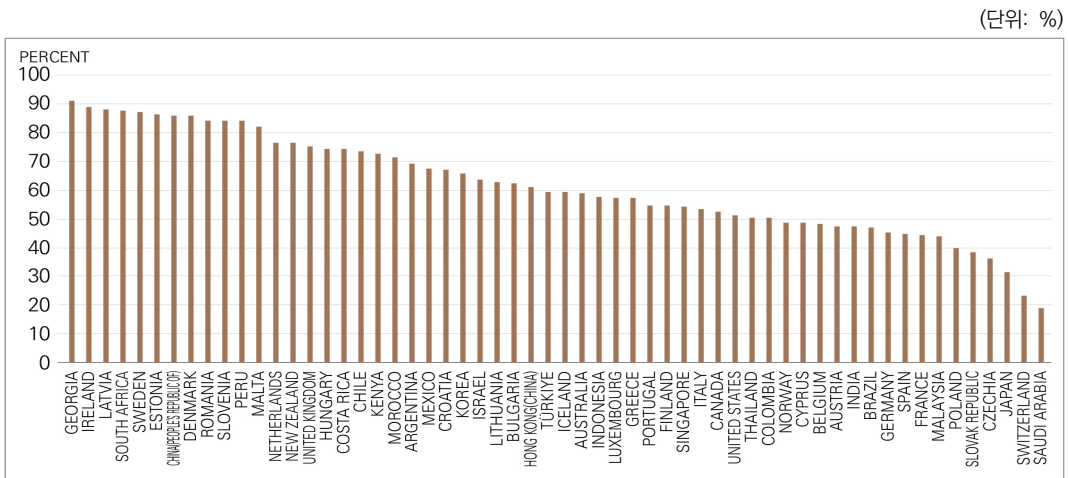
[그림 1-11-1] 국내총생산 대비 세수 비율(2022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33, Figure 2.1. 재인용

▣ (총 세수 비율) 보고된 국가들 중 4분의 3 이상에서 조세행정당국이 주된 세입 징수 기관이었으며, 42개의 조세행정당국에서 2022년에 총 정부 세입의 50%를 초과하는 세수를 보고하였고 평균 62%인 것으로 확인됨

[그림 1-11-2] 국내총생산 및 총 정부세수 대비 세수 비율(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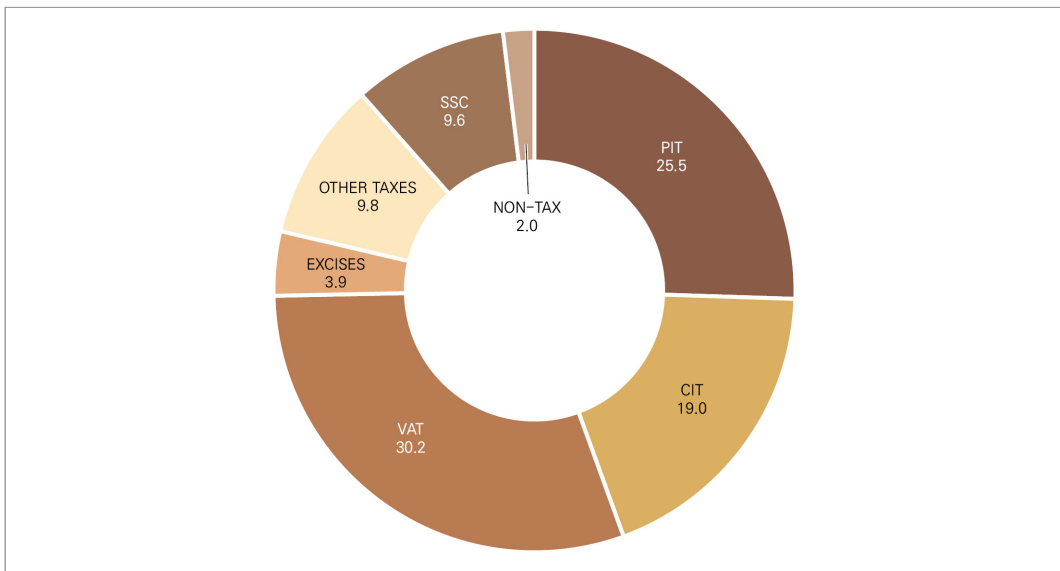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33, Figure 2.2. 재인용

- ▣ (세목별 비율) 보고된 국가들 중 43%의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36%의 국가에서 개인 소득세를 징수하였으며, 이들 주된 세목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부가가치세 30%, 개인소득세 26%임
- ▶ 그 외 주된 세목은 법인세(19%)와 사회보장기여금(10%)이며, 많은 국가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은 조세행정당국 이외의 기관이 징수하므로 이 보고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표시되었으나, 이는 조세행정당국의 주된 수입원 중 하나에 해당함

[그림 1-11-3] 주요 수익 유형별 평균 세수 비율(2022년)

(단위: %)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34, Figure 2.3. 재인용

3 징수간소화: 원천징수

- ▣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 제도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원금(예: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의 일부를 조세행정당국에 직접 납부하는 세금임
- ▶ <표 1-II-6>은 원천징수 제도의 적용이 되는 소득유형을 나타낸 것으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표 1-II-6〉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되는 소득유형(2022년)

(단위: %)

근로	배당금	이자	부모	특정 사업소득	로열티 특허	주식매각/ 매입	부동산 매매	기타 소득
91.4	82.8	77.6	39.7	34.5	67.2	29.3	25.9	43.1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35, Table 2.5. 재인용

▣ (원천징수 규모) 징수 효율화를 위해 원천징수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오신고 및 과소납부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 원천징수제도를 통하더라도 오신고 및 과소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자동화의 확대, 데이터의 교차 검증 강화, 범정부적 접근방식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음
- ▶ 〈표 1-II-7〉은 개인소득세 징수액 대비 원천징수 세액의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2022년에는 개인소득세 총 징수액의 약 80%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지난 5년 동안 유지되었음

〈표 1-II-7〉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비율(2018~2022년)

2018	2019	2020	2021	2021
79.2	78.7	80.7	80.6	80.5

주: 이 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보를 제공한 39개 국가에 대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의 평균비율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35, Table 2.6. 재인용

〈표 1-II-8〉 원천징수 절차 지원

국가	내용
한국	디지털 기술을 통한 소득세 납부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국세청은 납세자의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등과 같은 증빙 서류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공함 • 2022년, 국세청은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연말정산 데이터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얻기 위해 국세청 포털 사이트(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게 됨
영국	Pay As You Earn 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신규 구직자 7명 중 1명은 잘못되거나 누락된 세금코드를 발급받아 왔으나, Pay As You Earn 기록 보관시스템을 개선하여 HM Revenue & Customs(HMRC)가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자동으로 새로운 코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p. 35~36 저자 요약 작성

III 등록(Registration) 및 신원확인(Ident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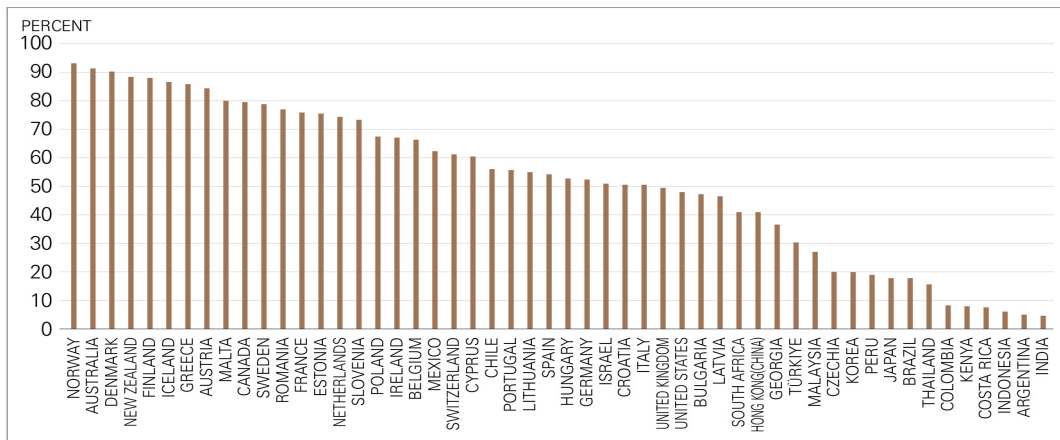
- ▾ 납세자를 등록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은 자체 검증,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신고 및 대사 등 납세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함
 - ▶ 이 장에서는 납세자 등록 및 신원확인에서 중요한 등록 수준, 등록 채널, 신원 관리 를 포함하여 디지털 혁신이 이러한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함

1 등록 수준

- ▾ 효과적인 등록 시스템은 '시스템의 일부'인 납세자를 관리하고 아직 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세금 신고가 필수가 아닌 시스템에서도 개인 과 모두에 대한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그림 1-III-1]은 전체 인구 대비 등록된 개인 납세자의 비율을 보여주며, 이는 조세 행정 시스템이 다른 정부 부서와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지와 조세 목적상 소득 기준이 무엇인지를 반영함

[그림 1-III-1] 인구 비율에 따른 개인 납세자 등록 비율(2022년)

(단위: %)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38, Figure 3.1. 재인용

2 등록 채널

- ▣ 대부분의 국가는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등록 채널을 하나 이상 운영 중이며 97%의 국가에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면 등록이 여전히 중요한 채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온라인 등록의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각국에서는 통합된 디지털 프로세스(사우디에서는 온라인으로만 등록 가능)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채널로의 전환은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표 1-III-1〉 등록 채널 종류(2022년)

(단위: %)

온라인	전화	메일주소	메일/우편	대면	기타 채널
96.6	53.4	56.9	63.8	93.1	37.9

주: 등록 채널이 항상 모든 세금 유형이나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님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39, Table 3.1. 재인용

3 타 정부기관과의 통합

- ▣ 각 조세행정당국은 최신의 조세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타 정부기관과 정보를 교환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위한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음
 - ▶ 2022년 기준, 약 70%의 조세행정당국에서 사업자등록 또는 인구등록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의 인구 또는 재산등록부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음

〈표 1-III-2〉 조세의 징수 외 조세행정당국의 역할(2022년)

통합 데이터베이스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할 경우 그 유형				
	인구대장	재산대장	사업자등록부	자동차등록부	기타
70.0	71.4	62.9	82.9	68.6	28.6

주: 이 표는 ITTI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52개 관할구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40, Table 3.2. 재인용

- ▣ 각국의 정부가 납세자 주소 및 은행 정보 등 조세행정당국이 유지·관리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개인·법인에게 연락하여 직·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 전반의 범정부적 통합이 늘어나고 있음
 - ▶ 정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로 정부기관 중 다수는 납세자가 법인 등록을 하거나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동시에 납세자로 등록되는 통합시스템을 갖추거나, 납세자로 등록되는 경우 다른 정부 또는 제3의 부서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표 1-III-3〉 디지털 신원확인(Digital identities) 사용(2022년)

납세자 유형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위해 디지털 신원확인(DI)을 사용해야 함	서비스 액세스에 사용되는 DI는 다음에서 제공 가능(복수답변 가능)			조세행정당국에서 제공하는 DI를 다른 서비스 액세스에 사용	
		조세행정	기타 정부기관	민간단체	기타 정부기관	민간단체
개인	100.0	68.6	62.7	39.2	37.1	14.3
사업자	94.1	66.7	50.0	35.4	46.9	9.4

주: 이 표는 ITTI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52개 관할구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41, Table 3.3. 재인용

4 신원관리

- ▣ 모든 조세행정당국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한 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다단계 인증을 통해 납세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 고유의 생체 인식 정보를 사용하기도 함
 - ▶ 〈표 1-III-4〉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원을 인증한다는 것과 특정 유형의 인증방법을 사용하여 디지털 ID를 확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87%는 비밀번호 기반의 인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행정부는 안면 인식이나 지문 인식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보안 수준에 따라 다양한 인증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1-III-4〉 디지털 신원 인증 및 권한 부여(2022년)

(단위: %)

암호 기반	조세행정당국에서 사용하는 인증방법					보안 수준에 따라 다양한 인증방법 사용	제3자가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 하도록 승인
	신분증	모바일앱	얼굴 인식	지문	다단계 인증		
86.5	38.5	42.3	13.5	13.5	61.5	50.0	86.5

주: 이 표는 ITTI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52개 관할구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41, Table 3.4. 재인용

〈표 1-III-5〉 신원관리

국가	내용	
칠레	디지털 대표를 위한 플랫폼	• 칠레의 '디지털 대표를 위한 플랫폼'을 통하면 사용자는 디지털 대리인이라고 하는 승인된 제3자에게 세금 신고를 위임할 수 있음
인도	e-검증 시스템	• 인도는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인 e-Verification을 도입함으로써 온라인으로 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고서의 제출, 응답 및 요청과 같은 기타 기능을 확인할 수 있음
네덜란드	회사 여권	• 네덜란드는 기업가가 은행, 보험회사 및 조세 당국 등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회사여권제도를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의 신원에 대한 법적 확실성, 다양한 당사자의 중복 서류 작업 요청 감소, 데이터 공유의 안전성과 같은 이점을 제공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p. 42~43 저자 요약 작성

5 디지털 신원확인 시스템에 대한 공통 접근

☞ 조세 제도 운영에 있어서 디지털 신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① 정부 전반에 걸쳐 공유되며 ② 정부 간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③ 정부와 제3자 간 사용이 가능한 디지털 신원확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 이러한 공통적인 접근방식을 구축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가 조세행정당국에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조세행정당국이 더 정확한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게 됨
- ▶ 예를 들어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와 공유/기 이코노미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하여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조세행정의 디지털 신원확인 시스템을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에 통합함으로써 사업자는 상호간 신원확인에 대한 확신을 높일 수 있으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할 수 있음

IV 조세행정 평가(Assessment)

- ▣ 본 장에서는 세금신고 등 조세행정의 디지털화와 자동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 다수의 조세행정당국은 전자 신고 및 납부 시스템, 미리채움신고서, 신고 오류 감지 시스템, 환급 시스템 등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고 있음
 - 납세자의 전자 채널 사용과 기한 내 신고 및 납부 준수율을 분석함
 - 발전된 미리채움신고서와 신고 오류를 방지하는 예측 기술의 사례를 소개함
 - 환급시스템 구축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함

1 전자 채널의 사용

- ▣ 다수의 관할권에서는 납세자에게 신고 및 납부 시 전자채널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 **(신고)** 관할권의 약 4분의 3에서 법인세(CIT), 원천세(PAYE), 부가가치세(VAT)의 전자신고를 의무화하고 관할권의 절반 정도에서 개인소득세(PIT)의 전자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 ▶ **(납부)** 관할권의 약 3분의 2에서 법인세(CIT), 원천세(PAYE), 부가가치세(VAT)의 전자납부를 의무화하고 관할권의 절반 정도에서 개인소득세(PIT)의 전자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음
- ▣ 개인납세자에 비해 법인납세자의 전자채널 사용률이 높고 전자채널의 사용은 행정부의 행정 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행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음
 - ▶ **(신고)** 2014년 대비 2022년 주요 세목의 평균 전자신고율은 약 17~23%p까지 크게 증가함
 - 주요 세목의 전자신고율이 100%에 달하는 행정부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함

- ▶ **(납부)** 납부 건수와 납부금액을 측정한 결과 2022년에는 약 90%가 전자 방식으로 납부가 이루어 짐
 - 특히 납부세액이 큰 납세자의 전자 납부 비율이 높음
- ▶ 전자 채널이 아닌 종이로 제출되는 신고서의 양은 여전히 많지만, 이 수치는 전자 채널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행정부가 늘어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데이터를 제공한 관할권의 자료에 따르면 종이로 제출되는 신고서는 약 7천만건임

〈표 1-IV-1〉 세목별 평균 전자 신고율(2014년 및 2022년)

(단위: %)

세목	2014년	2022년	변화율
개인소득세(31개)	64.5	87.4	+22.9
법인세(31개)	78.4	95.2	+16.8
부가가치세(29개)	81.8	99.0	3+17.2

주: 2014년과 2022년 동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할권의 평균 전자신고율로, () 안의 숫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할권의 수입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47, Table 4.3. 재인용

▣ 보고서에서는 캐나다와 스페인의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전자 채널의 사용 사례를 소개함

〈표 1-IV-2〉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전자 채널의 사용 사례

국가	주제	내용
캐나다	'과소사용에 대한 주택보유세(UHT)' 전자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HT의 과세대상자는 주로 비거주자인데 비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자신고 옵션이 부재한 상황이었음 • 캐나다 국세청(CRA)은 DAC(Digital Access Code)을 사용하여 UHT의 신고서를 전자 제출할 수 있는 웹 양식을 개발함 • 2023년 11월 현재, CRA는 약 3만건의 전자 신고서를 접수함
스페인	단일유로화지불지역(SEPA)의 결제 방식을 이용한 전자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PA의 결제방식을 이용하여 납세자가 해외에 거주할 때 거주지 관할 구역에 있는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스페인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가 SEPA 내에 있는 경우 납부의무를 쉽게 준수할 수 있게 되어 납부 시 스페인 내의 은행 계좌가 있어야 했던 문제를 해결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p. 48~49, 저자 요약 작성

2 미리채움신고서

- ▣ 지난 20년 동안 세무신고 행정에 있어 개인소득세의 ‘미리채움신고서’¹⁾는 중요한 혁신 중 하나임
 - ▶ 일부 조세행정당국은 완전한 미리채움신고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세금 계산의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법률을 모색하고 있음
- ▣ 미리 채움의 범위는 행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제3자가 보고하는 데이터를 광범위하고 시기적절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짐
 - ▶ 많은 관할권에서 기부금, 등록금, 보험료 등 공제 가능한 비용을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미리 채워 제공함

〈표 1-IV-3〉 미리 채움에 사용되는 항목(2022년)

(단위: %)

기부금	등록금	보육비	보험료	의료비	연금	주택담보 대출 원리금	기타
36.0	30.0	26.0	48.0	30.0	52.0	40.0	48.0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50, Table 4.7. 재인용

- ▣ 동 서비스의 적용 대상 세목은 개인소득세를 넘어 다양한 세목으로 확대되고 있음
 - ▶ 처음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고 제3자가 보고하는 데이터로 쉽게 검증할 수 있는 개별 세목에 미리채움신고서를 도입함
 - ▶ 규칙 기반 기술과 데이터 과학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도 미리채움신고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 보고서에서는 호주, 캐나다, 중국, 네덜란드의 보다 발전된 미리채움신고서 사례를 소개함

1) 미리채움신고서란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정보로 신고서를 미리 채우는 신고서로, 납세자는 미리 채움신고서를 검토하여 신고서를 제출함

〈표 1-Ⅳ-4〉 발전된 미리채움신고서 사례

국가	주제	내용
호주	'활동보고서'를 활용한 미리 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가 제출한 활동 보고서¹⁾를 통해 원천세액(PAYGW)이 미리 채워지고 고용주는 동 금액을 검토하여 금액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고용주가 STP²⁾를 활용하여 PAYGW를 신고했지만 해당 기간의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ATO는 고용주에게 서한을 통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상기시키거나 PAYGW 금액에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을 납세자 계정에 입금함
캐나다	'장애인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국세청(CRA)은 2023년 5월, 장애인 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 DTC) 신청서를 빠르고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완전한 디지털 신청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함 • 신청자는 My Accoun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의 첫 번째 부분을 작성할 수 있고 신청서 양식 부분은 CRA에 이미 등록된 정보로 미리 채워짐 • 신청 완료 후 신청자는 고유한 일회용 참조 번호를 받게 되고 이를 양식의 두 번째 부분을 작성할 수 있는 의료진(MP)에게 제공함
중국	법인세 환급 자동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법인세 연간 조정으로 인한 환급에 대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함 • 납세자가 신고한 후 시스템에서 세금 환급액을 추정하고 납세자에게 알림을 보내도록 세금 환급 프로세스를 간소화함 • 납세자는 세금 환급 신청 정보를 항목별로 입력하는 대신 시스템에서 '한 번 클릭'으로 수락하기만 하면 되고, 이 정보는 재무부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됨 • 시스템에 납세자의 위험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검토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납세자가 세금 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환급이 자동으로 처리됨 • 납세자가 신고하는 날에 세금 환급 검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세금 환급 처리 주기를 단축함 • 이 모델은 납세자의 운영 경험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세무 담당자의 행정적 부담도 덜어줌
네덜란드	특정 납세자를 위한 간소화된 세금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는 2022년부터 간단한 재정 상황을 가진 납세자를 위해 간소화된 전자 세금 신고서(개인소득세)를 발급함 • 과거에는 이러한 납세자가 소득에 대한 모든 질문이 있는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음 • 대상 납세자는 예/아니오 질문에만 답하고 미리 작성된 정보를 확인하기만 하면 됨 • 납세자가 사전 작성된 정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반 세금 신고서로 전환할 수 있음

주: 1) 활동보고서(Activity statement)란 사업체가 연중 내내 GST(Goods and Sales Tax), 원천징수(Pay As You Go Withholding) 등 특정 정보를 호주 국세청에 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세금 보고서를 의미함

2) STP(Single Touch Payroll)는 호주의 원천징수에 대한 세금 보고 시스템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p. 50~51, 저자 요약 작성

- ▣ 미리 채움을 위해 수집하는 데이터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조세행정당국은 납세자의 신고 오류를 발견하고 불이행을 방지할 수 있는 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
 - ▶ 보고서에서는 헝가리, 스페인의 오류 감지 예측 기술의 사례를 소개함

〈표 1-IV-5〉 오류 감지 기술 사례

국가	주제	내용
헝가리	e-VAT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 조세행정당국(the National Tax and Customs Administration)은 2024년 1월 1일, 전자 VAT 시스템을 출시함 • NTCA에서 수집한 거래 기반 데이터는 납세자에게 전송되고 납세자는 온라인 금전 등록기, 온라인 송장 데이터 및 세관 신고서의 데이터를 통해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 NTCA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각 거래를 세금 신고서의 어느 항목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장 사항을 납세자에게 제공함 • 신고서 초안은 사전 감사 기능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사후 감사 기능으로 검증하여 잘못 제출되는 신고서의 수를 줄이고자 함 •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자 친화적인 웹 인터페이스가 개발되고 대규모 기업을 위해 기계 간 솔루션을 제공하여 e-VAT 시스템과 관리 소프트웨어 간의 자동화된 통신에 필요한 호환성을 보장함
스페인	개인소득세 신고서의 오류 수정 옵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국세청(AEAT)은 2024년부터 개인소득세 신고 시 발생하는 특정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옵션을 납세자에게 제공함 • 이는 사전 작성한 자체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납세자는 수신 시 알림을 받고 수락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이 시스템을 통해 모든 오류가 수정되는 것은 아니며 AEAT에서 계산한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된 데이터와 납세자가 신고한 데이터 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만 수정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52, 저자 요약 작성

3 세금 신고기한 준수

- ▣ 2022년 현재, 개인소득세, 원천세,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 준수율은 약 90%이고, 법인세의 준수율은 이보다 5%p 낮은 약 85%임
 - ▶ 이번 보고서에서는 신고기한 준수율을 정시에 접수된 신고서 수와 수신된(received) 신고서를 비교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함

- 이전까지는 정시에 접수된 신고서 수를 정시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expected) 신고서 수와 비교해 왔음
- 새로운 방법은 이전 방법보다 준수율이 현저하게 높게 측정됨
- ▶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의 준수율이 낮은 이유는 법인세제의 복잡성으로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등의 작성이 어렵기 때문임

〈표 1-IV-6〉 세목별 신고기한 준수율 비교(201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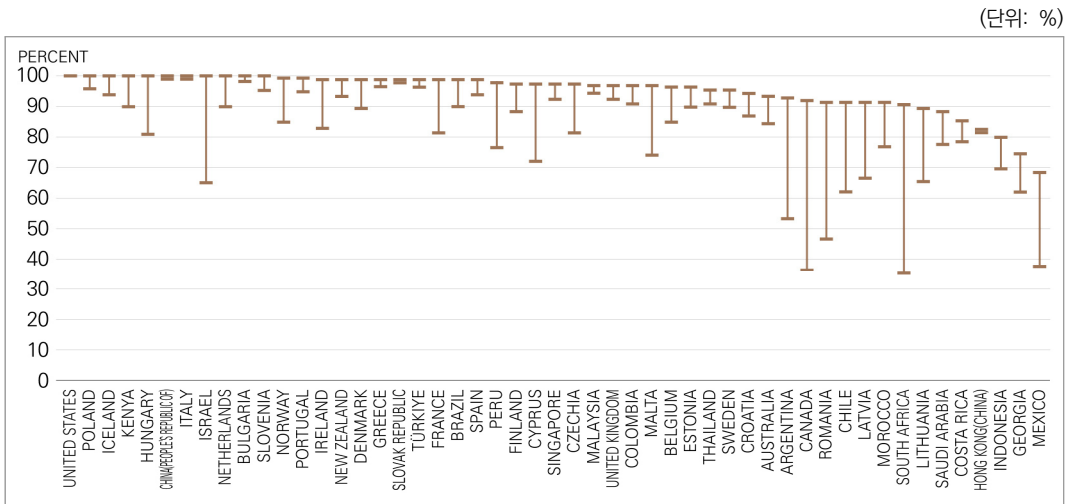
(단위: %)

세목	예상(expected)되는 신고서 대비 정시에 접수된 신고서						수신된(received) 신고서 대비 정시에 접수된 신고서	
	관할권 수	2018	2019	2020	2021	2022	관할권 수	2022
개인소득세	36개	88.3	85.7	85.6	84.8	84.3	50개	90.3
법인세	39개	76.6	77.4	76.5	77.4	75.9	50개	85.4
원천세	25개	88.0	87.6	86.3	87.1	86.9	39개	93.2
부가가치세	42개	86.7	85.9	85.5	84.6	85.8	49개	89.4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53, Table 4.8. 재인용

- ▣ 각 관할권의 세목별 신고기한 준수율은 [그림 1-IV-1]과 [그림 1-IV-2]에서 확인할 수 있음
 - ▶ [그림 1-IV-1]은 각 관할권의 주요 세목별 신고기한 준수율의 범위를 보여줌
 - 주요 세목은 개인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임
 - 그림을 통해 최소 두 가지 세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관할권의 세목별 준수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 많은 관할권에서 이 범위는 상당히 넓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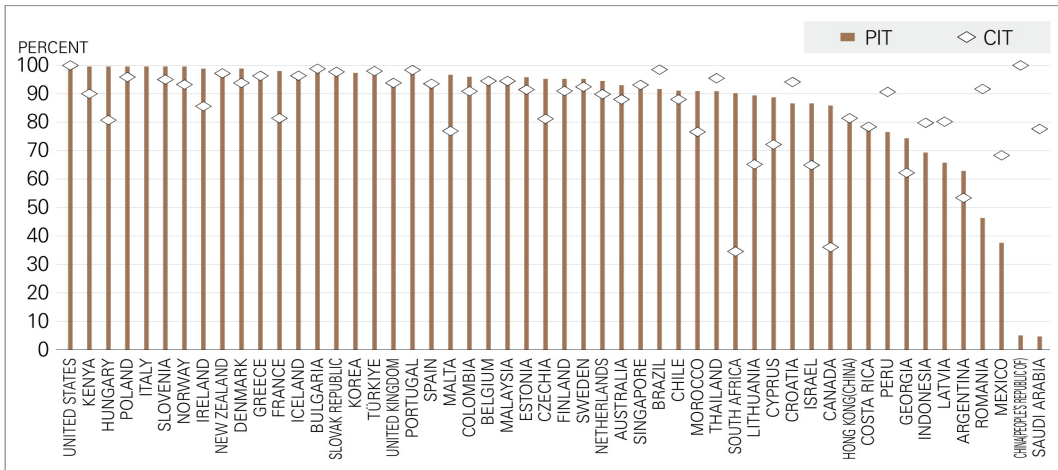
[그림 1-IV-1] 각 관할권의 주요 세목별 신고기한 준수율(2022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54, Figure 4.1. 재인용

▶ [그림 1-IV-2]는 관할권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신고기한 준수율을 비교하여 보여줌

[그림 1-IV-2] 각 관할권의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기한 준수율(2022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55, Figure 4.2. 재인용

▣ 다수의 조세행정당국은 신고기한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넛지 등 ‘행동적 통찰력 기술 (behavioural insight techniques)’을 활용하고 있고 보고서의 제VI장에서 상세히 다룸

4 세금 납부기한 준수

- ▣ 조세행정당국은 납세자에게 다양한 전자적 납부 방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 납부 방식의 개선으로 조세행정당국의 행정 비용은 낮아지고 납세자의 기한 내 납부가 늘어 체납 건수는 줄어들

- ▣ 2022년 현재, 법인세의 납부기한 준수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개인소득세, 원천세,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 준수율은 팬데믹 이전보다 감소함
 - ▶ 이번 보고서에서는 납부기한 준수율을 정시에 납부된 납부와 실제로 납부된 납부를 비교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함
 - 이전까지는 정시에 납부된 납부와 납부되어야 하는 납부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음
 - ▶ 새로운 방법으로 측정한 자료를 살펴보면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의 준수율은 약 90%인 반면, 개인소득세의 준수율은 약 85%임

〈표 1-IV-7〉 세목별 납부기한 준수율 비교(2018~2022년)

(단위: %)

세목	납부되어야 하는 납부 대비 정시에 납부된 납부						실제로 납부된 납부 대비 정시에 납부된 납부	
	관할권 수	2018	2019	2020	2021	2022	관할권 수	2022
개인소득세	29개	81.7	81.1	78.7	75.8	76.8	35개	84.4
법인세	31개	84.4	84.2	81.5	82.3	83.8	36개	89.2
원천세	28개	94.2	94.2	91.0	90.8	89.7	32개	91.6
부가가치세	31개	87.8	87.9	86.3	86.1	85.5	33개	89.5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56, Table 4.10. 재인용

- ▣ 납부기한 준수율이 회복하고 증가하는 것은 조세행정당국의 주요 관심 분야로, 보고서는 준수율의 추세를 계속해서 추적할 계획임

5 환급 및 크레딧

- ▣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에서 일부 납세자의 초과 납부는 불가피한 일임
 - ▶ 초과 납부에 대한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상당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 <표 1-IV-8>을 보면 다수의 조세행정당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즉시 지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다만 이러한 신속한 환급 처리는 사기성 신청에 취약하므로 적절한 환급 청구를 식별하기 위해 환급이 많이 발생하는 세제의 시스템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음

<표 1-IV-8> 부가가치세 환급 처리 방식

(단위: %)

자동으로 즉시 지급	자금가용성에 따라 즉시 지급	납세자가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시점까지 크레딧으로 설정	납세자가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시점까지 크레딧으로 설정하고 자금 가용성에 따라 지급
60.0	1.8	34.5	3.6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58, Table 4.12. 재인용

V 서비스(Services)

- ▾ 조세행정당국은 발전된 기술을 통해 납세자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의무 준수를 지원하고 있음
 - ▶ 서비스의 핵심 요소는 납세자에게 사용하기 쉬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러한 서비스에는 교육 프로그램, 세부 지침, 프롬프트(prompts), 세금계산 도구 등이 있음
 - ▶ 조세행정당국의 서비스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해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과정을 쉽게 만들어 자발적인 납세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됨

- ▾ 조세행정당국의 약 85%는 공식적인 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했고 대부분 해당 기준을 공개함
 - ▶ 조세행정당국은 서비스 제공 기준을 공개하여 납세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납세자는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는 높아지고 있음
 - 다만 납세의무 준수는 조세행정당국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고 조세행정당국의 통제 밖에 있는 경제 상황, 납세자 개인의 고용형태 변화(월급소득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 등), 조세 정책의 공정성 인식 등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받을 수 있음

〈표 1-V-1〉 서비스·지원 전략과 서비스 제공 기준(2022년)

(단위: %)

납세자를 위한 공식적인 서비스 및 지원 전략이 존재하는 행정부의 비율	만약 존재한다면, 해당 전략을 공개한 행정부의 비율	납세자를 위한 공식적인 서비스 제공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행정부의 비율	만약 존재한다면, 해당 기준을 공개한 행정부의 비율
78.9	71.1	84.5	61.2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60, Table 5.1. 재인용

- ▣ 본 장에서는 서비스를 지원할 때 조세행정당국이 고려할 수 있는 납세자의 선호도 이해 및 충족, 셀프 서비스 지원, 교육 및 지원 이니셔티브, 협업 서비스 등에 대해 살펴봄
 - ▶ 조세행정당국의 서비스는 장애가 있거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납세자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1 납세자의 선호도 이행 및 충족

- ▣ 납세자의 문의량(contact volumes)은 온라인 계정을 통한 문의(35억건)가 압도적이지만 전화 문의(약 3억건)도 여전히 상당함
 - ▶ 일반적으로 개인납세자는 조세행정당국과 자주 접촉하지 않지만 금액이 크거나 벌금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접촉하는 편임
- ▣ 약 85%의 조세행정당국은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약 75%의 조세행정당국은 법인납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조세행정당국은 약 56%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 납세자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는 조세행정당국 중 세 그룹(개인납세자, 법인납세자, 세무대리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곳은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임
 - ▶ 보고서에서는 체코, 영국의 조세행정당국이 납세자의 선호를 이해하고 충족하는 사례를 소개함

〈표 1-V-2〉 납세자의 선호도 이행 및 충족 사례

국가	주제	내용
체코	기능 통화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법(Accounting Act)」에 따라 기업은 체코 코루나(CZK)뿐만 아니라 기능 통화를 회계의 기준 통화로 선택할 수 있음 • 법인세 신고 시 여전히 코루나로 보고해야 하는데 기능 통화를 코루나로 환산하는 특별 규정이 존재함
영국	아동수당 신청의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 신청의 디지털화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시간이 단축됨(기존 19일에서 3일) • SMS, 푸시 알림 등 디지털 알림 기능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문의 없이 진행상황(progress chase)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주: 1) 기능 통화(Function Currency)란 기업이 대부분의 거래를 수행하는 통화로, 기존 체코 코루나 외에도 유로, 달러, 파운드도 기능 통화로 사용될 수 있음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p. 61~62, 저자 요약 작성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행정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에 대응해 조세행정당국은 서비스를 개선하고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있음

▶ 직접 방문하는 대면 서비스 이용은 감소세가 계속되지는 않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는 크게 낮은 상태이고 챗봇 등 디지털 지원 서비스는 중요한 서비스 채널로 자리 잡고 있음

▶ 납세자가 어떤 채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조세행정당국이 서비스 제공 방식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다수의 조세행정당국은 서비스 채널 이용 통계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고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여 인력 배치를 조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음

〈표 1-V-3〉 서비스 채널별 수요(2018~2022년)

채널 종류		관할권 수	2018	2019	2020	2021	2022
온라인 계정	합계	30	1,076,833,409	1,245,565,136	1,837,708,162	2,418,962,911	3,535,474,264
	변화율			+15.7	+47.5	+31.6	+46.2
전화	합계	51	327,203,283	312,515,920	307,606,424	346,034,546	317,564,223
	변화율			-4.5	-1.6	+12.5	-8.2
대면	합계	35	109,620,990	109,052,857	48,699,279	41,594,555	51,484,632
	변화율			-0.5	-55.3	-14.6	+23.8
우편	합계	15	35,039,012	35,166,408	31,998,546	35,602,576	39,389,387
	변화율			+0.4	-9.0	+11.3	+10.6
이메일	합계	27	11,237,613	12,673,006	17,366,766	20,062,665	30,997,857
	변화율			+12.8	+37.0	+15.5	+54.5
디지털 지원	합계	30	11,022,155	21,310,120	30,673,147	52,669,925	60,661,905
	변화율			+93.3	+43.9	+71.7	+15.2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62, Table 5.4. 재인용

2 셀프 서비스 지원

- ▣ 조세행정당국이 제공하는 셀프 서비스는 다양한 유형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점차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음
 - ▶ 셀프 서비스의 사례로는 등록, 신고, 온라인 납부, 다양한 대화형 도구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세무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 <표 1-V-4>는 조세행정당국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으며, <표 1-V-5>에서 볼 수 있듯 'Inventory of Tax Technology Initiatives(ITTI)'의 추가적인 정보는 납세자가 기한 연장 또는 납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정해진 기준이 충족되면 요청한 자에게 자동 응답이 전송되는지 여부를 나타냄
 - ▶ 기술 활용의 증가와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는 조세행정당국이 그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납세자의 경험에 집중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조세행정당국과 납세자 모두에 개선된 영향을 미침

<표 1-V-4> 온라인 서비스 제공(2022년)

(단위: %)

가상 도우미 (예, 챗봇)	세금 계산기	'전체 납세자' 보기를 제공하는 납세자 포털	기한 연장 요청	납부 협의 신청	납세자 소통 보안	조세 행정당국 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관련 납세 신고	제3자가 파악한 납세자 정보 보기
63.8	82.8	84.5	70.7	79.3	89.7	93.1	87.9	75.9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64, Table 5.6. 재인용

〈표 1-V-5〉 자동 응답 온라인 서비스(2022년)

(단위: %)

조세 유형	납세자 등록: 등록자가 납세자번호와 관련하여 받은 자동응답	세금신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신고서 및 사람의 개입없이 납세자에게 송부되는 과세처분	기한 연장 요청: 기한 연장을 요청한 자가 승인 또는 거절의 답변을 받은 자동응답	납부 협의 요청: 납부 협의를 요청한 자가 승인 또는 거절의 답변을 받은 자동응답
개인소득세	51.0	68.6	5.9	33.3
법인세	55.8	51.9	5.8	30.8
부가가치세	42.9	49.0	6.1	26.5

주: 이 표는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동 응답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보유한 조세행정당국의 비율을 표시함. 본 보고서의 대상이 되며 디지털화에 대한 설문은 완료한 52개 관할국의 ITT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64, Table 5.7. 재인용

〈표 1-V-6〉 셀프 서비스 강화 사례

국가	주제	내용
불가리아	납세자 데이터 제출	• 납세자가 국세청 포털에서 직접 파일을 업로드하는 대신 자체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자동 제출 서비스를 도입함
캐나다	안전한 파일 교환	• Secure Drop Zone(SDZ) 계획을 도입하여 납세자와 국세청 간 최대 10Gb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나의 허브로 정보를 수신하고 데이터 공유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각 파일 전송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함
중국	개인 소득세 징수 현대화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세금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미리채움 양식 및 자동 계산을 도입하였으며, 정부 부서 간 정보 공유 체계를 도입하여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를 검증함 • 행동통찰력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개인화된 메시지와 알림을 보내고, 온라인 웹챗 플랫폼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가상 어시스턴트가 응답하도록 함
코스타리카	통합 세무 행정 시스템	• 세무 행정 플랫폼(TRIBU-CR)을 구축하여, 등록, 신고, 납부, 신청서 처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OECD 회원국과 자동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표 1-V-6〉 의 계속

국가	주제	내용
포르투갈	온라인 세무상 거주지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을 위한 세무상 거주지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는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됨 안전성을 위하여 해외 조세행정당국 및 납세자가 상시 검증 가능하도록 하고, 포르투갈 납세자의 부담 또한 경감됨
스페인	비거주자 멀티채널 정보·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조세 문제와 관련하여 비대면 채널(전화, 스페인어 및 영어를 활용한 가상 어시스턴트, 채팅 및 온라인 형태)을 통해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함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공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p. 65~66, 저자 요약 작성

3 가상 어시스턴트

- ▣ 이전 보고서는 많은 수의 조세행정당국이 납세자의 요청 대응에 도움을 주는 방식과, 셀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가상 또는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는 방식에 집중하였음(〈표 1-V-3〉)
 - ▶ 〈표 1-V-7〉은 가상 어시스턴트 활용이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며(2018년과 2022년 사이에 29%p 증가), 현재 많은 조세행정당국이 이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 관할국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활용하여 보다 정교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음
 - [그림 1-V-1]에 따르면 가상 어시스턴트를 보유한 행정당국의 40%가 어떤 형태로든 AI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이 납세자의 더 복잡한 질문에 대처하거나 보다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음
 - 이는 보고서 전체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무행정의 인공지능 활용 추세의 일부임
 - ▶ 일례로 튀르키예는 조세 관련 입법안에 대한 최신 정보에 신속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채팅 서비스를 도입하여 조세행정당국의 효율성 및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자 함²⁾

2) 디지털 세금 어시스턴트(GIBI)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24/7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일반적이며 개인화되지 않고 특정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질문에 대한 응답 및 전자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납부와 같은 특정 기능을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표 1-V-7〉 가상 어시스턴트, 인공지능, API 활용(202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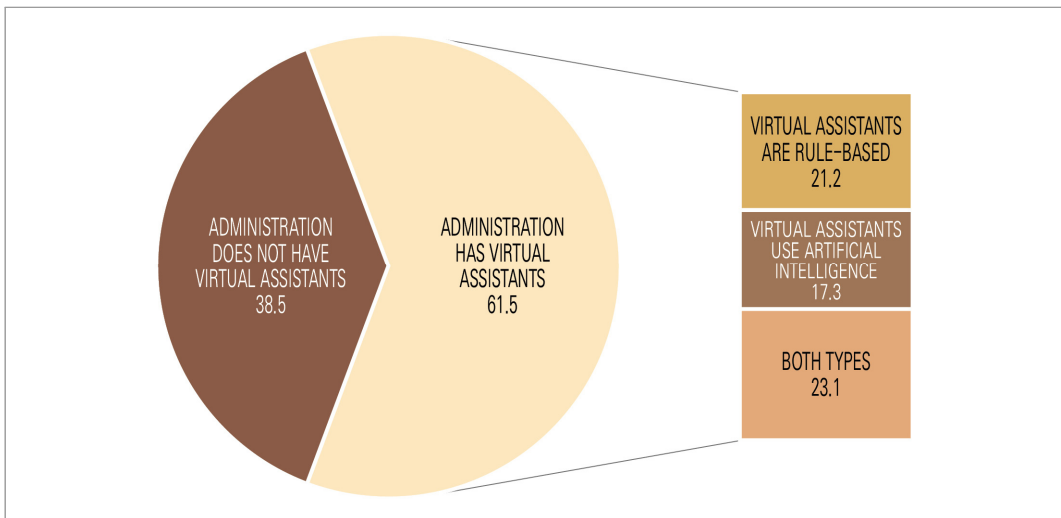
구현 및 활용 단계	가상 어시스턴트 (예: 챗봇)			인공지능(AI), 머신러닝 포함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2018	2022	%p 차이	2018	2022	%p 차이	2018	2022	%p 차이
기술 구현 및 활용	34.5	63.8	+29.3	29.8	63.8	+34.0	79.0	96.6	+17.6
향후 활용을 위한 기술 구현	13.8	17.2	+3.4	15.8	24.1	+8.3	7.0	3.4	-3.6
기술이 활용되지 않음 ¹⁾	51.7	19.0	-32.7	54.4	12.1	-42.3	14.0	0.0	-14.0

주: 1) 기술 구현이 개시되지 않은 상황을 포함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p. 67, Table 5.8. 재인용

[그림 1-V-1] 가상 어시스턴트의 유형(2022년)

(단위: %)



주: 본 보고서의 대상이 되며 디지털화에 대한 설문을 완료한 52개 관할국의 ITT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67, Figure 5.1. 재인용

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이전 보고서에서 다루었던 조세행정당국의 최근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활용 증가 경향은 지속되고 있음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납세자는 이동 중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유연성과 및 셀프 서비스를 지원받음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주로 정보 및 안내를 제공하는 용도로 활용되지만, 점차 거래를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납세자가 관련 기록과 개인 계정에 접근하고, 조세행정당국과 소통하며,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음

〈표 1-V-8〉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례

국가	주제	내용
크로아티아	모바일 편의성으로 규정 준수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Poreza는 전자서비스를 통해 납세의무, 기한,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다양한 세금 관련 양식의 디지털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 사용자는 세금계좌카드 잔액을 확인하고, 납부를 위한 2D 바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제출된 양식을 검토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과세처분을 확인하고 바로 국세청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헝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 납부 관련 서비스 외에도 면세 상품 수량, 유류 가격, 고용 데이터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간소화된 인터페이스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2024년에는 법적 의무가 있는 중간예납 요청을 도입하였고, 알림 기능을 통해 고용 관련 상세 정보의 변동을 통지받을 수 있음
영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디지털 지갑에 국민보험번호 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보험번호(NINO)를 디지털 지갑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3만 5천명 이상이 디지털 지갑에 이를 저장하였고, 70만명 이상이 국가보험번호 안내문을 보거나 다운로드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p. 68~69 저자 요약 작성

5 교육 및 지원 이니셔티브

- ▣ 납세자 교육은 첫째, 납세의무에 대한 이해와 납세의무 이행 능력, 둘째, 사회에서의 조세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의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지며, 두 측면 모두 자발적인 규정 준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³⁾
 - ▶ 대부분의 조세행정당국은 교육 이니셔티브를 수행하며 약 절반의 조세행정당국은 신규 기업 및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고함(〈표 1-V-9〉 참조)
 - ▶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은 거의 모든 조세행정당국이 인지하고 있으며, 95%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75%가 대화형을 사용한다고 보고함

〈표 1-V-9〉 교육 및 기업 지원 이니셔티브(2022년)

(단위: %)

어린이, 청소년 및 학생에 대한 교육 서비스	신규 사업에 대한 교육 서비스	저소득 개인에 대한 면세 서비스	신규 사업에 대한 면세 서비스	납세자 교육 또는 특정 쟁점을 위한 인식 캠페인
86.0	66.7	47.4	49.1	8.8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70, Table 5.9. 재인용

〈표 1-V-10〉 교육 및 지원 이니셔티브 사례

국가	주제	내용
캐나다	규정 준수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개입을 통해 규정 미준수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소통, 교육 및 납세자 지원을 제공함 •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자발적 규정 준수가 강제보다 비용에 있어 효율적이므로, 국세청은 점차 교육 우선 접근법을 취함
칠레	기업 그룹 내 사회적 책임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그룹의 잠재적인 규정 미준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각 기업의 조세 기여도를 판별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조세 국가재정 기여보고서를 발간함

3) 본 보고서 시리즈 및 다른 OECD 보고서는 교육 및 기업지원 이니셔티브의 사례를 제공함. 그 예로는 캐나다 및 일본의 미래 납세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상세한 설명(OECD, *Tax Administration 2019*, 2019.), 140개의 납세자 교육 이니셔티브를 분석하고, 조세문화 및 납세 동기 부여를 위한 조세 문맹 감소의 필요성 등의 내용(OECD, *The 2021 edition of Building Tax Culture, Compliance and Citizenship: A Global Source Book on Taxpayer Education*, 2021.), 중소기업의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지원 및 다양한 도구와 채널에 대한 분석(OECD, *Communication and Engagement with SMEs: Supporting SMEs to Get Tax Right*, 2023)이 있음

〈표 1-V-10〉 의 계속

국가	주제	내용
중국	조세 익스프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부터 국제조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TaxExpress를 개발하여 투자의 해외 흐름, 기술 및 자원을 향상시키고자 함 납세자의 조세행정당국과의 의사소통,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계정에 관련 지식 업데이트, 이전가격, 국가별 조세 관련 내용, 국제법, 문의사항 등의 내용을 다룸
프랑스	젊은층과의 소통을 위한 소셜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은 젊은층과 소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2023년에는 세금 신고 관련 영상 및 뮤직비디오를 제작함
인도	납세자 허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전역에 납세자 허브를 설치하여 조세 및 금융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며, 납세자 허브는 공원, 컨벤션센터 시청 등 공중 이용 시설에 키오스크 형태로 설치됨 또한 어린이 코너에서 조세 관련 보드게임, 퍼즐, 가상 게임, 만화 등을 제공하고, LED 스크린을 통해 정보를 제공함
아일랜드	'조세 이해' 모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들은 학생들이 향후 부담하게 될 주요 조세와 관련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조세 이해력 향상, 국세청 온라인 서비스 사용 장려, 조세의 사회적 효용과 중요성 교육, 세금 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이탈리아	세금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년부터 국세청은 교육부와 협력하여 '세금과 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세금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 국세청은 2017년부터 세금 및 그 영향력에 대해 젊은층에 대한 교육을 다루는 EU의회의 TAXEDU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9~25세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을 운영함
	조세 디지털 소통 전략 및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은 납세자의 필요에 따라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의 주요 전략이 변화하였으며, 정보 전달에서 그치지 않고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통합 소통 방식을 도입하여 목표 지향적 접근방식을 사용하며, 온라인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비디오 튜토리얼 등을 제공함
튀르키예	자발적 규정준수 향상을 위한 신규 납세자와의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및 법인세 납세자의 자발적인 규정 준수 향상을 위해 최근 다양한 소통 방식을 도입하여 납세자들에게 월별로 기본 개인소득세 관련 정보, 납세의무 설명 브로셔 조세행정당국과 소통 가능한 정보 등을 제공함 신규 납세자에 대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며, 조세 관련 정보 비디오 링크를 제공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p. 70~74, Box 5.6. 저자 요약 작성

6 협업 서비스

- ▣ 조세행정당국은 디지털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서비스가 첫째, 정부 서비스 경험 전체를 제공하기 위한 다른 정부기관과의 협업의 기회, 둘째, 납세자 시스템과 연결되기 위해 제3자 개발자와의 협업의 기회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지함
- ▣ **(정부 협업 서비스)** 조세행정당국은 정부 전반의 전체적인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정부기관과의 협업을 보고하였음
 - ▶ 조세행정당국은 보통 납세자의 신원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유하고, 수령 및 지급에 모두 관여하며, 금융기관 및 고용주와 같은 제3자에게 정보를 받거나 전송하므로 정부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함
 - ▶ <표 1-V-11>은 정부 협업 서비스의 두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관할국에서 최근 납세자 등록 또는 조세 납부는 광범위한 정부 절차의 일부이므로 행정부담을 경감 및 간소화시킴
 - ▶ 싱가포르 국세청은 디지털 생태계 TF를 시범 도입하였으며, TF는 2년간 조세 생태계 내의 디지털 측면의 수요와 공급을 다루는 두 개의 부서간 프로젝트 팀임⁴⁾

<표 1-V-11> 정부 협업 서비스(2022년)

(단위: %)

조세 유형	정부 등록 절차의 일부로서 납세자 등록	정부 온라인 납부 포털의 일부로서 납부
개인소득세	49.0	39.2
법인세	63.5	36.5
부가가치세	40.8	34.7

주: 본 보고서의 대상이 되며 디지털화에 대한 설문을 완료한 52개 관할국의 ITT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74, Table 5.10. 재인용

4) 다수 국가의 협업 서비스 사례는 이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음

- ▣ **(제3자 개발자와의 협업)** 납세자가 일상생활 및 사업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에 서비스와 프로세스를 결합시켜, 규정 준수를 개선하고 행정 부담을 경감하여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대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대부분은 제3자 개발자에 의해 개발됨
 - ▶ 이 외에도 많은 조세행정당국은 납세자의 세금 신고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직접 또는 제3자와 협업하여 개발하고 있음(〈표 1-V-12〉 참조)
 - ▶ 세무행정 시스템과 납세자 시스템을 연결하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API)를 통해 이루어지며, API는 시스템, 사람, 사물 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많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임
 - 현재 약 85%의 조세행정당국이 API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중 4분의 3이 제3자 개발자에게 API를 제공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며, 약 60%의 조세행정당국이 제3자와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 OECD API 관련 보고서는 API를 통해 납세자에게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관행, 기술 및 표준을 제시함⁵⁾
 - 서비스가 더욱 정교해지고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조세행정당국은 API의 관리와 감독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함

〈표 1-V-12〉 제3자 개발자와의 협업(2022년)

(단위: %)

납세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		제3자 시스템에 조세 상호작용 통합		
행정당국이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	행정당국이 제3자와 소프트웨어 패키지 공동개발에 참여	행정당국이 API를 개발	행정당국이 API를 개발한 경우	
			행정당국이 제3자가 API 라이브러리를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행정당국이 제3자와 API 공동개발에 참여
57.7	48.1	84.6	75.0	56.8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75, Table 5.11. 재인용

5) OECD, *Unlocking the digital economy - a guide to unlocking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in government*, 2019.

〈표 1-V-13〉 서비스 향상을 위한 API 활용 및 제3자 개발 협업 사례

국가	주제	내용
호주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3자와의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은 디지털서비스 제공 파트너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은 조세 및 퇴직연금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조기의 협업이 매우 중요함 국세청 전략작업그룹의 2024년 논의 주제의 사례는 신고 의무와 연계된 실시간 납부, AI 활용, 전자고지서 사용을 향상, 운영 보안 체계의 지속적인 발전 등임
	소프트웨어 개념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은 소규모 기업의 기존 체계를 활용하는 디지털 우선 생태계를 개발하여, 조세 인식을 향상하고자 소프트웨어 개념 지침을 도입함 납세자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디지털 파트너 및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여 개념과 체계를 공동 설계하고, 납세자 또는 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위험 또는 세법 영역에 중점을 둠
브라질	납세자 자연 시스템과의 통합: Integra Account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프로젝트는 국세청과 개인 회계 시스템을 디지털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속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절차 및 응답 시간을 경감시킴
싱가포르	'원스탑급여'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된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고용주는 여러 기관의 급여 관련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세청, 중앙금융이사회, 고용노동부와 원활하게 통합되는 급여/인사 시스템을 제공함
스웨덴	API를 활용하여 특정 회사의 소득세 신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개발하여 API를 활용하여 특정 회사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음 서류 제출 서비스도 여전히 제공하고 있으나, 점차 디지털서비스의 활용이 많아짐
	코드 개념으로서의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의 규정 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코드 개념 규칙 (Rules as Code, Rac)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여, 기업 시스템 개발자들이 법적 지침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함 규칙 파일의 사용만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핵심 요소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p. 76~78, Box 5.8. 저자 요약 작성

7

포괄적 행정

- ▣ 조세행정당국은 모든 시민들의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로서 장애인,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자, 공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위해 접근 가능한 형식, 다국어 지원, 오프라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자발적인 규정준수를 유도하여 포용적인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
- ▶ <표 1-V-14>에서 보듯 다수의 조세행정당국은 서비스 설계에 있어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음
 - ▶ 핀란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핀란드 내 근로와 관련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26개 언어로 제공되며 무료임
 - 국세청은 조세 관련 내용을 제공했으며, 애플리케이션은 기본 납세권에 대한 정보와, 거주기간 및 조세카드 취득 등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표 1-V-14> 포괄적 서비스(2022년)

(단위: %)

장애가 있는 납세자를 위한 특별 서비스 제공	디지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한 특별 서비스 제공	공용어가 아닌 언어로 전화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공용어가 아닌 언어로 제공되는 정보
91.4	81.0	53.4	72.4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79, Table 5.12. 재인용

- ▣ 또한 조세행정당국은 어려운 개인적 상황에 처한 납세자를 돕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표 1-V-15〉 포괄적 서비스 사례

국가	주제	내용
호주	취약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미리 국세청에 연락을 취해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접근법은 납세자의 개별 상황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납부할 수 없는 다양한 개별적인 상황, 예를 들어 심각한 질병, 정신적 어려움, 자연재해, 가족 또는 가정폭력, 낮은 수준의 지원 또는 문맹률 등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소화된 체계를 설계 중임
캐나다	사망한 납세자의 유언 집행자를 위한 세금 신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은 2020년 피상속인의 세금 신고의 복잡성과 관련하여 유언집행자들과 그 필요성과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며,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 • Canada.ca의 웹 콘텐츠가 개선되어 사망자의 세금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함 • 전화상담센터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p. 79~80, 저자 요약 작성

VI 규정 준수 관리(Compliance management)

- ▣ 감사, 확인 및 조사 기능은 납세자가 보고한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평가하고, 이러한 기능은 납세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조세행정당국 공무원의 평균 30%에 의해 수행됨
 - ▶ 주로 이러한 기능은 감사를 통해 이루어지나, 최근에는 납세자 정보의 자동화된 전자 확인, 유효성 검사 및 매칭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작업과 기타 규정 준수 조치에 대한 가시성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규정 준수를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나아가 조세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역제 효과'를 창출함
 - ▶ 본 장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다룰 예정임
 - 규정 위반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포함하여 조세행정당국이 규정 준수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조세행정당국이 감사뿐만 아니라 조세범죄 조사를 통해 수행하는 규정 준수 조치 이행
 - 납세자의 규정 준수 부담 평가 및 경감의 중요성

1

납세 규정 준수 관리

- ▣ 본 장에서는 조세행정당국이 납세 규정 준수 관리 분야에서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봄
 - ▶ 이를 위해 규정 준수 위험(compliance risks)을 (1) 이해(understanding)하고 (2) 관리(managing)하기 위한 조세행정당국의 접근 방식을 살펴본 뒤, 이를 (3) 예방(preventing)하고 (4) 대응(addressing)하기 위해 취하는 몇 가지 조치를 살펴봄

가 규정 준수 위험의 이해

- ▣ 대부분의 조세행정당국에서 주요 규정 준수 위험을 식별, 평가 및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전용 접근 방식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약 85%의 조세행정당국이 공식적인 규정 준수 위험 관리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30%는 규정 준수 위험을 공개하고 약 25%는 위험 대응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일례로 호주 국세청은 개인 자산 시장(private wealth market)의 국제조세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자동화된 국제 위험 모델을 설계함
 - 개인 자산 국제 위험 모델(Private Wealth International Risk Model)은 맞춤형 개인 자산 위험 규칙과 데이터 매칭 및 추세 분석을 결합하여 특수관계자 간 자금조달 거래, 무형자산의 이전, 사업 구조조정 및 CFC 리스크와 같은 위험을 식별함

〈표 1-VI-1〉 조세행정당국의 규정 준수 위험 관리 전략(2022년)

(단위: %)

공식적인 규정 준수 위험 관리 전략을 보유함	해당 전략에 주요 규정 준수 위험을 식별, 평가 및 우선순위를 매길 공식적인 접근 방식이 포함됨	‘그렇다’로 답한 경우						
		‘그렇다’로 답한 경우						
		해당 접근 방식으로 다루어지는 영역					위험이 정기적으로 공개됨	위험 대응의 결과가 정기적으로 공개됨
		신고서 제출	납부 처리	징수 강화	입증/감사	납세자 서비스		
84.5	98.0	89.6	68.8	72.9	100.0	66.7	29.2	27.1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84, Table 6.1. 재인용

1) 택스 갭 분석

- ▣ 택스 갭(tax gap) 측정의 사용은 규정 준수 위험을 식별하고 규정 미준수의 원인을 파악하는 등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음
 - ▶ 택스 갭 측정에는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이 있음

- 첫째, 집계된 거시경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하향식 방법론으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함
- 둘째, 감사 정보를 포함하는 상향식 방법론으로, 여러 부문과 조세 유형에 따른 세수 손실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58개 조세행정당국 중 약 3분의 2는 자신 또는 다른 정부기관에서 주요 세목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주기적으로 택스 갭 추정치를 생성한다고 답하였으며, 특히 부가가치세 택스 갭 추정치를 생성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VI-2〉 택스 갭 분석(2022년)

(단위: %)

조세행정당국 또는 다른 정부기관이 정기적으로 택스 갭 추정치 자료를 생성				발간된 택스 갭 보고서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세목	
38.6	34.5	65.5	32.8	55.3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85, Table 6.2. 재인용

2) 무작위 감사

- ▣ 무작위 감사(random audits) 프로그램은 억제 효과(deterrent effect)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규정 준수 위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여 위험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 약 3분의 2 미만의 조세행정당국이 무작위 감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무작위 감사 프로그램을 구축한 조세행정당국 중 약 절반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택스 갭 추정치를 산출한다고 보고함

〈표 1-VI-3〉 무작위 감사(2022년)

(단위: %)

조세행정 당국이 무작위 감사를 시행함	‘그렇다’로 답한 경우, 무작위 감사의 목적은					
	타겟 부문에서의 규정 준수를 테스트	리스크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강화	택스 겹 추정치를 생산	감사의 행동 효과 측정	일반적인 억제효과를 위한 감사 목적으로만 수행	기타
63.8	70.3	75.7	56.8	37.8	51.4	21.6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86, Table 6.3. 재인용

3) 데이터 이용 가능성 증가

- 다양한 기술과 프로세스의 적용으로 데이터의 전자적 전송, 저장 및 통합이 쉬워짐에 따라 조세행정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폭은 크게 넓어졌으며,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 소스는 〈표 1-VI-4〉와 같음

〈표 1-VI-4〉 세무 행정의 데이터 활용 소스

구분	내용
거래 등록 장치 정보	• 온라인 금전등록기, (운송 수단)의 여정 기록기 자료
결제 및 중간업체 정보	• 은행, 가맹점, 결제 중개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제공 자료
공급업체 정보 (납세자)	•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은 납세자 직접 제출 자료
소비자 정보	• 현금영수증과 같은 소비자 요청 자료
비정형 정보	• 인터넷 및 SNS에 존재하는 비즈니스 및 거래 관련 활동 추적
타 부처 정보	• 면허, 규제 또는 사회보장 목적으로 타 정부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국제 협력 정보	• 공통 보고 표준 및 국가별 보고에 따른 국제 정보 교환 • 조세 관련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국제 표준(OECD, 2023) 및 국가별보고(OECD, 2015)에 따른 데이터의 국제적 교환은 국제 활동에 대한 데이터의 양을 크게 증가시키고 감사 및 사례 선정 과정과 일부 경우 세금신고서 사전 작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자료: OCED, *Tax Administration 2024*, pp. 86~87 내용 저자 요약

- ▣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조세행정당국은 제3자 데이터를 전송,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음
 - ▶ 약 80%의 조세행정당국이 세관 데이터, 사회보장 기관의 데이터 또는 부동산 소유권 및 판매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조세행정당국은 온라인 공급업체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 저장 및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일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투라 프로젝트(Fatoora Project)로 불리는 전자 인보이스 발행 프로젝트를 도입함
 - 파투라 프로젝트는 국가 전자 인보이스 발행 프로젝트로, 1단계에서는 전자 인보이스 생성, 2단계에서는 납세자의 전자 인보이스 시스템을 기관과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됨
 - 프로젝트 1단계 이후 수작업으로 생성되는 종이 인보이스가 완전히 사라졌으며, 출시 이후 9억 5천만건 이상의 전자 인보이스가 생성되었고, 이러한 완전 자동화된 솔루션을 통해 0.1초 이내에 인보이스를 처리할 수 있게 됨

- ▣ 한편 조세행정당국이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은 이제 당연하고도 중요한 기능이 되었음
 - ▶ 이러한 메커니즘은 광범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지원하여 납세자의 시스템 신뢰를 유지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됨

〈표 1-VI-5〉 데이터 거버넌스(2022년)

(단위: %)

포괄적인 데이터 관리 전략이 존재함	보고된 데이터의 질이 평가됨	데이터 윤리 프레임워크가 존재함	이용자 데이터접근 및 보안이 관리됨	승인되지 않은 접근은 자동적으로 적발됨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리자가 고용되어 있음	사이버 보안 부문이 존재함	시스템의 보안을 시험하기 위한 외부 당사자가 고용되어 있음
66.0	880	74.0	100.0	84.3	90.2	90.2	82.0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90, Table 6.7. 재인용

4) 납세 규정 준수 및 젠더

- ▣ 납세 준수에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면 조세행정당국이 맞춤형 납세자 서비스 및 교육 캠페인을 통해 납세자 규정 준수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 개별 납세자의 납세 규정 준수에 대해 성별에 따라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보고한 조세행정당국은 8개에 불과했으며, 그중 6개 조세행정당국만이 성별에 따른 규정 준수 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나 규정 준수 위험의 관리

1) 데이터 과학

- ▣ 최근 몇 년 동안 위험 관리 및 위험 타겟팅에 고급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음
 - ▶ 조세행정당국의 약 80%가 업무에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기관 중 거의 모든 기관이 규정 준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58개 조세행정당국 중 거의 모든 기관이 데이터 과학/분석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관은 향후 이러한 도구 사용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음
 - ▶ 마찬가지로 위험 평가와 탈세 조사를 위해 머신러닝을 포함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은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조세행정당국의 약 절반이 이미 시행했거나 시행하는 과정에 있음

〈표 1-VI-6〉 분석 목적의 빅데이터 및 AI 사용(2022년)

(단위: %)

조세행정 당국이 빅데이터 를 사용함	빅데이터의 사용						AI의 사용	
	‘그렇다’로 답한 경우, 빅데이터 사용의 목적						리스크 평가 절차를 위한 AI 사용	조세회피 및 사기 포착을 위한 AI 사용
	규정 준수 개선	추세 파악	정책 예측	세수 예측	신규 서비스 제공	기타		
80.0	97.5	72.5	47.5	60.0	45.0	17.5	52.9	49.0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91, Table 6.9. 재인용

▣ 각국은 세무 행정과 관련하여 현재 다음과 같은 과학적 데이터 분석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음

- ▶ 호주는 비즈니스, 기술, 데이터 및 분석 영역 전반의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 소비자, 엔지니어, 생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숙련된 팀원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함
- ▶ 핀란드는 국세청의 운영이 정부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현황 센터(Status Centres)를 도입하였음
 - 현황 센터는 활동과 목표에 대한 데이터를 한 곳에서 비교하고 수집하여 직원들이 증거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추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프랑스는 AI 기술을 사용하여 소유 및 임대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득세 목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임대료 수준을 계산하고, 신고된 임대료 금액, 임대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결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각 부동산의 임대가치를 추정하는 모델을 구축함
 - 이 모델을 임대된 모든 주거용 건물에 적용하고 각 임대인의 총 추정임대료를 신고한 임대료와 비교하여 임대소득의 과소신고 및 잠재적 탈세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함
- ▶ 일본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공한 세금신고서와 재무제표, 제3자가 제공한 정보, 세무조사 정보 등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통계분석과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세무조사 및 규정준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표 1-VI-7〉 세무 행정에 데이터 과학을 활용하는 국가 비율 변화(2018년, 2022년)

(단위: %)

구분	데이터 과학/분석도구			AI(머신러닝 포함)			프로세스 자동화		
	2018	2022	변화율	2018	2022	변화율	2018	2022	변화율
도입 및 사용 중	71.9	96.6	+24.7	29.8	63.8	+34.0	22.8	58.6	+35.8
도입 예정	19.3	3.4	-15.9	15.8	24.1	+8.3	14.0	6.9	-7.1
미도입	8.8	0.0	-8.8	54.4	12.1	-42.3	63.2	34.5	-28.7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p. 93, Table 6.10. 재인용

-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 조세행정당국에서 분석 사용이 일반화되고 통합됨에 따라, OECD 세무행정포럼(OECD's Forum on Tax Administration)은 조세 행정당국이 분석사용 및 역량에 대한 현재 성숙도를 자체 평가할 수 있도록 분석 성숙도 모델(Analytics Maturity Model)을 개발함
 - ▶ 40개 이상의 조세행정당국이 이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국의 분석 전략에 대한 지침과 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2) 납세자 프로그램(Taxpayer programmes)

- ▣ 타겟 리스크 관리를 위한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특정 납세자 그룹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립하는 것임
 - ▶ 조세행정당국이 특정 납세자 그룹을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두 가지 특정 분야는 대기업 납세자와 고액 순자산가(High Net Wealth Individuals, HNWI)임
 - ▶ 이러한 고액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의 수는 적지만 일반적으로 징수된 세수에서 불균형적인 비중을 차지함
 - 개별 국가 단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총 순수입의 30~60%가 고액 납세자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것으로 나타남

3) 향후 리스크에 대한 대비

- ▣ 조세행정당국이 현재의 규정 준수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함

- ▶ 데이터 가용성의 증가와 함께 조세행정당국의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조세행정당국은 미래의 세무 리스크를 더욱 강력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었음
- ▶ 많은 조세행정당국이 예측을 통해 새로운 규정 준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를 평가하고 적절한 완화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됨
- ▶ 일례로 핀란드 국세청은 미래 예측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미래 예측 활동에 참여하는 그룹은 운영 환경의 변화와 폭넓은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조세행정당국의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래 정보를 공유함

다 규정 미준수의 예방

- ▣ 조세행정당국은 세금신고 및 납부에 대해 납세자의 자발적 준수(voluntary compliance)에 크게 의존하며, 이를 위한 납세자의 규정 준수 태도는 특히 중요함
 - ▶ 규정 준수는 조세행정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요소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인 준수를 지원하고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관련 접근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 납세자에게 신고 및 납부기한 알림
 - 사전 신고제도나 납세자 포털을 통한 데이터 접근을 통해 이미 수집된 제3자 데이터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을 촉진
 - 규정 준수를 장려하기 위한 타겟팅 캠페인 실행
 - 교육 및 지원 이니셔티브의 제공
 - ▶ 납세자와의 소통 간소화 또한 유용할 수 있는데, 스페인 국세청은 납세자와의 소통 내용과 구조를 간소화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음
 - 문서의 목적, 수신자, 납세자가 요청한 조치에 대한 주요 정보를 간단한 언어로 요약한 요약 페이지, 정보의 간소화를 위한 문서 길이 축소, 납세자의 응답 양식 간소화, 전화 및 웹챗을 통한 고객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납세자의 응답이 20.2% 증가하였으며 직원들의 행정적 부담이 감소됨
 - ▶ 또한 조세행정당국은 납세자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상기시키고 권장하는 편지, 이메일 또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도 함

- 이는 일반 대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특정 의무에 대해 불이행한 납세자에 대한 개인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1) 행동 통찰력과 넛지

▣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또다른 접근 방식은 행동 통찰력을 사용하는 것임

- ▶ 행동 통찰은 심리학, 신경과학, 행동경제학과 같은 행동과학의 원리를 사용하여 개인이 정보를 어떻게 흡수하고 처리하며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학제간 연구 분야임
- ▶ 호주는 상품 및 판매세(Goods and Sales Tax) 위험 모델을 구축하여 납세자가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넛지 메시지를 전송함
 - 1차년도(2021~2022)에 19만 6천개의 넛지 메시지가 10만 2천명의 납세자에게 전송되어, 5,110만호주달러의 자체 수정 및 세수 확보가 가능하였음
 - 2차년도(2022~2023)에는 54만 3천개의 넛지 메시지가 21만 7천명의 납세자에게 전송되어, 4,320만호주달러의 자체 수정 및 세수 확보가 가능하였음
- ▶ 중국은 세금신고서 제출 건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다양한 유형의 안내문과 알림을 보내는 방안을 모색해 옴
 - 문자메시지, 전화, 중국 소득세 어플 등을 통한 안내로 신고 건수가 13% 증가하였음
- ▶ 슬로바키아는 납세자의 자발적 준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 납세자 및 기업 납세자 모두에게 납세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한 온라인 알림을 제공함
- ▶ 튀르키예는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조세행정당국 직원의 업무량 축소를 위해 행동 통찰을 활용함
 -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그룹에 SMS 메시지를 보내 소득세 납부 및 신고기간 마감일을 상기시켰으며,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SMS 메시지로 알림을 전송함

2) 납세자 평가 프로그램

▣ 더 많은 조세행정당국이 납세자의 의무 준수를 측정하는 지표를 제공하여 납세자 평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음

- ▶ 조지아는 납세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해 (1) 사업자 등록 (2) 소득신고의 적시성 (3) 신고된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 (4) 예산 책임성의 네 가지 지표를 사용함
- ▶ 라트비아는 기업의 규정 준수 여부를 추적할 수 있도록 납세자 등급을 도입하였음
- ▶ 리투아니아는 36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규정 미준수 위험이 있는 납세자를 식별함
- ▶ 슬로바키아는 세금 신뢰성 지수를 사용하여 납세자를 세금 미납, 세금신고서 지연 제출, 세무조사 결과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평가함

라 규정 미준수에 대한 대응

- ▣ 조세행정당국은 납세자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지 여부를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 사용 등의 여러 방법과 도구의 조합을 통해 결정함
 - ▶ 벨기에는 국세청 직원들이 일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합 운영 시스템 어플리케이션(Data Integrated Operational System application, DIOS)을 도입함
 - ▶ 캐나다는 해외 원천 매칭(Foreign Source Matching, FSM) 프로그램을 통해 공통 보고 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및 해외금융자산신고(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데이터를 사용함
 - FSM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미신고 소득이 있는 캐나다 거주자 개인을 대상으로 외국 원천 데이터와 소득세 신고에 대한 정보를 비교함

〈표 1-VI-8〉 신고서 제출 이후, 공식 감사 이전 조세행정당국의 개입(2022년)

(단위: %)

제3자 데이터 교차 검토를 통한 불일치 식별	납세자 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상치 식별	위험 검토	추가 정보 요청	기타 개입
91.4	81.0	87.9	82.9	41.4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102, Table 6.16. 재인용

- ▣ 이러한 방법과 도구를 활용하여 조세행정당국은 납세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납세자에게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 필요시 납세자가 부담세액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준수 조치 (compliance action)’가 개시될 수 있음
 - ▶ 데이터의 가용성이 증가하고 정교한 분석 모델과 인공지능이 도입됨에 따라 조세행정당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조세탈루 가능성이 있는 신고 및 거래를 더 잘 식별할 수 있게 됨

- ▣ 각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취할 수 있는 규정 준수 대응조치의 유형은 다를 수 있으며, <표 1-VI-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 90%의 조세행정당국이 전통적인 세무조사를 통합하는 규정 준수 개입을 위한 공식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거나 개발 중인 상태임
 - ▶ 일례로 프랑스는 재산신고의 광추출 프로젝트(Optical Extraction of Estate Declarations project)를 통해 광학 문자 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과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사망한 개인의 자산과 부채를 자세히 설명하고 유산세의 올바른 평가와 징수에 활용함

<표 1-VI-9> 규정 준수에 대한 일반적 접근(2022년)

(단위: %)

규정 미준수에 대한 비례적 대응 제공	세금신고서의 오류 또는 누락을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오류나 누락을 조기에 공개하고 협조하는 경우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상기시키고 격려	규정 준수 개입을 위한 공식 프레임워크가 존재하거나 개발 중임
86.2	98.3	82.8	94.8	89.7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105, Table 6.18. 재인용

- ▣ 불일치 또는 이상 징후를 식별하고 납세자와의 추가 소통으로도 불이행 또는 오류의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행정당국은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조사의 범위와 정도는 잠재적인 문제와 사전 조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인도 국세청은 데이터 마이닝 및 인텔리전스 정보 시스템으로 고위험 환급(High-Risk Refund, HRR) 규칙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소득세 신고를 처리하는 중앙처리센터(Central Processing Centre, CPC)와 공유함으로써 잘못된 환급 청구 건수를 줄일 수 있었음
- ▶ 라트비아는 2023년부터 세무조사 방식을 간소화하여 다양한 유형의 조사를 하나의 조세 통제(tax control)로 간소화하였음
 - 이를 통해 납세자와 협력하고 규정 준수 수준을 제고함

1) 납세자의 비공개에 대한 행정 제재

- ▣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하는 경우 조세행정당국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제재를 부과함
 - ▶ 이러한 제재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동을 방지하고, 특정 법률 조항(예: 세금신고서 제출)을 준수하도록 함
 - ▶ 거의 대부분의 조세행정당국은 납세자 비공개에 대해 행정 제재를 적용하고 있음

〈표 1-VI-10〉 납세자의 비공개에 대한 행정 제재(2022년)

(단위: %)

납세자 비공개에 대해 조세행정당국이 행정 제재를 적용함	‘그렇다’로 대답한 경우			
	주요 세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비공개 과태료 프레임워크가 존재함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과실(즉, 책임의 정도)을 고려함	조세행정당국은 적절한 상황에서 과태료를 경감/감면할 권한이 있음	조세행정당국은 비공개로 인해 부과되는 행정 제재를 받는 일부/모든 납세자의 세부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있음
96.6	92.9	78.6	82.1	25.0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108, Table 6.20. 재인용

2 개입 효과성 측정

- ▣ 약 70%의 조세행정당국에서 세무조사 이전 단계에서 수행된 개입(intervention)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있음
 - ▶ 개입 효과성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는 통계 모델 활용(예: 조정 비율, 추가 신고율), 세무조사로 이관된 건수의 측정 등임
 - ▶ 다수의 조세행정당국이 세무조사 효과성의 지표로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한 세무조사(93%), 추가과세 평가(88%), 세무조사의 적용 범위(74%) 등을 활용하고 있음
 - 그 외 지표로는 세무조사 이후 패소한 분쟁 건수, 세무조사 또는 기타 개입 조치 이후 납세자의 긍정적 변화, 동 산업 내 다른 납세자의 자발적 준수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음

〈표 1-VI-11〉 개입 효과성 측정(2022년)

(단위: %)

세금신고 전후 개입의 효과성 측정 (세무조사 전)	집행된 조치의 효과성 측정 지표				세무조사의 생산성 판단 기준 여부
	세무조사 적용 범위	세무조사로 인한 추가 과세의 평가금액	세무조사의 긍정적 결과 비중	기타 지표	
70.7	74.1	87.9	93.1	44.8	67.2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09, Table 6.21. 재인용

가 세무조사

- ▣ 세무조사를 통한 수정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국가별로는 차이를 보였음
 - ▶ 평균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부과된 세금은 총 세수의 3.4~4.4%로, 2018~2020년에는 이 비중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2021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 세목별로 추가 징수된 세액은 법인세가 8.8%로 가장 높았으며, 부가가치세는 3.5%로 개인소득세(1.6%) 및 원천세(1.0%)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 ▶ 또한 고액납세자 전담부서의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된 세액은 총 추가 징수액의 약 30%를 차지함

〈표 1-VI-12〉 세무조사 수정율 및 추가 징수세액(2018~2022년)

(단위: %)					
	2018	2019	2020	2021	2022
세무조사 수정률(39개국 평균)	57.3	58.7	57.7	61.3	60.9
추가 징수세액(48개국 평균)	4.1	4.1	4.4	3.8	3.4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09, Table 6.22. 재인용

〈표 1-VI-13〉 세무조사 사례

국가	계획	내용
일본	금융기관 조회의 디지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일본 국세청이 세무조사 및 징수 과정에서 예금 및 저축 정보 조회를 위해 금융기관에 요청한 건수는 연간 약 600만건임 • 과거에는 공문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하였으나, 2021년 10월부터 온라인 조회 시스템으로 전환함 •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응답 기간이 몇 주에서 2~3일로 단축, 국세청과 금융기관 모두의 행정부담이 크게 감소하였음
포르투갈	세무조사의 디지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르투갈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모든 문서의 완전한 디지털화를 추진, 세무조사 과정 전반적으로 추적 및 관리 기능이 강화되었음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종이 사용량을 줄이고, 물리적 보관 공간 축소 등의 비용 절감 효과와 환경보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포르투갈 국세청의 지속 가능성에도 기여함 • 이러한 디지털화는 납세자에게도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성 제고: 세무조사 절차 전반의 체계적인 문서화가 이루어져, 납세자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단계별 확인이 가능 - 소통 편의성 제고: 국세청-납세자 간 모든 소통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져, 신속한 세무조사의 진행 및 문제 해결이 가능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12, Box 6.13. 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함

나 조세범칙조사

- ▣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조세행정당국 중 절반 이상이 조세범칙조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조사에 관여하는 30개국의 조사 담당 기관에 기소된 총 사건 수는 2019년까지는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20년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감소 추세는 국가별 데이터에서도 나타나며, 조세범칙 수사 담당 기관의 약 75%에서 기소된 사건의 수가 감소하였음

〈표 1-VI-14〉 조세범칙조사 기소건수 및 전년 대비 변화율(2018~2022년)

(단위: 건,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사건 수(30개국)	41,081	39,768	33,210	29,918	23,523
전년 대비 변화율	-	-3.2%	-16.5%	-9.9%	-21.4%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13, Table 6.23. 재인용

3 납세규정 준수 부담

- ▣ 조세행정의 핵심과제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한 재원의 조달이며, 이 과정에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중요함
 - ▶ 과도한 부담은 납세자의 의지 또는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의 기회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조세행정당국은 납세규정 준수에 대한 부담 완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 이는 전자신고 및 납부 시스템, 미리 채움(pre-filing) 제도, 신규 소통채널 도입 및 개선 및 셀프 서비스 옵션 확대 등을 통해 드러남
 - ▶ 지속적 개선 및 중점 파악을 위해 1/3 이상의 조세행정당국은 납세자의 납세규정 준수에 대한 부담을 평가하기 시작, 대부분이 연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음

- 약 85%의 조세행정당국은 납세이행 부담에 대한 인식을 평가함
- 분야별로 부담의 정도가 다름을 고려하여, 80% 이상의 조세행정당국은 세분화된 접근법을 통해 납세규정 준수에 대한 부담을 측정함
- 납세이행에 대한 부담을 평가하는 조세행정당국 중 70% 이상이 부담 완화를 위한 공식적인 전략을 수립함

〈표 1-VI-15〉 납세규정 준수 부담에 대한 평가(2022년)

(단위: %)

납세규정 준수 부담 평가 여부	납세이행 부담 평가 시,						
	평가 빈도			규정 준수 부담에 대한 인식 측정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	납세자 분야별 모니터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략 수립
	매년	격년	그 이하				
36.8	57.1	14.3	28.6	85.7	61.9	81.0	71.4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14, Table 6.24. 재인용

VII 징수(Collection)

1 서문

- ▣ 징수 기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함
 - ▶ 지난 몇 년 동안 ‘미리채움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 또는 신고서 제출은 여전히 납세자의 책임 영역으로 남아 있음
 - 2022년 기준, 기한 내 신고 비율은 76~87%였으며, 최소 1억건 이상의 세금신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았음
 - 조세행정당국은 신고의 지연 및 미제출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 체납액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칠레를 제외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조세행정당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에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보고함
 - 각 당국으로부터 제공된 정보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전체 인력의 11%가량이 징수 업무에 투입되고 있음

2 징수 기능의 특징

- ▣ 조세 시스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발적 준수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조세행정당국은 징수 방식이 목적에 부합하고, 시스템의 관리체계가 납세자의 권리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함
 - ▶ 단순히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만이 아닌, 납세 의무 이행 의사가 있음에도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해 세금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를 지원하는 고객 중심의 접근방식에 무게를 두어야 함을 의미함

- 조세행정당국이 프로세스에 대한 연계적(end-to-end) 또는 시스템 관점에서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패턴 및 이상 징후를 식별하기 위해 납세자의 이전 이력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음

〈표 1-VII-1〉 징수관리 개선 사례

국가	계획	내용
캐나다	징수검증 업무관리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검증업무관리시스템(Collections Verification Workload Management System, CVWMS)은 징수 및 납세이행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의 간소화, 운영을 개선하는 사례관리 시스템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수평적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새로운 기능이 여러 업무에서 동시에 개발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CVWMS는 행정부담 감소, 시스템의 반응(agility)과 복원력(resilience) 향상, 데이터 관리 및 표준의 최적화라는 성과를 거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사용자 입장에서의 주요 이점은 계좌 생성 및 담당자 배정 시간 단축, 보고기능 개선, 정보접근 속도 향상, 손실된 세수(lost revenue) 회수 속도 증가, 대국민 서비스 품질의 제고 등임
조지아	조세채권 관리체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조지아 정부는 납세자의 납세이행도 제고를 위해 조세채권 관리체계 개선(Tax Debt Management Reform)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함 • 이후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된 세금의 규모가 증가하거나 최근 체납한 납세자를 중심으로 조치가 필요한 납세자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선별하여 조세행정당국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는 체납자 식별 기준을 마련 - 체납 사례 관리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여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 • 이러한 시도는 총 세수 대비 체납세액 비율이 20% 이하로 감소, 자발적 체납세액 납부율 상승 등의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징수유예 합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그중 일부는 직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음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p. 116~117, Box 7.1. 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함

- ▣ OECD는 ‘채납액관리에서의 업무 증진(Working Smarter in Tax Debt Management)’ 및 ‘성공적인 채납액관리: 숙련도 측정 및 개선 지원(Successful Tax Debt Management: Measuring Maturity and Supporting Change)’ 을 통해 채납액 징수의 핵심요소와 관리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 2014년 보고서에서는 현대에서 채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에 대하여 <표 1-VII-2>와 같이 개요를 제시함

<표 1-VII-2> 채납액 징수에 필요한 기능	
기능	내용
고급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적시에 적절한 개입을 함으로써 적합한 채납자를 정확하게 선정할 수 있음
처리전략 (Treatment strateg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 기능에는 납세자의 채무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및 적절한 강제집행 조치와 같은 다양한 개입이 필요함
아웃바운드 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수의 채납액을 효율적으로 추심할 수 있도록 지원함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납된 세금의 징수는 전문적인 기능이므로 올바른 성과 측정과 지속적인 개선 접근 방식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함
국경을 넘어서는 채납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공조, 특히 조세행정당국 간 협정을 통해 조력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17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함

- ▶ 2019년 보고서에서는 성공적 채납액 관리를 위한 원칙 네 가지를 개입의 시기를 중심으로 제시함
 - 사전적 예방 조치를 검토하고, 집행조치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와의 조기에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효율적이고 비례적(proportionate)인 집행을 통해, 현실적인 탕감 전략의 수립을 제시하였음
 - 전략의 기본 전제는 채납된 세금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이상적으로는 채납이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세금의 채납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임

3 체납 징수 실적

- ▾ 회계연도 말 기준 체납의 규모는 약 2.7조유로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연말 체납 총액’은 조세채무 및 조세행정당국이 담당하는 기타 수입에 대한 채권의 총액으로 이자와 과태료가 포함됨
 - ▶ 회계연도 말 기준, 징수 가능 체납액은 약 8,100억유로에 달하고 있음
 - ‘징수 가능 체납액’은 분쟁 중에 있어 징수가 보류된 금액, 법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 그리고 징수 대상이나 납세자가 자금 또는 자산을 보유하지 않아 실질적 회수가 어려운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 ▶ 데이터를 비교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권별 조세제도 및 행정적 절차는 상이하므로, 특정 데이터를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 2022년 말 기준 순세입 대비 총 체납액의 평균은 29%였으나, 일부 국가의 높은 비중이(50% 이상) 전체 평균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며, 이러한 특정 국가를 제외할 경우 비중은 약 13%로 감소함

- ▾ 2018~2022년간 체납율의 변화를 보면, 최근 2년간 순세수 대비 체납액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첫 해인 2020년에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응 조치 차원에서 각 정부가 개인 및 기업 지원을 위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액 징수 유예 조치의 영향임
 - 최근 데이터를 보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체 비율의 변화 추이는 각 관할권에도 반영되는데, 2019~2020년간 86%의 관할권에서 순세수 대비 총 체납액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2020~2022년에는 77%의 관할권에서 감소하였음
 - ▶ 2022년 데이터에서는 총 체납액 중 절반이 징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 대비 4%p 증가한 수치임
 - 다만 어떤 관할권에서는 거의 모든 체납액이 징수 가능하거나, 다른 관할권에서는 징수 가능 금액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관할권별로는 차이를 보였음

〈표 1-Ⅶ-3〉 평균 체납율의 변화(201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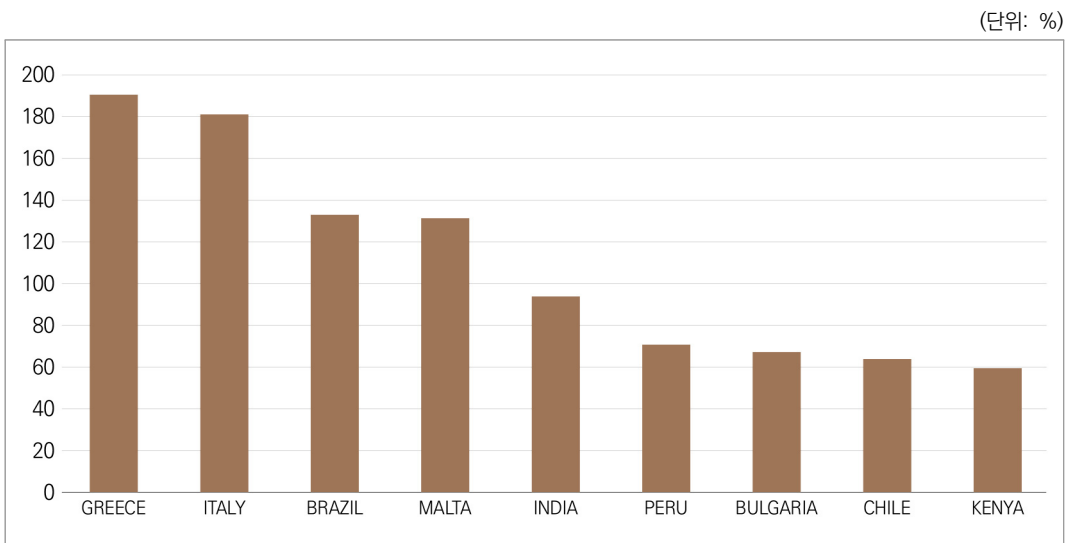
(단위: %)

체납율	2018	2019	2020	2021	2022	백분율 변화 (2018~2022)
징수된 순세수 대비 총 연말 체납액 비율(50개 관할권)	28.2	27.9	34.7	30.2	27.7	-1.7
총 연말 체납액에 대한 총 연말 징수 가능한 체납액 비율 (41개 관할권)	49.6	50.5	53.2	53.4	51.8	+4.4

주: 이 표는 2018~2022년간의 정보를 제공한 관할국의 평균 체납율을 나타내며, () 안의 관할권은 해당 데이터를 제공한 국가의 수를 의미함. 본 표에서 불가리아의 '순세입 대비 총 체납액 비율' 데이터는 연도별 비교가 불가하여 제외되었음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18, Table 7.1.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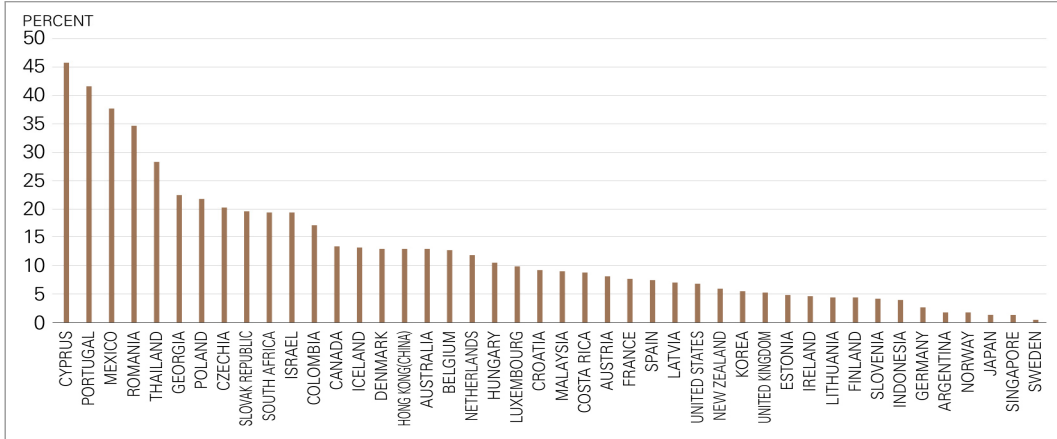
〈그림 1-Ⅶ-1〉 총 순세수 대비 총 체납액 비율-비율이 50% 초과하는 정부(2022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19, Figure 7.1. 재인용

[그림 1-Ⅶ-2] 총 순세수 대비 총 체납액 비율-비율이 50% 미만인 정부(202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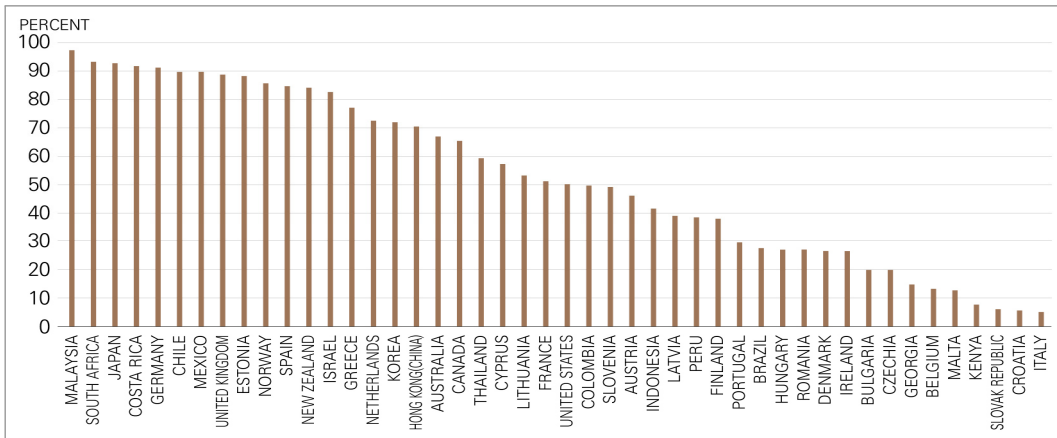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19, Figure 7.2. 재인용

- ▣ 2022년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총 체납액의 절반 이상이 징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8년에 비해 4%p 증가한 수치임
 - ▶ 그러나 조세행정당국 간의 격차가 관찰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체납금이 징수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다른 관할 구역에서는 거의 모든 체납금이 징수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됨

[그림 1-Ⅶ-3] 총 연말 체납액에 대한 총 연말 징수 가능한 체납액(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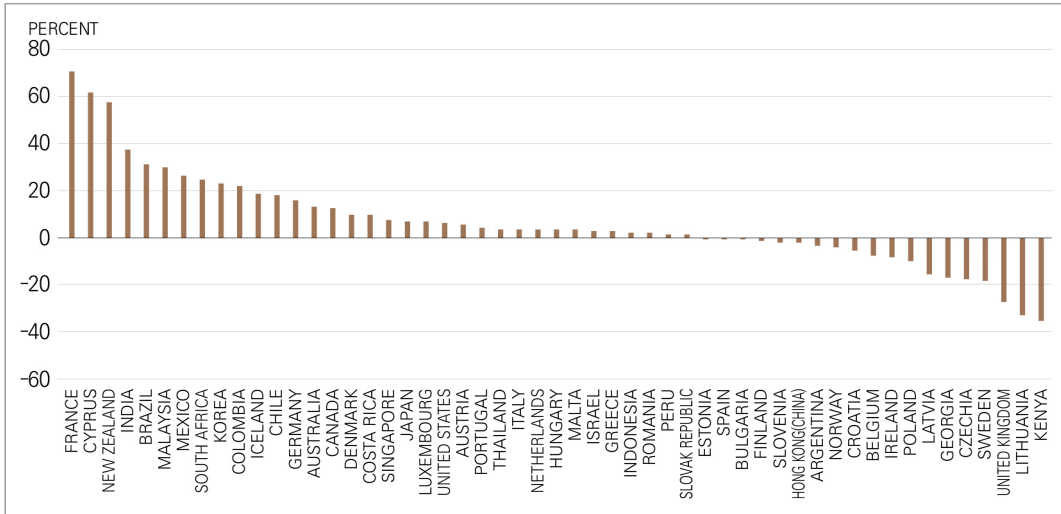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20, Figure 7.3. 재인용

[그림 1-VII-4] 총 체납액 추이(2021~2022년)

(단위: %)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21, Figure 7.4. 재인용

▣ [그림 1-VII-4]는 2021~2022년 사이의 총 연말 체납액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절대 수치로 보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53개 관할권 중 34개 관할권에서 총 기말 체납액이 증가함⁶⁾

- ▶ 유형별 조세 체납의 형태를 살펴보면 개인이 기업보다 적시에 납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
 - 2022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세목별 순세입 대비 체납 비율은 각각 약 20%, 24%였던 반면, 소득세는 15%로 두 세목 대비 훨씬 낮았음
- ▶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기업이 겪은 어려움을 알 수 있는데, 2019~2020년 사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평균 비율은 크게 증가했으나 현재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음
- ▶ 고용주의 원천세 체납 비율은 약 6%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고용주가 직원을 대신하여 해당 세금을 조세행정당국에 전달하는 책임을 가질 뿐, 그 금액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됨

6) 절대적 수치로는 많은 관할권에서 체납액이 증가했지만 총 순세입의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체납액 비중의 감소와 모순되지 않음

〈표 1-VII-4〉 세목별 순세수 대비 기말 평균 체납 징수액 비율 변화(2018~2022년)

(단위: %)

세목	2018	2019	2020	2021	2022
법인세 체납 비율(40개 관할권)	23.7	26.4	30.1	23.9	19.9
개인소득세 체납 비율(41개 관할권)	16.5	14.4	15.8	15.3	15.5
고용주의 원천세 체납 비율(34개 관할권)	7.2	6.5	7.2	6.9	6.2
부가가치세 체납 비율(39개 관할권)	23.8	23.5	30.2	25.1	23.6

주: 이 표는 2018~2022년간 정보를 제공한 관할국의 평균 비율을 나타내며, () 안의 관할권은 해당 데이터를 제공한 국가의 수를 의미함. 본 표에서 불가리아의 데이터는 연도별 비교가 불가하여 제외되었음. 또한 평균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브라질과 그리스의 데이터는 법인세 계산에서, 몰타의 데이터는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각각 제외되었음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21, Table 7.2.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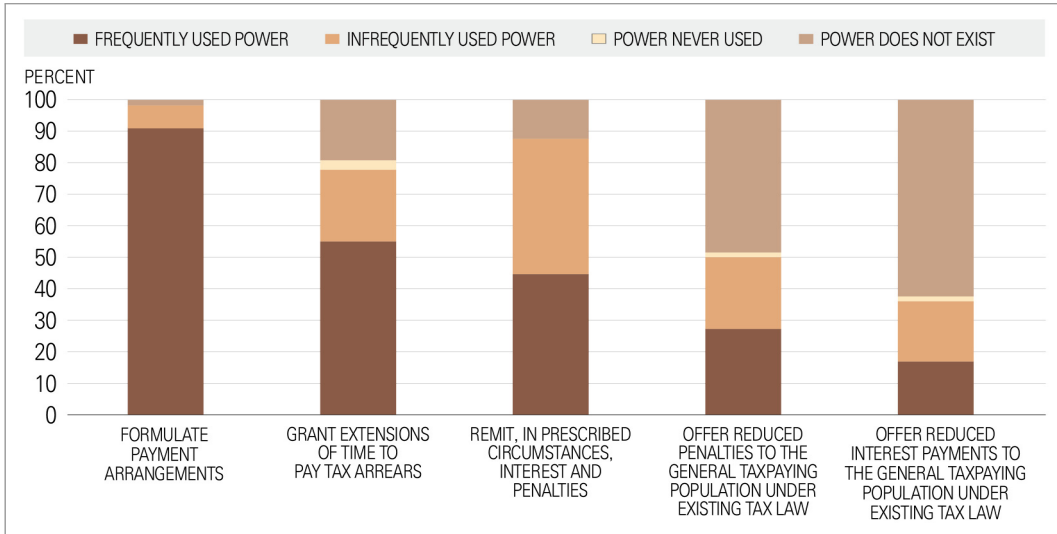
4 징수권의 활용

- ▣ 법률 체계(legislative framework)상에는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체납 관리, 체납액 징수 및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 주요 권한으로는 납세자의 체납액 납부 지원, 체납액 징수, 특정한 방법을 통한 강제적 체납액 징수 등이 있음

- ▣ 대다수의 조세행정당국은 보유 권한 중 납세자의 납부일정 조정의 활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절반 이상의 조세행정당국이 체납액 납부기한의 연장을 자주 허용하고 있음
 - ▶ 이자 및 과태료 감면 관련해서는 약 40% 이상의 조세행정당국이 이를 자주 활용하는 반면, 동일한 비중의 조세행정당국은 반대로 해당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관할권별 조세행정당국의 납세자 대상 과태료 및 이자감면 허용 정책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는 면이 있으나, 권한을 가진 조세행정당국의 절반 가량은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그림 1-VII-5〉 납세자 대상 체납액 납부 지원 관련 권한(2022년)

(단위: %)



주: 범례는 좌측부터 행사 빈도가 높은 권한, 자주 행사되지 않는 권한, 행사되지 않은 권한, 해당 권한이 없는 비율을 각각 의미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22, Figure 7.5. 재인용

〈표 1-VII-5〉 납세자의 체납액 납부 지원 사례

국가	계획	내용
캐나다	납부계획 조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나다에서는 세금을 바로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이 캐나다 국세청과의 대면 상담 없이 납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납부계획조정(Payment Arrangement Calculator, PAC) 서비스는 2017년 6월 canada.da에서 처음 공개되었으며, 납세자의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빈도를 계산하도록 안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안 포털에 로그인 후, PAC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자동이체(Pre-authorized Debits, PAD) 결제 옵션을 선택,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설정 가능 2023년 2월에는 PAC와 PAD가 통합되면서 납부금액 조정, 적용 이자율 확인, 납부시작일, 납부횟수, 가산세 포함 납부총액 계산 등이 가능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러한 기능 개선은 CRA 콜센터 문의량 감소 및 온라인 결제를 선호하는 캐나다 납세자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서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 방식을 구축함 영국 국세청은 세무행정 비전 중 하나인 납세자 지원 확대를 위해 자율적 납부 서비스(Self-Serve Time to Pay, SSTTP)를 신규 도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SSTTP는 전화 상담 의존도를 줄이고, 세무서비스의 디지털화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 1-Ⅶ-5〉 의 계속

국가	계획	내용
영국	자율적 납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TTP는 적격 납세자가 체납액을 먼저 납부하고, 자동이체(Direct Debit) 방식으로 납부 계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납세자가 소득 및 지출정보를 입력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납부 계획을 지원하는 경제성직접평가(Manual Affordability Assessment) 기능을 추가함 - 필요시 온라인상담을 통해 지원이 가능함 • SSTTP 도입 이후, 누적액 기준 총 1억 9천만파운드 규모에 해당하는 2만 2,500건 이상의 상환계획이 설정되었음¹⁾

주: 1) 2025년 2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48억원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p. 122~123, Box 7.2. 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함

▣ 각국의 조세행정당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음

- ▶ 주요 수단으로는 해당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다른 세금과 상계(Offset)하여 체납액을 충당하거나, 급여 및 재산에 대한 압류 명령(garnishee orders) 활용, 그리고 은행 또는 고용주와 같은 제3자를 통해 징수하는 방안 등이 있음
- ▶ 그러나 법적 또는 행정적 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다른 국가의 조세행정당국과 협력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세행정당국의 약 절반이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Ⅶ-6〉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체납액 징수 사례

국가	계획	내용
벨기에	BENE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조세행정당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타국에 거주하는 체납자(tax debtors) 관리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세행정당국은 자국 거주자가 아닌 체납자를 상대로 한 징수권한의 행사는 제한적임 - 통상적으로 이러한 세금의 징수를 위해서는 상호간 징수 지원을 요청해야 하나, 이는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소요됨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벨기에 및 네덜란드 조세행정당국은 2023년 BENE 프로젝트를 시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프로젝트의 주요 대상은 네덜란드에 거주하면서 벨기에 조세행정당국에 체납금이 있거나, 반대로 벨기에에 거주하면서 네덜란드 조세행정당국에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임 • 이 프로젝트는 납세규정 준수를 높이고 공식적 상호간 징수지원 요청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표 1-Ⅶ-6〉 의 계속

국가	계획	내용
벨기에	BENE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간 징수지원은 체납세액이 발생한 조세행정당국에서 납세자에게 1차 납세 고지서(Reminder letter)를 발송하고, 30일 이내 납부 또는 대응이 없을 경우 2차 고지서를 발송함 - 상호간 징수지원 요청은 2차례의 납세고지서 발송 이후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이루어짐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p. 123~124, Box 7.3. 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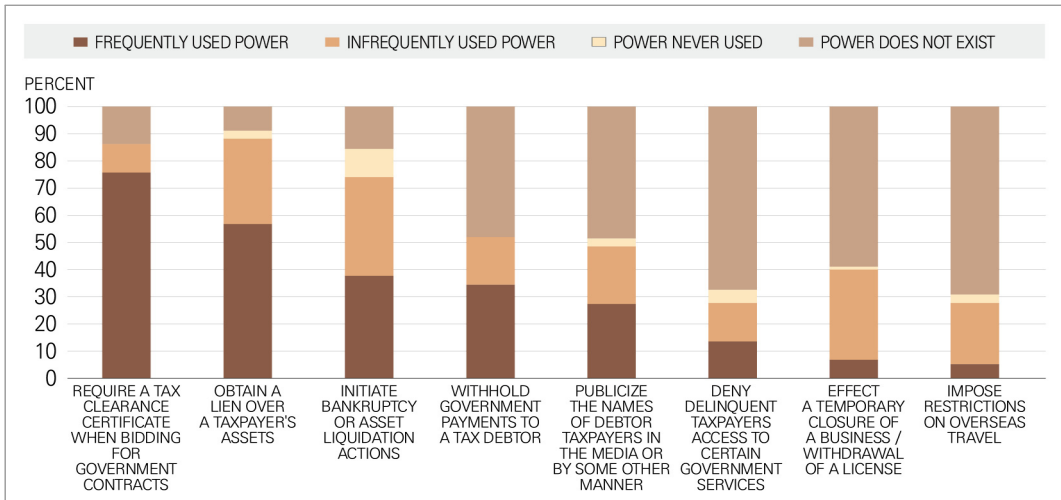
▣ 체납액의 강제적 납부를 위해 조세행정당국이 가진 권한은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는데, 사업장 임시 폐쇄, 체납자 명단 공개, 여행 제한 등이 있음

▶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이러한 권한이 없거나, 보유한 기관들은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매우 드물게 행사함

- 다만 예외적으로 정부 계약에 입찰 시 세금완납증명서(tax clearance certificate)를 요구하는 조치는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낮음에도 매우 효과적이어서 약 75% 이상의 조세행정당국에서 이를 자주 활용하고 있음

〔그림 1-Ⅶ-6〕 체납액 강제적 납부 관련 권한(2022년)

(단위: %)



주: 범례는 좌측부터 행사 빈도가 높은 권한, 자주 행사되지 않는 권한, 행사되지 않은 권한, 해당 권한이 없는 비율을 각각 의미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25, Figure 7.7. 재인용

5 예방적(preventive) 접근

- ▣ 조세행정당국은 체납을 방지하고, 미납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 ▶ OECD 보고서에 보고된 예측 모델링과 실험 기법의 발전은 조세행정당국이 개별 납세자가 가진 리스크에 맞춘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 ▶ 조세행정당국이 취하는 접근법은 크게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과 처방적 분석(Prescriptive Analytics) 두 가지가 있음
 - 예측 분석은 특정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중점에 둔 방식으로, 개인 또는 기업의 체납 가능성, 파산 또는 기타 납부 문제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는 모델링 분석을 포함함
 - 처방적 분석은 조세행정당국이 특정 납세자 또는 납세자 그룹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납세자의 행동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표 1-VII-7〉 예방적 접근 사례

국가	계획	내용
리투아니아	체납자 리스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리투아니아 국세청은 채무위험 관리 모듈(Debt Risk Management Module)을 도입, 국세청의 세무회계정보시스템(Tax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TAIS)과 통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모듈은 체납액을 상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의 식별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채무 리스크 식별 시스템의 도입으로 리투아니아 국세청의 채권회수 과정은 상당히 간소화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리스크 평가의 주요 기준은 법인의 재무보고서임 - 「리투아니아의 부실법인에 관한 법률(Law on Insolvency of Legal Persons)」에 의하면, 법인의 부채가 자산가치를 초과할 경우 파산 상태로 간주됨 • 리투아니아 국세청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스페인	납세규정 준수를 위한 예방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은 체납액의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라는 리스크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위해 세 가지 이니셔티브를 시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리스크를 정확히 식별 및 측정하고, 자산 처분, 회수 이력 등의 여러 지표를 분석하여 체납액의 회수 가능성을 평가함 - 분석정보의 원활한 교환 등 부서 간 협력 강화 - 원활한 예방적 조치를 위한 IT 기능 개선 • 이러한 접근법의 목적은 납세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자동화 및 분석적 평가를 통해 필요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26, Box 7.4.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함

VIII 분쟁(Disputes)

- ▣ 본 장은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관할국의 분쟁 해결 및 검토 전략을 살펴보고, 분쟁 해결의 현황을 다룸
 - ▶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납세자가 처분 및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임
 -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는 법률이나 납세자 현장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⁷⁾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의 강화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당국의 과세권 행사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함
 - ▶ 동시에 과세관청과 납세자는 처음부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여 양 당사자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 ▶ 이는 과세당국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이며, 평균적으로 전체 직원 수의 약 5%가 소송, 분쟁 해결, 이의신청 및 판결을 포함한 분쟁 관리 업무에 전념하고 있음

1 분쟁 해결 검토 체계

- ▣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58개 관할국 모두 납세자에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함
 - ▶ 거의 모든 행정당국은 내부검토 체계를 보유함
 - ▶ 다수의 행정당국은 납세자에게 외부기구의 독립검토를 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함

7) 관할국에서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납세자의 권리에는 알 권리·지원을 받을 권리·의견을 표명할 권리, 이의를 제기할 권리, 정확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지 않을 권리, 명확성 보장, 사생활 보호, 비밀보장이 있음. 납세자의 의무에는 진실의무, 협력의무, 적시에 정확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할 의무, 기록 보관 의무, 기한 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46, Table 9.4.).

- 이러한 선택권은 잠재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도록 하며 납세자를 위한 법적 확실성 향상에 도움을 줌
- 내부 및 외부검토 체계를 모두 제공하는 행정당국의 약 80%는 납세자에게 외부기구 사건 검토를 요청하기 전에 내부검토를 거치도록 요구함

〈표 1-Ⅷ-1〉 분쟁 해결: 사용 가능한 검토 체계(2022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납세자가 이용 가능한 체계			납세자는 내부 검토가 허용되는 경우 내부 검토를 선행 청구하여야 함
과세당국의 내부 검토	외부기구의 독립 검토	상소법원의 독립 검토	
98.3	93.1	100.0	80.7

주: 행정 비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3, p. 128 재인용

- ▣ 분쟁 해결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조세행정당국이 사법 절차의 시기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조세행정당국은 분쟁 해결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향상되도록 작업 중임
 - ▶ 이러한 작업에는 중재 또는 기타 비사법적 절차도 포함됨
 - ▶ <표 1-Ⅷ-2>에 제시된 사례는 조세행정당국이 사건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보여줌

〈표 1-Ⅷ-2〉 분쟁해결 사건 관리 사례

국가	내용	
브라질	절차 및 혐의의 분류 및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은 사건의 적체를 해소하고 판결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을 단축하고, 한정된 인적자원 내에서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절차 및 혐의의 분류 및 표시' 계획을 수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계획에는 납세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는 혐의의 목록 작성, 이의 신청에 포함된 혐의의 식별, 제시된 혐의에 따라 판사에게 사건 그룹을 선정 및 배포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됨 - 또한 보다 동질적인 절차 그룹을 구성하여 전략적 의사 결정과 판단을 최적화하고, 행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 결정 발표 시 절차 그룹을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마련됨

〈표 1-Ⅷ-2〉 의 계속

국가	내용	
브라질	절차 및 혐의의 분류 및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인공지능의 머닝러신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일관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절차 분류를 통한 평가 개선, 판결 활동의 절차적 변경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도 진전이 이루어짐 - 특히 면책 사유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러한 계획을 통해 2023년의 사건 해결 건수가 2022년에 비해 9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사우디아라비아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도화 사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Njaz 프로젝트는 사건 등록부터 사법 결정에 이르기까지 GSTC의 핵심활동과 관련된 법률 및 세무 절차를 위한 스마트 지능 솔루션을 제공함 •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개선하고, 불일치를 방지하며, 규정을 준수하고, 과거 사건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총 20개의 사업과제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다음의 네 가지 테마로 분류된 활용 사례를 통해 해결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정리: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한 사건판결 간 불일치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분류 기술을 사용하여 중복 사건을 감지하고 유사성을 식별하여 사건 간에 대한 일관성 검사를 수행함 - 규정 준수 분석: 사건을 GSTC 표준에 맞추어 검토하며, 고급 데이터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문서 구조 및 관련 내용에 대한 검증 검사를 실행함 - 의사결정 지원: 회귀모델과 같은 고급 데이터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사건 분석 및 의사결정 절차를 지원하며, 의사결정 초안 작성·품질 보증 및 관리 등의 작업이 이에 포함됨 - AI 분석: 결정론적 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추세 및 통찰력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과거 의사결정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확보하고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포함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p. 128~129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함

▣ 분쟁 해결 절차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보고·감독 체계가 필요하며, 많은 행정당국은 이용 가능한 관리 정보 수준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임

▶ 〈표 1-Ⅷ-3〉과 〈표 1-Ⅷ-4〉는 내부 검토와 외부 검토 모두에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개시된 사건 수와 회계연도 말 현재 계류 중인 사건 수 변동을 비교함

-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일부 행정당국은 개시된 사건 수가 증가했다고 보고함
-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대부분의 행정당국은 개시된 사건 수와 회계연도 말에 계류 중인 사건 수가 감소했다고 보고함
- 외부 검토 중인 사건의 경우 지난 3년간 동일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표 1-Ⅷ-3〉 분쟁해결: 2018~2022년 동안 개시된 사건 수 변동

(단위: %)

변동	내부 검토 절차에서 개시된 조세사건				외부기구의 독립 검토 절차에서 개시된 조세사건			
	연도 간 변동				연도 간 변동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증가	51.0	39.2	56.9	51.0	44.4	27.0	44.4	55.3
감소	49.0	60.8	43.1	49.0	55.6	72.7	55.6	44.7

주: 개시된 사건 수의 증가 또는 감소를 보고한 행정당국의 비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30 재인용

〈표 1-Ⅷ-4〉 분쟁해결: 2018~2022회계연도 말 계류 중인 사건 수 변동

(단위: %)

변동	내부 검토 절차에서 개시된 조세사건				외부기구의 독립 검토 절차에서 개시된 조세사건			
	연도 간 변동				연도 간 변동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증가	63.3	44.9	54.0	42.0	51.2	33.3	35.7	37.2
감소	36.7	55.1	46.0	58.0	48.8	66.7	64.3	62.8

주: 계류 중인 사건 수의 증가 또는 감소를 보고한 행정당국의 비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30 재인용

▣ [그림 1-Ⅷ-1]과 [그림 1-Ⅷ-2]는 관할국 수준에서 데이터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회계연도 말 내부 검토 및 외부 검토 중인 사건 수 변동을 보여줌

▶ 일부 관할국에서 보고된 내부 검토 사건 수는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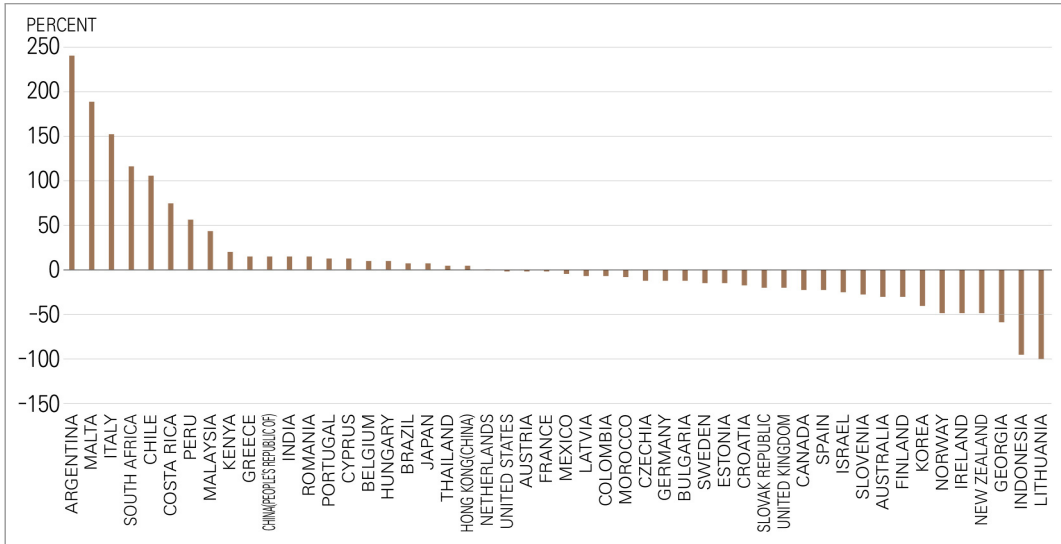
- 동시에 관할국에 따라 사건의 규모가 매우 다르며, 사건 수가 매우 적은 경우 연도 별로 상당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 이는 내부 검토 절차의 사용에서 관할국 간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 1-Ⅷ-3]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남

▶ 개시된 내부 검토 사건 수의 평균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 1-Ⅷ-5>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자 1천명당 개시된 내부 검토 사건 수가 평균 7~8건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VIII-1] 내부 검토 절차: 회계연도 말의 사건 수 변화(2021~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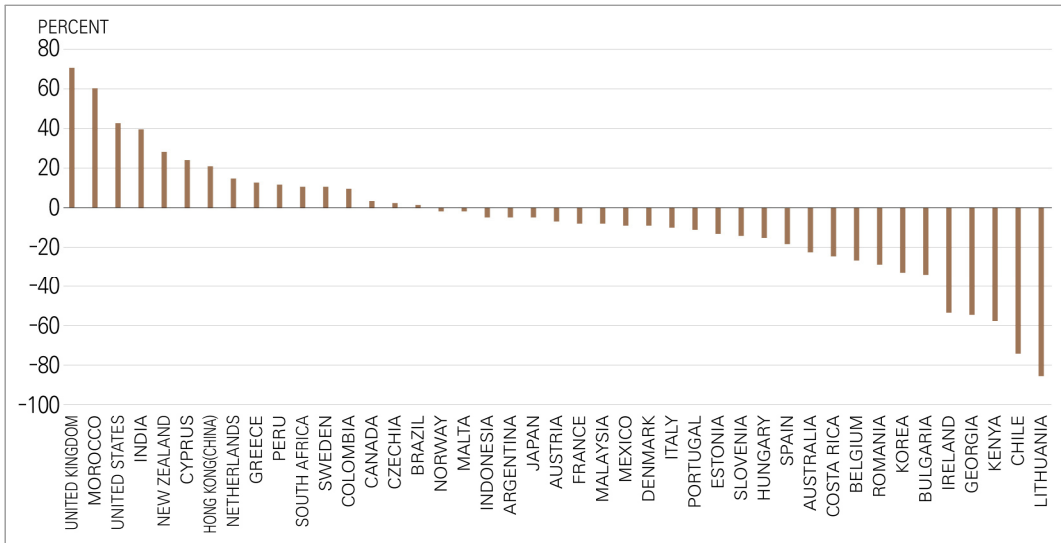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31, Figure 8.1. 재인용

[그림 1-VIII-2] 외부기구의 독립 검토: 회계연도 말의 사건 수 변화(2021~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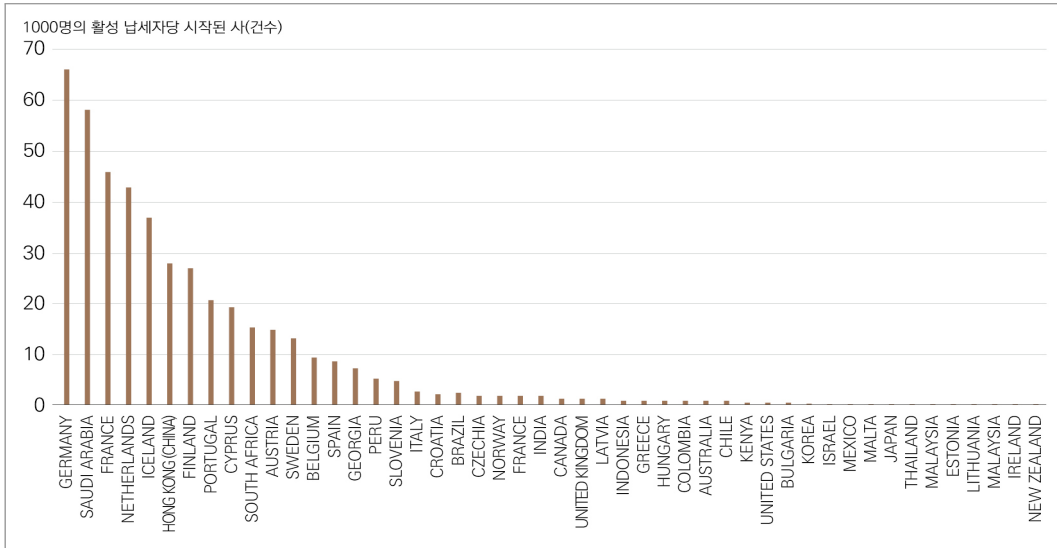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31, Figure 8.2. 재인용

[그림 1-Ⅷ-3]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자 1천명당 개시된 내부 검토 사건의 수(2022년)

(단위: 건)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32, Figure 8.3. 재인용

<표 1-Ⅷ-5>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자 1천명당 개시된 내부 검토 사건 수의 평균 변화(2018~2022년)

(단위: 건)

지표(Indicator)	2018	2019	2020	2021	2022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자 1천명당 개시된 내부 검토 사건의 평균 개수 (40개 관할국)	7.2	7.7	7.3	8.4	7.5

주: 이 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던 관할국의 평균을 보여줌. () 안에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었던 관할국의 수가 표시되어 있음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32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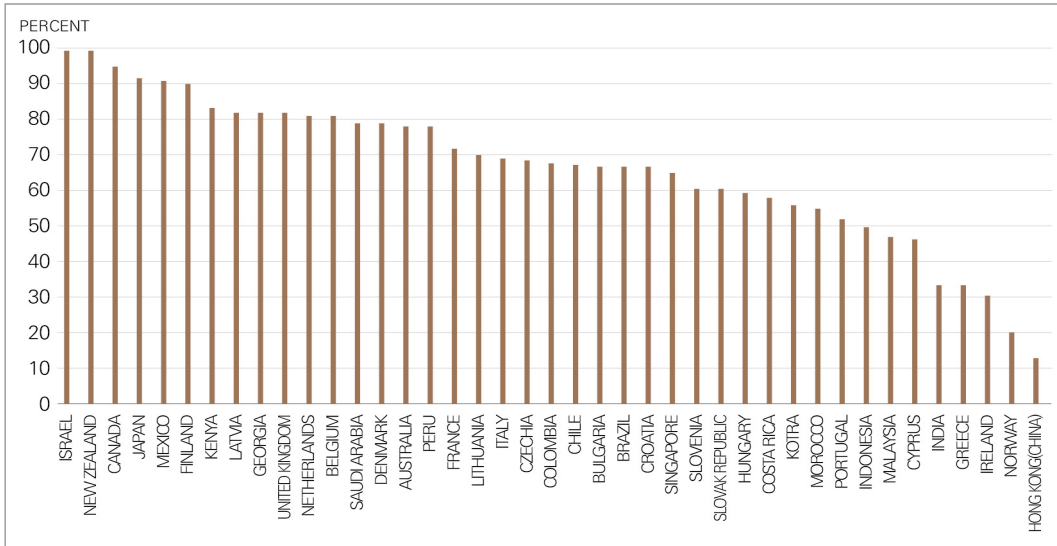
▣ 납세자와 조세행정당국의 세법 해석이 다른 것은 조세 행정상 정상적인 부분이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내부 검토 및 외부 검토 절차를 거친 후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음

▶ 조세행정당국은 대부분의 분쟁이 소송 단계로 넘어갈 필요 없이 해결된다고 보고하지만, [그림 1-Ⅷ-4]는 법원이 결정한 사건과 관련한 행정당국의 현황을 보여줌

- ▶ 일부 관할국의 경우 결정된 사건 수가 매우 적어 연도별로 결과가 크게 변동될 수 있지만, 행정당국의 승소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그림 1-VIII-4] 행정당국의 승소 사건 비율(2022년)

(단위: %)



- 주: 1. 행정당국의 승소 사건은 각 사건에서 다툰 쟁점의 50% 이상에서 행정당국이 승소한 사건을 의미함. 아르헨티나는 예외임
- 2. 아르헨티나: 이 승소한 사건의 수에는 행정당국이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사건이 포함됨. 행정당국이 일부 승소한 사건의 수는 14건(2022회계연도)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33, Figure 8.4. 및 Annex A. Data tables A.94 재인용

▣ 국제적인 조세분쟁 해결 체계로 상호합의 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s, MAP)가 있음

- ▶ 국경을 넘는 거래와 국제 노동 이동이 점점 더 보편화됨에 따라,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어느 관할국에 속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불가피함
- ▶ 이중과세 방지조약, 즉 조세조약은 보통 당사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과세권 배분에 대해 상호 합의된 규칙을 설정하여 이중과세를 제거하고자 함
- ▶ 상황의 복잡성으로 인해 당사자들은 그 규칙의 적용 또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 상당수의 조세조약은 상호합의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공식 절차가 있음
 - 상호합의절차는 조세조약의 효과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한 요소이며, 이중

과세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줌

- 따라서 상호합의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합의 절차 사건을 합리적 기간 내에 신속히 해결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
- ▶ BEPS 액션 14의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에 관한 최종보고서(Making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More Effective, Action 14-2015 Final Report (OECD, 2015))가 발표된 이후,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들은 다음 사항에 합의함
 - 모범관행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동료평가 절차 시행
 - 각 관할국의 MAP PROFILE 공시
 - MAP 통계 보고 이행체계에 따라 MAP 통계 보고 및 공시
- ▶ 조세행정당국은 MAP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5명의 직원이 MAP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일부 관할국에서는 최대 100명의 직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함

2

분쟁 예방

- ▣ 분쟁은 자원 집약적 절차가 될 수 있으므로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며, 분쟁 예방 체계의 핵심 요소는 납세자에게 지침과 조언을 제공하는 것임
 - ▶ 조세행정당국은 광범위한 서비스 전략의 일환으로 분쟁을 예방함
 - 조세행정당국의 웹사이트에 정보 및 소통 도구 제공, 지침 및 납세자 정보 안내서 발간, 교육 및 사업 지원이 포함됨
 - ▶ 많은 행정당국은 구체적인 분쟁 예방 체계를 제공하고 이러한 접근법 중 일부를 본장에서 설명함
- ▣ 결정(ruling)을 통해 행정당국이 집행하는 법률의 해석 및 특정 상황에서 세법의 해석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날의 관행으로, 이는 납세자에게 처분의 확실성을 제공하려는 조세행정당국의 노력의 일환임

- ▶ 공개결정은 특정 상황에서 행정당국이 세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임
 - 공개결정은 특정 규정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규정이 혼란이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경우 법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공개결정이 납세자에게 적용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는 경우 공개결정은 일반적으로 조세행정당국에 기속력이 있음
- ▶ 비공개결정은 납세자(또는 세무대리인)가 제안되거나 완료된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행정당국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구체적인 요청과 관련됨
 - 비공개결정의 목적은 보다 복잡한 거래의 조세 결과에 대해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지원과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임

〈표 1-Ⅷ-6〉 세법 적용에 대한 결정(2022년)

(단위: %)

공개 결정		비공개 결정			
제공	제공 시 결정에 대한 기속력	제공	제공 시		
			결정에 대한 기속력	수수료 부과	정해진 기간 내에 제공
84.2	89.6	86.0	91.8	49.0	79.6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34 재인용

- ▶ 85%의 행정기관이 공개 결정을 제공한다고 답했으며, 이 중 10%는 공개 결정의 기속력이 없다고 답함
 - ▶ 또한 비슷한 비율로 비공개 결정을 제공한다고 답했으며, 이 중 10%는 비공개 결정의 기속력이 없으며 절반은 결정에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응답하였고, 80%는 결정을 적시에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함
- ☐ 국제적인 조세 분쟁 해결 체계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rrangements, APAs)이 있음

- ▶ 양자 및 다자간 APA는 특정 사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동안 둘 이상의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체결되는 구속력 있는 합의임
 - ▶ 점점 더 많은 사례에서 이러한 협력적 APA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세무상 확실성을 제공하여 국제 거래의 세무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조세분쟁을 줄이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 각국 행정기관과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FTA MAP 포럼은 쌍방 APA 매뉴얼(Bilateral Advance Pricing Arrangement Manual(OECD, 2022))을 개발하였으며, 양자 간 이전가격 합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력과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음
- ▣ 협력적 납세순응 프로그램(Co-operative compliance programmes)과 관련하여, 지난 최근 몇 년 동안 납세 순응을 관리하고 조세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적 합의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 이 프로그램은 조세행정당국과 납세자의 투명한 관계에 관련되고, 중대한 조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법을 포함할 수 있음⁸⁾
 - ▶ 협력적 납세순응 프로그램은 조세행정당국 공무원과 납세자 사이의 높은 수준의 관여로 인해 자원 집약적이므로, 전통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규모 기업을 위한 것이었음
 - 행정기관의 약 75%가 대규모 기업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함
 - ▶ 그러나 위험 평가 절차의 기술적 발전으로 많은 수의 조세행정당국은 이 개념을 다른 납세자 그룹에 적용하게 되었다고 보고함(〈표 1-VIII-7〉 참조)

〈표 1-VIII-7〉 납세자 분류별 협력적 납세순응 접근방식(2022년)

(단위: %)

대규모 납세자	고액자산 납세자	기타 납세자
74.1	24.1	39.7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36 재인용

8) 협력적 납세순응의 개념은 여러 OECD 보고서의 주제였으며, 가장 최근 보고서로는 『협력적 납세순응: 개선된 조세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OECD, 2016)』이 있음

- ▣ 국제적 성실납세 확약 프로그램(International Compliance Assurance Programme, ICAP)은 다자간 협력을 통한 위험 평가 및 확약 절차를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임
 - ▶ ICAP은 다국적기업 그룹이 적극적·공개적이며 완전히 투명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특정 활동과 거래에 대한 조세 확실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됨
 - ▶ ICAP은 상호합의 절차와 같은 절차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국적기업 그룹의 위험 평가에 참여하는 조세행정당국이 대상 위험이 낮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확약을 제공함

- ▣ 공동 세무조사(joint audits)는 두 개 이상의 행정당국의 공무원이 단일의 세무조사단을 형성하여 공통의 또는 부수적 이익이 있는 관할국에서 납세자의 역외 사업 활동에 관한 쟁점 또는 거래를 조사하는 것임
 - ▶ 공동 세무조사에 참여하는 조세행정당국은 협력을 통해 이견 또는 잠재적 분쟁을 초기에 발견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

IX 기관 구성(Institutional setups) 및 거버넌스(Governance)

- ▣ 본 장은 세무행정의 제도적 구조, 운영의 자율성, 통제 및 기타 감독 기능, 그리고 세무행정과 납세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세무행정의 기관 구성과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다룸
 - ▶ 조세행정당국은 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운영의 투명성과 조세 제도의 전반적 관리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견제와 균형의 적용을 받아야 함
 - ▶ 이러한 책임 체계는 관할국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제도적 구조와 정부 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짐
 - 또한 입법, 규제 및 사법 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문화적·역사적·정치적 배경에 따라 형성됨
 - 모든 세무행정에 적합한 단일 접근 방식은 존재하지 않음

1

제도적 구조

- ▣ 세무행정을 위한 제도적 구조는 일반적으로 재무부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내의 부서 또는 단체로 설정되거나, 통합된 준자치단체로 구성됨
 - ▶ 이러한 분류는 다음의 네 가지 하위 범주로 세분화할 수 있음
 - 재무부(MOF)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내의 단일 부서 또는 단체
 - 재무부(MOF)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내의 여러 부서 또는 단체
 - 세무행정 및 지원 기능이 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위원장 또는 청장의 책임하에 있는 통합된 준자치단체
 - 세무행정 및 지원 기능이 위원장 또는 청장의 책임하에 있으며, 외부 위원이 포함됨

수 있는 감독 기관/경영위원회⁹⁾에 보고하는 통합된 준자치단체

- ▶ 이러한 분류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으며, 독일과 그리스의 사례가 이에 해당함
 - 독일은 세금 징수 책임이 대부분 지방 행정부에 위임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앙기관이 고도의 조정 역할을 수행함
 - 그리스는 독립적인 공공수입 관리를 위한 독립기관(IAPR)이 의회의 감시만 받을 뿐, 운영상의 독립성, 행정 및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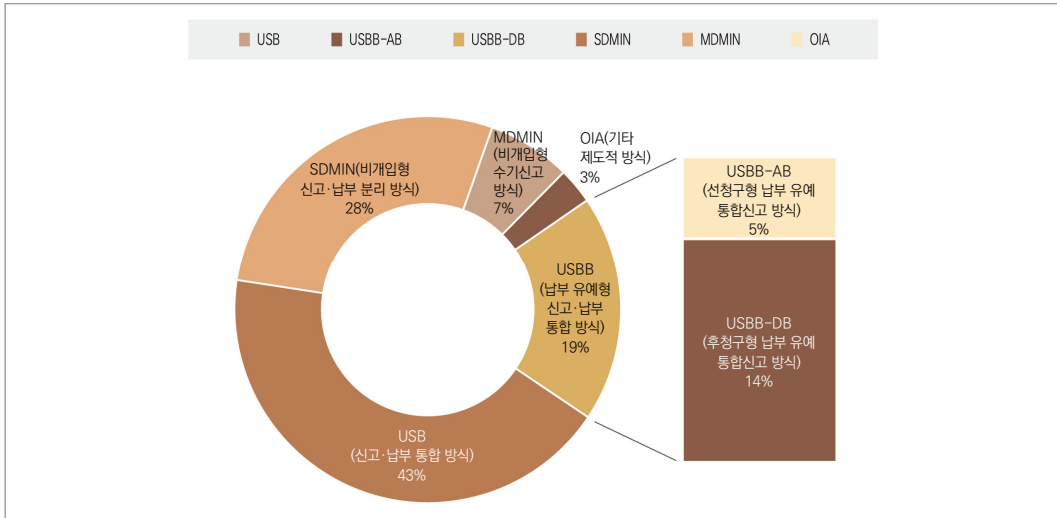
▣ [그림 1-IX-1]은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세무행정의 제도적 체계에 대한 개요를 제공함

- ▶ 행정당국의 약 60%는 통합된 준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약 1/3은 이사회를 두고 있음
- ▶ 8개의 행정당국은 이사회를 의사결정 위원회라고 설명했으며, 3개의 운영진은 자문 위원회로 설명함
- ▶ 이사회 규모나 민간 부문 대표의 대표성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사회 구성원의 평균 규모는 약 8.5명으로, 페루는 4명, 캐나다는 15명으로 다양함
 - 행정당국의 약 2/3가 이사회에 민간 부문 대표를 두고 있으며, 일부 이사회는 전적으로 민간 부문으로만 구성된다고 보고함
- ▶ ‘기타 제도적 구조’의 범주에 속하는 그리스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위원들이 민간 부문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함

9) 경영위원회는 의사결정 또는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그림 1-IX-1] 제도적 체계(2022년)

(단위: %)



주: 행정 비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40, Figure 9.1. 및 Annex A. Data tables B.1 재인용

<표 1-IX-1> 캐나다 - 경영위원회

구분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나다 국세청(CRA) 이사회는 CRA의 조직과 관리, 자원, 서비스, 자산, 인력 및 계약 관리를 감독함 이는 연방정부로부터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각 주정부에 대한 CRA의 서비스를 반영하고, 핵심 공무원에게 행정 관행을 넘어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국세청장과 CRA 공무원은 CRA의 일상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위원회는 국세청장과 다른 CRA 공무원에게 법적 권한 행사 및 기타 프로그램 입법 관리 등을 지시할 수 없음 또한 위원회는 프로그램 법률과 관련된 개인/사업 정보를 수신할 권한이 없음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에 6회 회의를 개최하며, 프로그램 법률의 일반적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안에 대해 (장관을 통해) 의회에 책임을 짐 15명의 개인(이사)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의장, (직권상) 의원 및 캐나다의 모든 주와 지역에서 민간 또는 비영리부문에 속한 외부적 사업 대표자가 포함되어 CRA의 업무에 다양한 사업 관점을 반영함 CRA의 운영에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 관점을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경영진과 협력하여 감독역할을 수행함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및 성과 대시보드를 검토하여, CRA가 권한을 적절히 관리하고 행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의제기 기능을 제공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p. 140~141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함

2 운영의 자율성

- ▣ 세무행정에 부여된 자율성의 범위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에는 정부 기능과 권한의 일반적 배치, 관할구역의 공공부문 행정 관행의 확립, 세무행정을 위한 제도적 모델 등이 포함됨
 - ▶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변화의 시기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세무행정기관은 행정 기능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표 1-IX-2〉 참조)

〈표 1-IX-2〉 세무행정기관에 위임된 권한(2022년)

(단위: %)

내부구조 설계	운영 예산에 대한 재량권 행사	자본 예산에 대한 재량권 행사	성과기준 설정
84.5	79.3	69.0	96.6

주: 선택 권한이 있는 당국의 비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41 및 Annex A. Data tables B.1 재인용

- ▣ 자율성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정부가 조세 제도(세법 포함)의 목표와 책임 체계를 설정하고, 세무행정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영역에서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임
 - ▶ **예산 지출 관리**에는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우선순위를 충족하기 위해, 예산이 책정된 행정자금을 부서 간에 할당/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포함됨
 - 약 80%의 행정기관이 운영 예산에 대해, 약 70%의 행정기관이 자본 예산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한다고 답함
 - ▶ **조직**, 세무서의 지리적 위치를 포함하여 세무행정 운영의 내부 조직 구조를 결정할 권한이 있음
 - 약 85%의 행정기관이 내부 구조를 설계할 권한이 있다고 답함
 - ▶ **기획**, 전략 및 운영 계획 수립을 담당함
 - 거의 모든 조직이 전략 계획과 연간 사업/운영 계획을 준비한다고 답함

- ▶ **성과기준** 및 (중앙기관과 연계하여) 행정 성과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
 -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권한을 보유함
- ▶ **인력 채용**, 개발 및 보수, 신입 직원의 자격 기준 설정, (공공부문 정책에 따라) 직원을 채용 및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 공공부문 전반의 합의에 따라 보수 수준을 협상하고,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음
- ▶ **정보 및 통신기술(ICT)**은 자체 사내 ICT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아웃소싱할 권한을 가진

3 통제 및 기타 감독 기능

- ▣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내부 사기를 감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ICT 체계에 강력한 내부 통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97%의 행정기관이 내부 감사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함
 - ▶ 이는 직원의 위법 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인사 정책을 통해 뒷받침됨
 - ▶ 이러한 측면에서 본 보고서의 대상인 행정기관의 97%는 공공 서비스 전반에 걸친 행동 강령을 가지고 있으며, 약 90%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이 자체 행동 강령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함
 - ▶ 약 2/3의 행정기관은 청렴성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내부 인식 제고 캠페인이 포함되고, 많은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약도 포함됨
 - ▶ 또한 약 절반의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의 청렴성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답함(〈표 1-IX-3〉 참조)

〈표 1-IX-3〉 내부 통제 기능(2022년)

(단위: %)

공식적인 내부감사 체계 (내부감사)	청렴성 전략				성과기준 설정	
	공식적인 청렴성 전략	해당 시, 청렴성 전략에는 다음이 포함됨		행정기관의 청렴성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	공공 서비스 전반의 행동강령	자체 행동 강령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합의	인식 캠페인			
96.6	63.8	73.0	97.3	53.4	96.6	87.9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42 및 Annex A. Data tables B.3 재인용

〈표 1-IX-4〉 세무행정 및 윤리 사례

국가	내용
핀란드	<p>인공지능 사용에 있어서의 책임과 윤리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시를 통해 당국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그러나 시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모두 고려하고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식 업무에서 시를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도 존재함 • 핀란드 국세청은 AI 사용에 대한 윤리적 원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만 사용해야 함 - AI 운영에 대한 책임은 항상 사람에게 있음 - 시는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국세청은 책임 있고 윤리적인 AI 사용에 대한 공개 토론에 참여함 • 세무행정의 여러 부서에서 모인 전문가 그룹은 책임 있는 AI 사용을 장려하고, 윤리 원칙의 관점에서 AI 솔루션을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그룹은 약 10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매월 한 번씩 모임을 가짐 - 구성원은 커뮤니케이션, 법률, 세무, 기술 플랫폼 및 분석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음 - 새로운 전문지식이 필요할 경우, 다른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음 • 국세청은 직원 교육, AI 도구의 평가 및 제공, 사용 중인 솔루션 평가 등을 통해 책임 있는 AI 사용을 장려함 • 국세청의 전문가 그룹은 EU의 AI 법률 개발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활동과 지침을 조정함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국세청(AEAT)은 'AEAT 전략 계획 2020~2023'의 지침에 따라 윤리 문제와 기업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윤리 자문 위원회를 출범 시킴 • 위원회는 AEAT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와 딜레마를 논의하는 공식 포럼을 통해 모범사례를 홍보하는 데 전략적 가치를 더하고 있음

〈표 1-IX-4〉 의 계속

국가	내용	
스페인	윤리 자문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는 윤리, 청렴성, 투명성 분야에서의 모범사례와 관련된 대응책을 포함한 카탈로그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AEAT의 원칙 및 행동강령을 내부적으로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 6명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의장은 AEAT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이 맡음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평판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윤리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가능한 불만 사항에 대해 조언하는 것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p. 142~143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함

- ▣ 외부 통제와 관련하여, 상당수(83%)의 행정기관은 공공 회계 위원회(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와 예산 검토 절차를 통해 지출을 모니터링하는 감독을 받고 있음
 - ▶ 결과는 일반적으로 국가 감사 기능에 의해 검토되고 검증되며, 의회 위원회는 성과 지표와 더 전략적인 목표에 대한 성과를 검토할 권한을 가짐

〈표 1-IX-5〉 외부 통제 및 기타 감독(2022년)

(단위: %)

외부감사인 사용	연례 보고서		공식적인 서비스 제공 표준		전략적 계획		연간 사업/운영 계획	
	작성	작성된 경우, 발간됨	작성	작성된 경우, 발간됨	작성	작성된 경우, 발간됨	작성	작성된 경우, 발간됨
82.8	94.8	90.9	84.5	61.2	98.3	78.9	94.8	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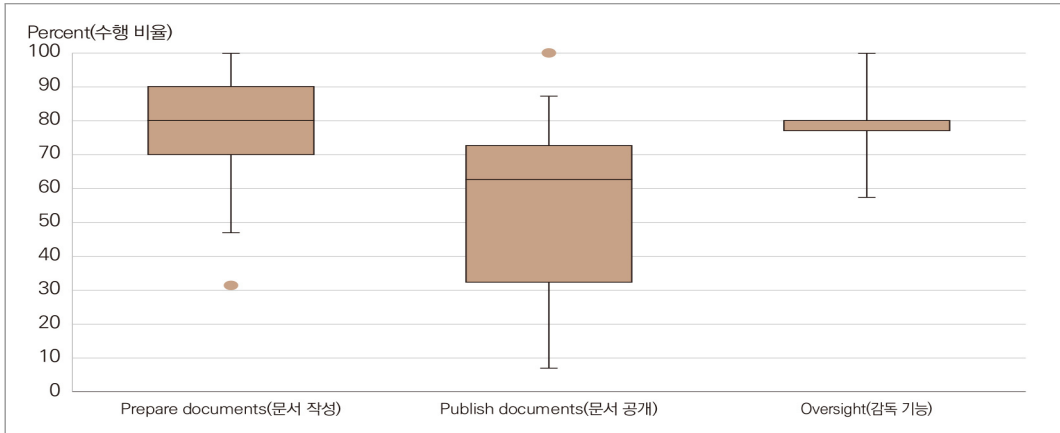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43 및 Annex A. Data tables B.3 재인용

- ▣ 세무행정의 일반적인 기타 다른 감독 기능에는 다음이 포함됨
 - ▶ **연례 보고서 발간**: 약 95%의 세무행정기관이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며, 그중 90%는 이를 실제로 발간함
 - ▶ **합의된 지표**(예: 세수 징수, 부채 수준, 규정 준수 개입 횟수, 고객 서비스 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약 85%의 행정기관이 공식적인 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중 약 60%는 이러한 기준을 공개함

- ▶ **위험 감독 시스템:** 약 80% 이상의 행정기관이 주요 규정 준수 위험을 식별, 평가 및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접근 방식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29%만이 식별된 위험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27%는 주요 규정 준수 위험을 해결한 결과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함
 - ▶ 행정기관의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합의된 전략 목표 및 목적의 집합:** 세무행정에서 사용되는 고급 결과 측정 및 지표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함
 -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 및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 납세자의 규정 준수
 - 서비스 가용성 및 서비스 중단에 대한 대응과 같은 납세자 서비스 제공
 - 조직 효율성
 - 직원 참여 및 만족도
 - ▶ 전략적 방향을 검토, 평가 및 도전하는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 약 20%의 세무행정 기관이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는 기관의 전략적 방향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 세무행정의 감독 및 통제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조세행정당국이 상당한 수준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으며, 다양한 전략 및 운영 문서를 작성하고 있음
- ▶ 다만 이러한 문서 공개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세무행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 및 투명성 제고의 여지가 존재함
 - ▶ [그림 1-IX-2]는 ISORA 2023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무행정의 통제 및 감독 기능을 개괄적으로 보여줌
 - 해당 그림은 개별 조세행정당국의 명칭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일련의 데이터점을 결합하여 전반적인 흐름을 제시함
 - 주요 분석 영역은 문서 작성, 문서 공개, 감독 기능 등 세 가지로 구성됨

[그림 1-IX-2] 통제 및 기타 감독 기능(2022년)

(단위: %)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45, Figure 9.2. 재인용

- ▶ **문서 작성:** 조세행정당국은 전략 및 운영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여 지침을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개선하며, 자원 배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함
 - 이러한 문서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문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세무행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와 믿음을 높일 수 있음
 - 주요 문서에는 (i) 전략 계획 (ii) 연간 사업/운영 계획 (iii) 연례 보고서 (iv) 공식적인 서비스 제공 표준 (v) 공식적인 준법 리스크 관리 전략 및 주요 준법 리스크를 식별, 평가 및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접근 방식 (vi) 택스 갭 추정 (vii) 납세자 만족도 조사 (viii) 청렴성 전략 및 정부의 청렴성 노력에 대한 인식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가 포함됨
- ▶ **문서 공개:** 문서 작성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더욱 강력한 신뢰와 투명성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의 공개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i) 순응 위험 관리 전략: 행정당국이 위험과 해당 위험에 대한 대응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지 여부
 - (ii) 납세자 만족도 조사: 행정 당국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지 여부

- ▶ **감독 기능의 존재:** 감독 기능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음
 - (i) 이사회
 - (ii) 외부 감사인
 - (iii) 공식적인 내부 보장 장치(내부 감사)
 - (iv) 행동 강령
 - (v) 납세자 불만 처리 장치의 존재 여부

4 세무행정과 납세자의 관계

- ▣ 세무행정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요소는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것임
 - ▶ 이는 거버넌스 체계를 정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도록 정립하고, 언론과 시민사회에 기준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 특히 납세자 권리(예: 불만 처리, 서비스 품질 등)와 관련된 성과를 공개적으로 보고하면 이러한 제도에 대한 가시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정보는 주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제공됨
 - ▶ <표 1-IX-6>과 <표 1-IX-7>은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그리고 <표 1-IX-8>은 관련 사례를 제시함

<표 1-IX-6>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권리	의무
알 권리, 지원을 받을 권리, 이익을 제기할 권리	진실의무
의견을 표명할 권리	협력의무
정확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지 않을 권리	적시에 정확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할 의무
명확성 보장	기록 보관 의무
사생활 보호	기한 내 조세를 납부할 의무
비밀보장이 있음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46 재인용

▣ 대부분의 관할국에서는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률이나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이러한 권리를 법률 또는 기타 법령에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관할국에서는 행정지침이나 기타 문서를 통해 규정하고 있음

- ▶ 모든 관할국에는 납세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 모든 행정부에는 불만 처리를 위한 내부 장치가 있으며, 그중 절반은 이 절차가 독립적으로 운영됨
- ▶ 또한 90% 이상의 관할국에는 행정부 외부에 관리되는 장치도 존재함
- ▶ 내부 및 외부 장치와 관련하여, 약 80%의 관할국에서는 이 절차를 통해 제도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표 1-IX-7〉 참조)

〈표 1-IX-7〉 납세자의 권리 및 불만 처리를 위한 특별 기구

(단위: %)

납세자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명시한 문서	불만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장치							
	내부 장치				외부 장치			
	존재함	존재한다면			존재함	존재한다면		
		납세자는 결정을 검토할 권리를 가짐	절차는 독립적임	시스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납세자는 결정을 검토할 권리를 가짐	절차는 독립적임	시스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89.7	100.0	84.5	50.9	75.9	93.1	83.3	89.9	81.5

주: 선택 권한이 있는 관할국의 비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46 및 Annex A. Data tables B.43 재인용

〈표 1-IX-8〉 세무행정과 납세자 간의 관계에 대한 사례

국가	내용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에서 조세행정당국과 납세자 간의 관계는 호주국세청(ATO) 현장에 명시되어 있음 • 이 현장은 납세자가 ATO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와 ATO가 납세자와의 모든 거래에서 어떤 기준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현장에는 다음이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O가 납세자를 상대할 때 수행하는 방식 - 납세자가 ATO에 기대할 수 있는 것 - 납세자가 만족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 만약 납세자가 ATO의 답변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감독관 및 옴부즈맨(Taxation Ombudsman)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표 1-IX-8〉 의 계속

국가	내용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GTO 사무실은 ATO와 그 이사회와는 독립적인 법정 기관임 - IGTO는 개별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것 외에도, 세무행정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수행하며, 시스템적 문제를 식별하고 ATO와 정부에 권고사항을 제시함 	
캐나다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는 CRA와의 관계에서 16가지 권리를 가지며, 중소기업에 위한 권리도 별도로 존재함 - 납세자 권리 장전은 CRA의 사명, 비전 및 가치를 기반으로 함
	납세자 권리 장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의해 요구되는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받을 권리가 있음 • 두 가지 공식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의 권리가 있음 • 공식적인 검토 및 후속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 • 전문적이고 예의 바르며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음 • 완전하고 정확하며 명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음 • 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공정한 검토를 받기 전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 법이 일관되게 적용될 권리가 있음 • 서비스 불만을 제기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세법을 집행할 때 세금 준수 비용을 고려할 권리가 있음 • 국세청이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음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세법에 따른 벌금 및 이자를 면제받을 권리가 있음 • 국세청의 서비스 기준을 공개하고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음 • 의심스러운 조세 제도에 대해 적시에 경고를 받을 권리가 있음 • 납세자가 선택한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 • 납세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비스 불만을 제기하고 공식적인 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세금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국세청은 모든 정부와 협력하여 서비스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준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 •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함 •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국세청이 관리하는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아웃리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함 •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업무 수행 방식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약속함

〈표 1-IX-8〉

의 계속

국가	내용	
캐나다	납세자의 옴부즈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는 국세청과 관련된 서비스 문제를 납세자 옴부즈퍼슨 사무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납세자 옴부즈맨(Taxpayers' Ombudsman)은 시스템적 문제와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를 식별하고 검토하며, 일반적으로 CRA의 내부 불만 처리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에만 불만사항을 검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법적 문제나 법원 관련 사항, 그리고 장관실에서 이미 처리된 불만 사항은 제외됨
미국	납세자 권리장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의 권리는 다양한 세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2014년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한 '납세자 권리 장전'에 통합됨 • 이 권리 장전은 다음과 같은 10개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 권리 - 양질의 서비스 받을 권리 - 올바른 세금만을 낼 권리 - IRS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청취할 권리 - IRS의 결정을 독립적인 포럼에서 항소할 권리 - 최종 결정에 대한 권리 -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 - 비밀 유지의 권리 - 대리인 선임의 권리 -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금 제도를 받을 권리
	납세자 옴부즈맨 서비스 (T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S의 내부 절차를 통해 불만이나 우려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자 옴부즈맨 서비스(TAS)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TAS는 IRS 내에 독립적인 조직으로, 개인과 기업 모두에 제공됨 • TAS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권리 장전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한 명의 납세자 보호관이 배정되며, 이 서비스는 항상 무료로 제공됨 • TAS는 또한 세법이나 세무행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또는 시스템적 문제를 검토하며, 시스템적 문제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문제 - IRS의 시스템, 정책 및 절차와 관련된 문제 - 납세자 권리 보호, 부당 감소, 공정한 대우 보장 또는 필수 납세자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문제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p. 146~148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함

X 예산(Budget) 및 인력(Workforce)

1 서문

- ▣ 본 장은 조세행정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과 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조세행정당국이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근무 환경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역량을 유지하는 방안을 소개함
 - ▶ 조세행정당국이 세수를 확보하고 국민과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양질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이 핵심적임
 - ▶ 본 장은 조세행정당국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해 살펴보고, 조세행정당국의 인력에 대한 정보와 인력관리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2 예산

- ▣ 조세 행정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대부분의 국가행정기관과 이해관계자, 그리고 조세 행정당국에 중요한 사항임
 - ▶ 예산정책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간사업계획의 성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함
 - ▶ <표 1-X-1>을 보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조세행정당국의 약 80%가 운영과 관련된 지출(operational expenditure)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함

<표 1-X-1> 2018~2022년 각국의 조세행정당국 운영 관련 지출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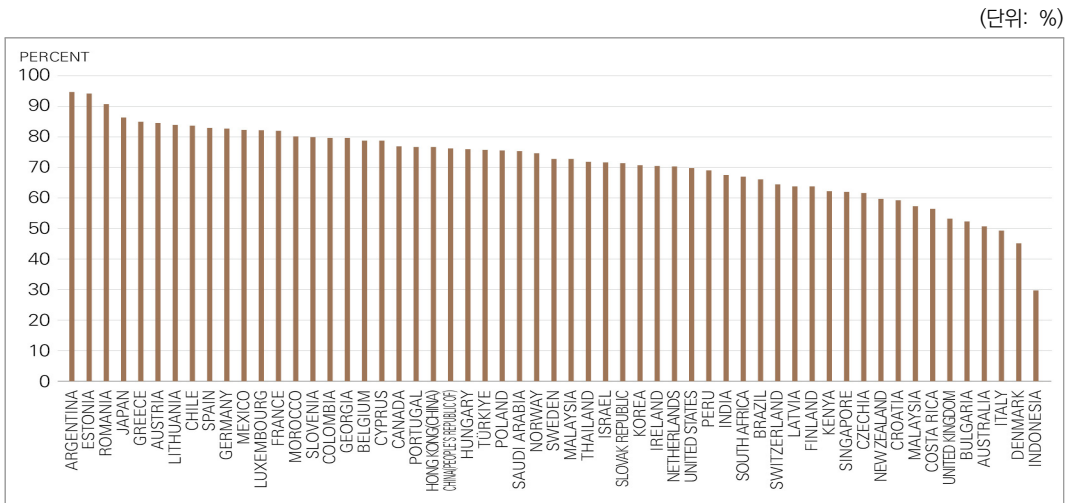
구분	2018~2019	2019~2020	2020~2021	2021~2022
증가	75.5	71.7	77.4	80.8
감소	24.5	28.3	22.6	19.2

자료 :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53, Table 10.1. 저자 번역

▣ 조세행정당국의 인건비 및 정보통신기술(ICT) 운영비는 지난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

▶ [그림 1-X-1]을 보면 운영 관련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인건비로, 평균적으로 연간 운영 예산의 약 72%에 해당함

[그림 1-X-1] 총 운영 관련 지출 대비 인건비(2022년)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54, Figure 10.1. 재인용

▶ 운영 관련 지출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요소는 정보통신기술 운영비로, 평균적으로 전체 지출의 약 11%에 해당함

▣ 조세행정당국이 조세징수비용(Cost of collection) 비율을 효율성/효과성의 지표로 삼고 이를 연간 보고서 등에 공개하는 것이 관행이 되고 있음

▶ 조세징수비용 비율은 조세행정당국의 연간 지출과 회계연도 동안 징수한 순수입을 비교하여 계산함

▶ <표 1-X-2>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의 조세징수비용 비율의 변화를 나타내며,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조세행정당국의 약 75%에서 조세징수비용 비율이 감소함 - 이는 2019년과 2020년 사이 약 80%가 넘는 조세행정당국에서 조세징수비용 비율의 증가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해당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순수입이 감소했던 결과로 보임

〈표 1-X-2〉 2018~2022년 조세징수비용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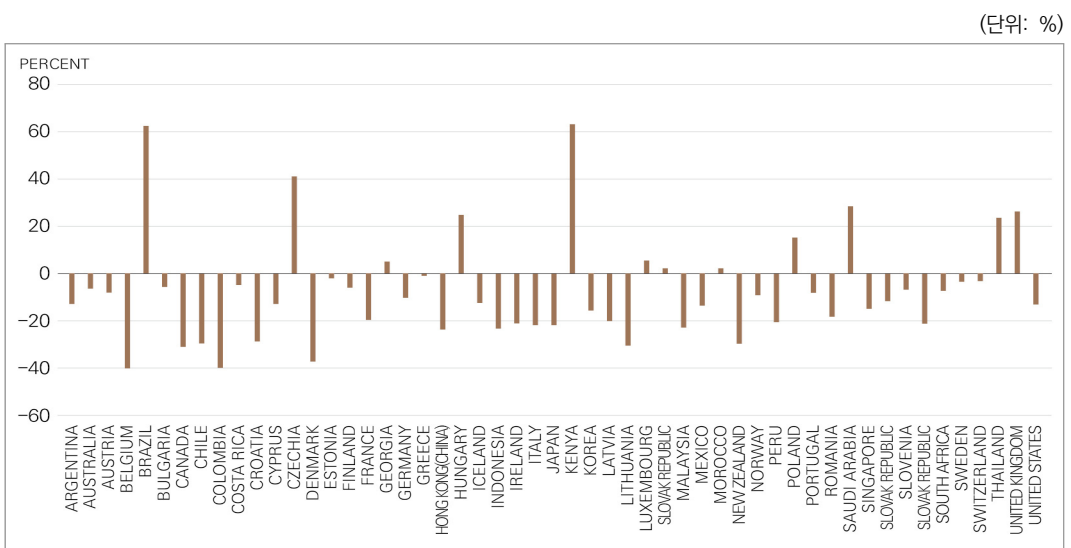
구분	2018~2019	2019~2020	2020~2021	2021~2022
증가	45	82	22	24.5
감소	55	18	78	75.5

(단위: %)

자료 :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56, Table 10.3.

- ▶ [그림 1-X-2]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의 기간 동안 국가별 조세징수비용 비율의 변동을 보여주며, 조세징수비용 비율은 53개국 중 41개국에서 감소하였고 12개국에서 증가하였음

[그림 1-X-2] 국가별 조세징수비용 비율 변동 그래프(2022년)



(단위: %)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56, Figure 10.3.

- ▶ 조세징수비용 비율이 지출의 감소(효율성) 또는 상향된 조세 규정 준수(효과성)의 지표가 되기도 하나, 조세행정당국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과 별개로 조세징수비용 비율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존재함
 - 조세 정책의 변화: 조세 정책의 변화는 지출과 순수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조세행정당국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과 관련 없이 조세징수비용 비율을 변동시킬 수 있음

- 거시경제적 변화: 경제 성장 또는 인플레이션과 같은 큰 경제 변화는 조세행정당국의 총수입에 영향을 주므로, 조세징수비용 비율을 변동시킬 수 있음
- 조세행정당국의 비일상적인 지출: 조세행정당국이 비일상적인 수준의 투자(예컨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기반을 마련하거나 새롭고 비싼 시설의 구매)를 감행하는 경우, 단기간에 조세행정당국의 운영비를 증가시키므로 향상된 효율성을 상쇄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세금 징수 기관의 변경: 정부가 세금 징수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세수가 다른 기관으로 이전되어 조세징수비용 비율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 조세행정당국이 지출과 수입을 계산할 때 위의 요인들을 반영한다면, 조세징수비용 비율이 효율성과 효과성의 지표가 될 수도 있음

3 인력

- ▣ 본 연구에 포함된 각국 조세행정당국에서 고용한 직원의 수가 2022년 기준으로 170만명에 육박하는 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 유능하고 전문적이며, 생산적이면서 변화에 잘 적응하는 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인적 자원 관리의 핵심임
 - ▶ 조세행정당국 운영·관리비의 약 70%가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변동이 커지면 인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 예산의 한계(인건비 삭감, 부서 규모 축소 등)와 변화(정보통신기술 관련 발전, 직원 교육 등)의 필요성이 인력 관리에 이중적인 압력(double pressure)으로 작용함
 - ▶ 조세행정 업무는 기존에 네 가지 유형¹⁰⁾으로 분류되었으나, 2023년에는 ‘기타 업무’ 유형을 다시 네 가지로 세분화하여 총 일곱 가지 유형¹¹⁾으로 분류함
 - ‘회계감사 및 조사’ 업무와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업무는 다른 업무에 비해 많은 인력

10) ① 신고 및 납부 서비스 ② 회계감사 및 조사 ③ 채권추심 및 강제징수 관련 역할 ④ 기타 등의 네 가지로 조세행정 업무를 분류함

11) ① 신고 및 납부 서비스 ② 회계감사 및 조사 ③ 채권추심 및 강제징수 관련 역할 ④ 분쟁 해결 ⑤ 인적 자원 관리 ⑥ 정보통신기술 관련 지원 ⑦ 기타 등의 일곱 가지로 조세행정 업무를 분류함

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회계감사 및 조사’ 업무에는 전체 인력의 약 30%, 그리고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업무에는 전체 인력의 약 29%가 투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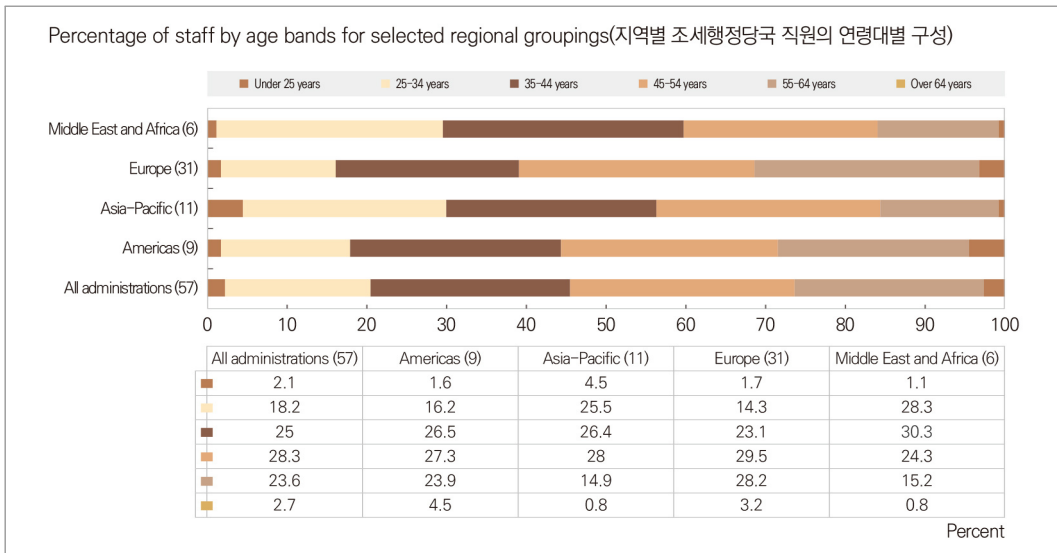
▣ 조세행정당국 직원의 연령대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문화적·경제적·사회적 요인(예시로 채용, 보상, 그리고 정년퇴직 정책)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보임

▶ [그림 1-X-3]을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¹²⁾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¹³⁾의 조세행정당국 직원들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직원의 약 30%가 35세 미만임

▶ 미주¹⁴⁾와 유럽¹⁵⁾의 경우 35세 미만 연령대의 직원 비율은 20% 이하로 떨어지는 반면, 54세 이상 되는 직원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큼

[그림 1-X-3] 조세행정당국 직원의 연령(2022년)

(단위: %)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61, Figure 10.5.

12) 호주, 중국(중화인민공화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13) 이스라엘, 케냐,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14)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페루, 미국

15)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및 영국

- ▶ 직원의 연령대가 높은 지역의 조세행정당국에서 향후 숙련된 인력이 대규모로 은퇴할 것이 예상되므로, 중요한 업무 지식과 경험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 본 장에서 ‘인력 감소(Staff attrition) 비율’ 또는 ‘감원(staff turnover) 비율’은 정해진 기간(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함) 동안 직원들이 조직을 떠나는 비율을 의미하며, ‘정상적인’ 인력 감소 비율은 산업 영역 또는 국가별로 상이함
- ▶ <표 1-X-3>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본 장의 연구에 참여한 국가들(49개국)¹⁶⁾은 평균적으로 약 7%의 인력 감소 비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인력 감소 비율의 범위는 약 5%에서 1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표 1-X-3〉 2018~2022년 평균 인력 감소 비율 및 채용 비율

(단위: %, %p)

비율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변동
인력 감소 비율(49개국)	6.6	7.1	6.0	6.8	7.4	+12.8
채용 비율(49개국)	6.8	7.1	5.9	6.0	7.4	+8.4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2024, p. 165, Table 10.6.

- ▶ 높은 인력 감소 비율과 낮은 채용 비율은 일반적으로 축소 정책(downsizing policy)을 나타내며, 인력 감소 비율과 채용 비율이 둘 다 높다면 조세행정당국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채용 과정 자체가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신규 직원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시간과 비용 역시 많이 소요되기 때문임
- ▶ 인력 감소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 또한 이상적이지 않는데 인력 감소 비율과 채용 비율이 모두 낮다면 인력에 변동이 거의 없다는 것이므로, 조세행정당국에 새로운 인재가 유입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며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조세행정당국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음

16) 2018년부터 2021년 동안 채용 비율 관련하여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난 변동을 보였던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데이터는 전체 연구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제외됨

▶ 2022년의 인력 감소 비율과 채용 비율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증가함

▣ 효과적인 인력 관리(People management)를 위해서는 심층적인 채용, 직원 교육, 그리고 직원 관리 전략이 필요하며, 직원들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직원 복지에 중점을 둔다면 더 높은 직업 만족도, 낮은 이탈률, 그리고 더 헌신적인 근무태도를 지닌 인력을 보유하게 될 것임

▶ 인재 채용과 관리 전략: 조세행정당국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인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공적인 인재 채용과 관리를 위한 네 가지 요건이 있음

- 인력 관리 전략(Human resource strategy)/인력 계획(workforce plan): 조세행정당국의 전반적인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 관리 전략 또는 장기적인 인력 계획은 (a)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규정하고 (b) 그러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계획적으로 채용, 개발, 보유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세행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부분임

- 직원 계획(Staffing plan): 장기적인 인력 관리 전략과는 달리, 직원 계획은 조세행정당국의 단기적인 목표에 집중하며 당장 필요한 직원의 수 또는 직원 유형 같은 사항을 다룸

- 요구되는 능력 사항 검토(Assessment of capability needs): 조세행정당국은 납세자들, 특히 다음 세대의 납세자들이 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화해야 하는데, 90% 이상의 조세행정당국은 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앞으로의 조세행정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 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함

-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자율성(Autonomy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직원의 채용, 개발, 보유와 관련하여 높은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대다수의 조세행정당국은 이러한 영역에 대해 자율성을 허용하나, 직원의 임금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문제나 한정된 예산에 의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교육과 발전: 조세행정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직원의 채용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능력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교육 전략(Training Strategy): 90% 이상의 조세행정당국에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튀르키예의 경우 행동적 접근법에 대한

- 대면 워크숍을 열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함
- 신규 직원 지원(Supporting new staff):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지식, 능력, 그리고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추게 된다면 빠른 속도로 업무를 배우고 가장 높은 수준의 결과를 내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임
 - 리더십 개발과 업무 인계 계획(Leadership development and succession planning): 조세행정당국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직원의 리더십 능력을 키우고 업무 인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 비대면 교육(Virtual training):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었는데, 초기 비용은 있으나 녹화된 동영상은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임
- ▣ 직원들의 업무 의욕과 업무 능력을 증진하는 것은 성공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며,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주기적인 피드백과 업무 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 정기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직원들의 만족도와 의견을 조사한다면 인사와 관련된 업무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준다면 직원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며 업무에 대한 열정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경쟁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음
 - ▶ 기술의 발전으로 조세행정당국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인공지능, 머신 러닝,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ntion, RPA) 등을 이용하여 조세 행정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투입되는 인력을 줄일 수 있게 됨
 - 프랑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예산안의 내용을 요약하고 알맞은 부서에 업무를 배치함으로써 예산안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증대 시킴
 - 리투아니아는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체납에 대한 벌금 산출을 신속화함
 - 사우디 아라비아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도입하여 효율성과 정확성을 증대 시킴

- ㉔ 다양성을 지닌 인력을 보유한다면 납세자들을 보다 잘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당국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고려할 수 있게 됨
 - ▶ 조세행정당국이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유연한 근무 환경 또는 비대면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임
 -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 만족도가 향상됨
 - 다양한 근무 요건과 환경에 대한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폭넓게 인재를 영입하고 근무 태만을 줄이며 업무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음
 - ▶ 본 장의 연구에 응답한 조세행정당국의 약 90% 이상에서 유연한 근무 환경에 대한 정책이 존재하였고, 대부분의 조세행정당국에서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의 가능성을 제공함

XI 택스 갭 추정(Tax Gap Estimation)

- ▣ 본 장은 세법 준수 개선 및 택스 갭의 축소가 세무 행정의 주요 목표임을 전제로, 택스 갭의 개념과 추정 방법의 복잡성을 고찰하고 조세 관련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함
 - ▶ 택스 갭은 단순한 개념처럼 보이나, 택스 갭 추정을 위해 각 관할권에서는 입법, 행정, 운영, 데이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복잡한 추정 과정이 필요함
 - ▶ 택스 갭 추정을 통해 규정 위반의 규모와 성격, 새로운 트렌드, 세금 시스템의 전반적인 세금 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관할 구역에서 택스 갭을 추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장에서는 주요 택스 갭 개념에 대한 개요와 국제적 조사 사례를 살펴봄

1 택스 갭(Tax Gap) 정의

- ▣ 택스 갭은 일반적으로 잠재 세수와 실제 세수 사이의 차이로 정의되며, 이는 컴플라이언스 갭(Compliance Gap)¹⁷⁾과 정책 갭(Political gap)¹⁸⁾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 세무 행정의 주요 목표가 납세 의무 불이행 감소에 있으므로, 택스 갭 추정 시 정책 갭보다는 컴플라이언스 갭에 초점을 두며 세금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법 행위는 반영하지 않음
 -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택스 갭의 정의가 있지만, 관할권마다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관할권을 직접 비교 시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며, 세금 시스템, 정의 및 방법론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¹⁹⁾

17) 컴플라이언스 갭(Compliance Gap)이란 현행 세법 미준수로 인한 잠재적 세수 손실을 의미함

18) 정책 갭(Political gap)은 다양한 조세 정책으로 인한 기타 세수 손실을 측정함. 이에 특정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세액 공제와 같은 의도적인 조세 지출이나 세법의 허점으로 인한 조세 회피와 같은 비의도적인 조세 지출이 포함될 수 있음

〈표 1-XI-1〉 정책 갭(Policy Gap)의 예시

구분	내용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기에 조세행정당국은 '정책 갭(Policy Gap)'을 기존 정책 프레임워크에 따른 잠재적 세수와 규범적 또는 준거 정책 프레임워크에 따른 잠재적 세수 간의 차이로 정의함 • 정책적 차이 분석은 컴플라이언스 갭과 비교하여 전체 세수 차이에 대한 정책적 요인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함 • 또한 정책 갭은 비교세 항목 차이 등으로 세분되어 특정 조세 지출 모델링에 활용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정책 갭은 예산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지출과 직접 지출 간 연계를 강화하며, 세수 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 조정의 기회를 제공함
유럽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 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부가가치세 갭 준수 격차와 함께, 모든 최종 국내 소비에 균일한 부가가치세율이 적용 될 경우 발생할 추가 부가가치세 수입(즉 부가가치세 정책 갭)을 추정함 • 이 갭은 면제와 감면 때문에 발생하는 두 가지 요소인 부가가치세 면제 갭(과세 대상 제외로 인한 수입 손실)과 부가가치세 감면 갭(감면율 및 0% 적용으로 인한 수입 포기)으로 구성됨 • 이러한 추정은 정책 선택의 비용을 명확히 하고, 세수 증대 및 세제 효율성 개선을 위한 개혁 분야를 식별하는 데 이바지함 •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EU-27의 부가가치세 정책 갭은 이상적 수입의 약 45%였으며, 감면 갭은 증가하지만 면제 갭은 수요 구성 변화로 인해 감소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p. 182~183, 저자 요약 작성

2 택스 갭 종류(Types)

☞ 택스 갭은 등록(Registration), 신고(Filing), 보고(Reporting), 납부(Payment), 그리고 비준수(Non-compliance) 원인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 일부 관할권에서는 세금 양식을 제출하거나 접수하는 절차를 나타내는 '신고(Filing)' 대신 '접수(Lodg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각 관할권에서는 비준수 유형에 따라 택스 갭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를 수 있음²⁰⁾
- ▶ 납부 비준수 보고와 관련된 택스 갭에 대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관할권 대부분의 택스 갭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보고(75%) 및 납부(64%) 비준수 추정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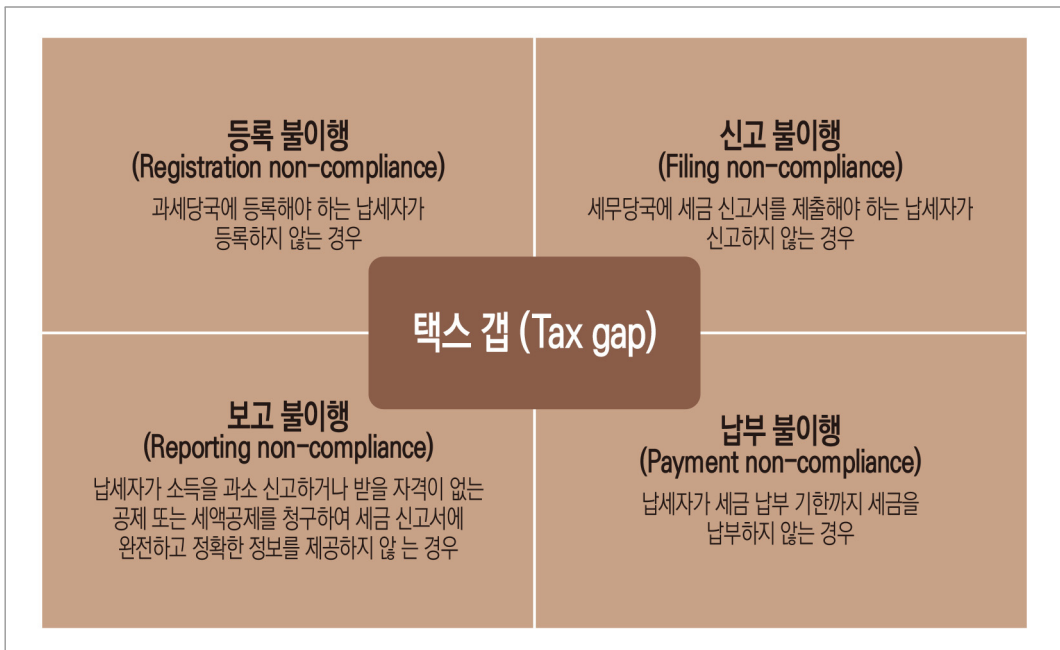
19) 예를 들어 일부 관할권에서는 택스 갭에 연체된 세액을 포함하지만, 다른 관할권에서는 택스 갭에 연체된 세금을 제외할 수 있음. 또한 택스 갭 추정치는 한 해의 경제 활동(예: 과세 연도)과 연결되거나 특정 기간(예: 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할 수 있음

20) 예를 들어 납부 비준수(Payment Non-compliance)와 관련된 택스 갭은 납부 갭(Payment Gap), 과소 납부 갭(Underpayment Gap), 미납 갭(Non-payment Gap) 또는 징수 갭(Collection Gap)으로 지칭됨

을 맞추고 있음

- ▶ 또한 등록 및 신고 비준수는 과세 당국에 알려지지 않은 집단을 포함하기 때문에 추정이 더 어려울 수 있음

[그림 1-XI-1] 텍스 갭을 유발하는 불이행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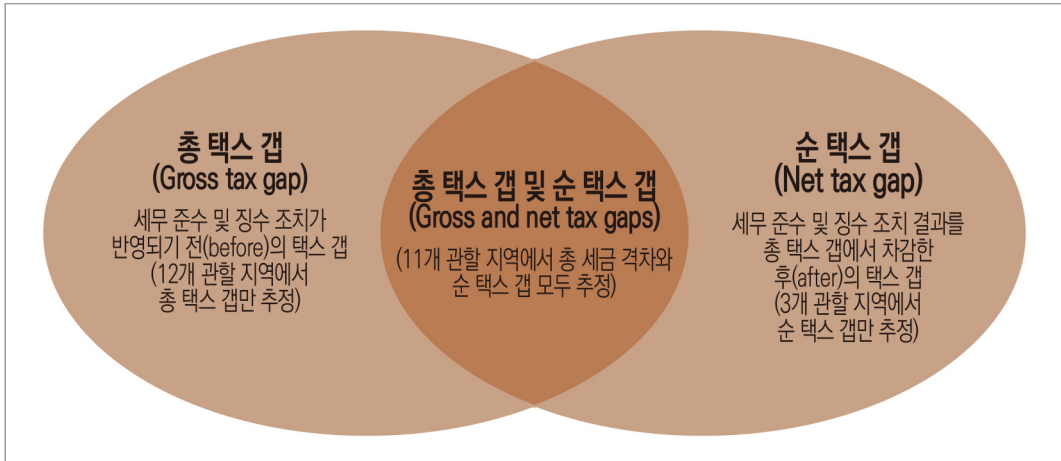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184.

- ☞ 관할권들은 총 텍스 갭(Gross Tax Gap)과 순 텍스 갭(Net Tax Gap)을 구분하여 측정하며, 일부는 예측치를 활용해 텍스 갭 추정의 적시성과 품질을 조정함

 - ▶ 대부분 관할권(82%)은 총 텍스 갭을 추정하며, 절반가량의 관할권은 순 텍스 갭을 측정하고 있으며 약 40%의 관할권은 총 텍스 갭과 순 텍스 갭 모두를 측정함
 - ▶ 순 텍스 갭 추정 시 비준수 및 징수 활동이 완료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추정에 일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 또한 일부 관할 구역(36%)은 시의 적절성과 텍스 갭 추정의 품질 등 기타 고려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최소 한 가지 텍스 갭 구성 요소에 대해 예상치를 사용함

[그림 1-XI-2] 총 택스 갭(Gross tax gap) vs 순 택스 갭(Net tax gap)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185.

- ▮ 전체 택스 갭을 공개하는 관할 구역은 적으며, 일부는 특정 세목만 공개하고 공개하는 주기는 다양하게 운영됨
 - ▶ 전체 택스 갭 추정치를 공개 발표하는 관할 구역은 소수(29%)에 불과하며, 이들 중 일부는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 ▶ 몇몇 관할 구역은 전체 택스 갭을 공개하지 않으며, 일부 택스 갭 항목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음(대체로 부가가치세 갭을 공개함)
 - ▶ 공개 빈도는 매년, 4년마다 또는 불규칙한 일정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택스 갭 추정치를 발표하는 관할 구역 중 약 40%는 연간 보고서를 발행함

<표 1-XI-2> 예시-비준수 원인별 택스 갭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서는 국세청(IRS)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총 택스 갭을 추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Non-filing):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Under reporting): 제때 신고된 신고서에서 세금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 미납부(Underpayment): 제때 신고하였으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총 택스 갭의 대부분은 과소신고 갭(약 80%)에서 발생하며, 미신고와 미납부는 각각 평균 9%와 1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함 • 택스 갭 분석 결과, 소득이 정보 보고 대상이 될 때 준수율이 높아지며, 원천징수 대상일 때는 더욱 높은 준수율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음
----	---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185, 저자 요약 작성

〈표 1-XI-3〉 각국의 텍스 겍 팀 창설 연도

연도	관할 구역
1980	칠레, 미국*
2000	이탈리아*
2005	덴마크*, 영국*
2006	네덜란드*, 스위스
2007	포르투갈
2012	아이슬란드*, 유럽 연합
2013	이스라엘
2014	호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2015	루마니아
2016	캐나다*
2017	스웨덴
2018	그리스, 슬로바키아
2019	인도네시아*
2020	브라질*, 헝가리
2021	스페인
2022	핀란드
2023	콜롬비아*
2024	프랑스

주: 전체 텍스 겍을 추정하는 관할 구역에는 별표(*)가 표시되어 있으며, 전체 텍스 겍 추정치를 공개하는 관할 구역은 굵은 글씨로 표시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186; '조세 겍 추정에 관한 FTA 2023 설문조사'

- ▣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자유무역협정 관심 공동체(FTA Community of Interest, COI) 회의에서 텍스 겍 연구의 성공을 위한 주요 요소로 데이터(Data), 방법론(methodology), 인적자원(Human resources), 경영 지원(Management support), 그리고 기관의 방향성(Institution orientation)을 발표함

〈표 1-XI-4〉 성공적인 택스 갭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

데이터(Data)	방법론(Methodology)	인적자원(Human resources)	관리 지원(Management support)	기관 방향성(Institution ori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정제 투자 • 데이터가 대상 인구 집단을 포괄하도록 보장 • 종단 데이터 및 분석의 축적 • 추정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에 맞는 가장 적절한 방법론 선택 • 명확한 목표 설정 • 상향식과 하향식 기법 모두 활용 • 시간 경과에 따른 일관된 추정 기법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데이터 분석, 통계, 계량경제학, 감사, 세금 정책 등)을 갖춘 다학제 팀 구성 • 잦은 인력 교체를 피하고 팀의 안정성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 경영진의 승인 확보 • 팀 구성 및 육성 과정에서 인내심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갭 추정을 위한 공공 위임 • 정기적인 발표 • 투명성 도입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187, 저자 요약 작성

3 택스 갭 방법론(Tax Gap Methodolog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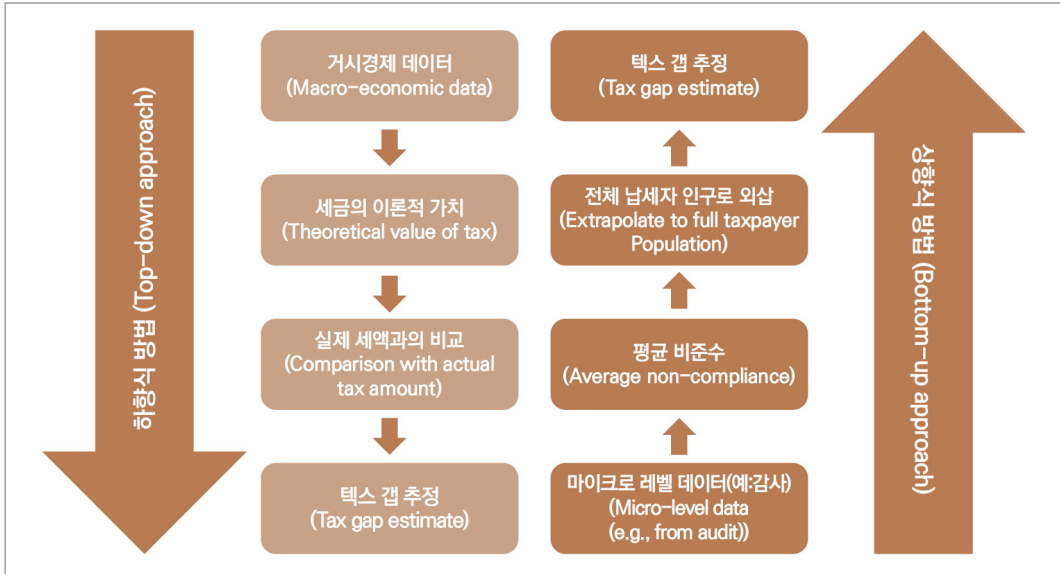
- ▣ 택스 갭(Tax Gap) 추정은 복잡하고 정교한 분석이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택스 갭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하향식 방법론’과 ‘상향식 방법론’인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이 있음
 - ▶ ‘하향식 방법론(Top-down methodologies)²¹⁾’은 주로 거시경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세 기반과 이론적 세금 부과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론적 세금 부과액과 실제 납부되거나 신고된 세금의 차이가 택스 갭으로 산정됨
 - ▶ ‘상향식 방법론(Bottom-up methodologies)²²⁾’은 감사(audit) 등의 미시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준수 가능성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택스 갭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가장

21) 하향식 방법론은 운영 데이터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전체 인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며, 경제 내 불이행 및 위험 부문에 대한 개관(Overview) 제시가 가능함. 그러나 하향식 방법론은 제한적이며, 세부적인 결과 도출이 불가능하므로 하향식 방법론에서 얻은 통찰은 높은 수준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음. 특히 무작위 감사가 불가능하거나 위험 기반 감사 결과를 납세자 전체에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 하향식 방법론은 상향식 접근법의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고, 동시에 택스 갭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22) 상향식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미시적 수준에서 비준수에 대해 더 많은 통찰을 제공하므로 세분화가 가능하며 위험 평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나, 이 방법론을 통해 도출된 추정치는 특정 인구 집단이나 세목에 한정될 수 있음. 또한 상향식 방법론은 통계 또는 계량경제학 전문 지식과 데이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조세 행정 운영 지식을 요구함

일반적인 데이터 소스로는 무작위 감사(random audits) 또는 위험 기반 감사(risk-based audits) 데이터가 활용됨²³⁾

[그림 1-XI-3] 텍스 갭을 추정하는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187.

- ▣ 대부분의 관할 구역은 하향식 접근법을 선호²⁴⁾하며, 일부는 상향식 접근법을 병행하고, 필요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학계 등 제삼자의 지원을 받아 텍스 갭을 추정함²⁵⁾
- ▶ 관할 구역이 각각 서로 다른 통찰을 제공하는 상향식, 하향식 두 가지 접근법을 모두 활용하여 텍스 갭을 추정하는 것이 이상적임

23) 예를 들어, 일부 상향식 방법론은 감사 데이터 대신 인구 조사 데이터, 제삼자 정보 보고 데이터, 행정 신고 및 납부 데이터를 활용함

24) 하향식 접근법은 텍스 갭 추정이 처음인 관할 구역에 좋은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관할 구역은 일반적으로 잘 확립된 하향식 방법론을 가진 부가가치세 텍스 갭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음

25) 대부분의 관할 구역(89%)은 하향식 접근법 사용을 선호하나, 절반 이상(57%)이 상향식 접근법을 사용함. 또한 일부 행정 기관(54%)은 국제통화기금(IMF), 학계, 재무부, 기타 사조직과 같은 제3자의 지원을 받아 텍스 갭 추정을 수행함

- ▣ '무작위 감사(Random audits)'²⁶⁾는 표본을 기반으로 택스 갭을 추정하고 위험 평가 시스템 개선에 이바지하지만, 자원의 한계로 인해 세수 회수 효과는 제한될 수 있음
 - ▶ 무작위 감사는 납세자 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을 기반으로 실시됨
 - ▶ 주로 단순 무작위(Simple random sampling) 및 계층화 표집(Stratified sampling) 추출 방법이 사용되며 대규모 등록 납세자 집단의 택스 갭 추정에 효과적임

〈표 1-XI-5〉 예시 - 무작위 감사 프로그램

덴마크 위험 기반 계층화 (stratification) 무작위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납세자를 위험 수준에 따라 계층화(stratification)하고, 고위험 그룹에서 더 많은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수행함 • 무작위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세법 도입 및 세금 준수 위험 평가(Risk Assessment)를 개선함
네덜란드 무작위 감사와 준수 위험 관리 (Compliance Risk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는 무작위 감사를 통해 준수율뿐만 아니라, 준수 개선이 필요한 행동 영역을 파악함 • 네덜란드의 세금 준수 위험 관리(Compliance Risk Management, CRM) 시스템에서 무작위 감사가 불이행 원인 분석과 개입 설계에 활용됨 • COM-B 행동 모델을 기반으로, 세금 준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개입(intervention) 전략을 개발함 • 무작위 감사에서는 모든 세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수행하나 기업이 왜 특정한 행동을 하는지는 감사만으로 알 수 없어 세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정보 수집 및 오류 원인을 분석함 • 감사를 통한 준수율 분석과 실수의 근본적 원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개입 설계할 수 있음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189, 저자 요약 작성

- ▣ '위험 기반 감사(Risk-based audits)' 일부 관할 구역은 무작위 감사²⁷⁾ 대신 하향식 접근법이나 위험 기반 감사를 활용하지만, 선택 편향(Selection bias)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통계적·계량 경제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
 - ▶ 무작위 감사 프로그램이 없는 일부 관할 구역은 하향식(Top-down) 접근법 또는 위험 기반 감사 결과(Risk-based audit results)를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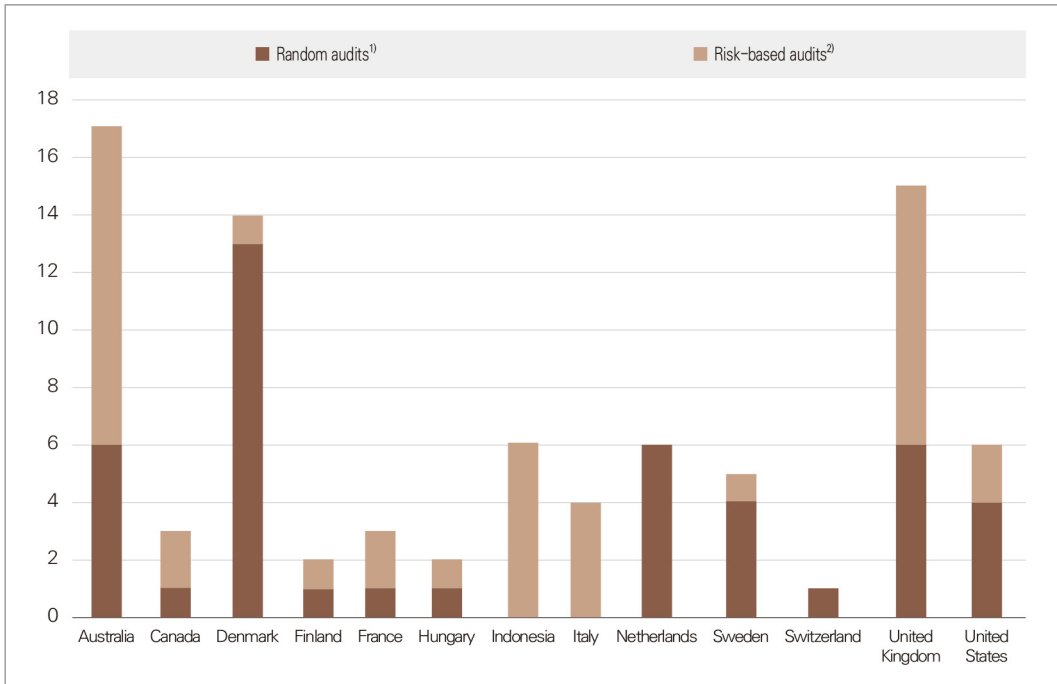
26) 무작위 감사 결과는 신흥 불이행 추세 식별 및 기존 위험 선택 기준 검증에 이바지하며, 위험 평가 시스템 개선 시 감사 효율성과 자원 배분 최적화를 통해 세수 회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다만 추가 자원이 요구되며 무작위 방식의 한계로 인해 추가 세수 회수가 제한될 수 있음

27) 무작위 감사 방법은 일반적으로 택스 갭(Tax Gap) 추정의 고품질 방법으로 간주하지만, 위험 기반 감사는 더 심층적인 감사 절차를 통해 비준수(non-compliance)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위험 기반 감사는 주로 고위험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향이 있어 전체 납세자 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수 있음

- ▶ 감사를 받을 집단은 특정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무작위로 선택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²⁸⁾
- ▶ 전반적으로 무작위 감사에서 파생된 하향식 방법론이 위험 기반 감사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그림 1-XI-4] 참조)

[그림 1-XI-4] 데이터 원본별 상향식 방법론의 수

(단위: 개)



주: 1) Random audits(무작위 감사): 납세자를 무작위로 추출해 감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2) Risk-based audits(위험기반 감사): 과거 이력, 업종 특성, 신고 패턴 등 리스크 요인을 분석해 고위험군을 우선 조사하는 방식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190, 저자 작성

▣ ‘미탐지 보정 계수(Non-detection multiplier)’ 또는 인상 계수(uplift factor)는 감사에서 포착되지 않은 비준수(non-compliance)를 보정하기 위해 일부 택스 갭 항목이나 특정 방법론에 적용되며, 델파이 기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출될 수 있음

28) 이러한 편향을 보정 하기 위해 통계적 및 계량 경제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방법으로 Heckman 방법(Heckman) 또는 Heckman 보정 접근법(Heckman Correction Approach), 극단값 분석(Extreme Value Method),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 사후 층화(Post-Stratification), 성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등이 있음

- ▶ 일부 관할 구역(21%)은 미탐지 보정 계수(Non-detection multiplier)를 택스 갭 추정에 적용함²⁹⁾
- ▶ 미탐지 보정 계수는 일부 택스 갭 항목이나 특정 방법론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반드시 전체 택스 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표 1-XI-6〉 미탐지 보정 계수 또는 인상 계수(Uplift Factor)

<p>영국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미탐지 보정 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국세청(HMRC)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해 영국 세제의 위험 유형에 맞는 미탐지 보정 계수를 개발하여, 무작위 감사 및 위험 기반 감사에서 탐지되지 않은 비준수를 보정하고 있음 • 이 기법은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한 3단계 설문조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소규모 사업체의 원천징수제도(PAYE) 및 법인세 준수 평가에 적용되었음 • 또한 비준수 탐지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최신 정보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함
<p>미국 미탐지 보정 계수 (Non-detection multipli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국세청(IRS)은 2001 과세 연도(TY 2001)부터 탐지 제어 추정(Detection Controlled Estimation, DCE)을 처음 도입함 • 탐지 제어 추정은 제3자 정보 보고 기준으로, 소득 유형 두 가지와 소득 성격 및 규모 기준으로, 납세자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네 가지 배수(multipliers)를 도출함 • 이후 추가 연구에서 소득 항목별 평균 탐지율의 변동성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DCE를 확장할 기회가 있음이 확인함 • 2006 과세 연도(TY 2006)부터 명시적 배수 대신 미시 모의 접근법을 도입하여 DCE 추정치를 보다 정교하게 배분함 • IRS는 택스 갭 분포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이크로시뮬레이션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p. 191~192, 저자 요약 작성

- ▣ 미탐지 보정 계수를 산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그중 하나는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으로 불리며, 스웨덴과 영국의 조세 당국은 이 기법의 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29) 예를 들어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비준수 사례를 식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택스 갭 추정치는 실제보다 낮을 수 있으며, 이때 미탐지 보정 계수를 적용하여 보정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감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택스 갭 추정치는 포착되지 않은 불이행이 누락될 수 있음

〈표 1-XI-7〉 미탐지 보정 계수(non-detection multiplier) 산출 방법

탐지 제어 추정 (Detection controlled estimation, DCE)	전문 감사관에 의한 2차 검토 (Secondary review by expert auditors)	제3자 데이터 매칭 (Third-party data matching)	전문가 판단 (델파이 기법, Delphi technique)	타 기관의 배수 도입 (Adopting others' multipli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량 경제학적 접근법: 모든 감사 사례를 최고 감사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법으로,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개발되어 2001년 택스 갭 추정에 처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전문가 그룹이 감사를 재검토하여 미탐지 세액을 추정하나, 추가 자원이 필요하며 전문가 역량에 따라 한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자 정보 없이 감사를 수행한 후 비교하는 방식이지만, 해당 정보가 없거나 이미 사용될 시 적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들이 다양한 감사 유형에서 미탐지 세금을 집계 수준에서 추정함(영국에서 사용됨) 자원은 적게 들지만 전문가 역량에 따라 한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조세 기관이나 국제적 배수를 활용하나, 국가별 세제와 감사 절차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대체 방법이 없을 때 활용 가능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191, 저자 요약 작성

▣ 택스 갭 추정의 주요 도전 과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방법론, 자원, 법률적 제약이 관련 있음(〈표 1-XI-8〉)

▶ 각 관할 구역은 국제적 모범 사례를 참고하고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 하지만, 일부 제약 사항은 택스 갭 추정의 역량을 제한할 수 있음

〈표 1-XI-8〉 택스 갭 추정의 주요 도전 과제

데이터(Data)	방법론(Methodology)	자원(Resources)	법률(Legis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작위 감사 부재 표본 크기가 작거나 대표성이 부족함 데이터 가용성 문제 데이터 시차 발생 다양한 데이터 소스 간 매칭 문제 미탐지 문제 이질적인 인구 집단 다중 데이터 소스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 기반 감사 데이터를 활용한 외삽(Extrapolation) 복잡한 불이행 구조 모델링의 어려움 주어진 데이터에 적합한 방법론 선정의 어려움 신흥 추세를 반영하는 어려움 하향식 방법론의 한계 다양한 접근법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 역량의 한계 택스 갭 전문가 부족 예산 부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감사 내부 지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짙은 세법 개정 복잡한 세제 시스템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192, 저자 요약 작성

4 택스 갭 구성 요소(Tax Gap Components)

- ▣ 조세 제도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택스 갭을 구성하는 요소는 관할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로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PIT)
 -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CIT)
 -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³⁰⁾
 - 소비세 및 관세(Excise taxes and duties)
 - 기타 세금 유형

- ▣ 대부분의 관할권은 부가가치세 갭을 추정하며 개인 소득세·법인세 갭도 많이 다루지만, 소비세 및 기타 세목 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되고 일부 관할권은 전체 택스 갭을 세목 구분 없이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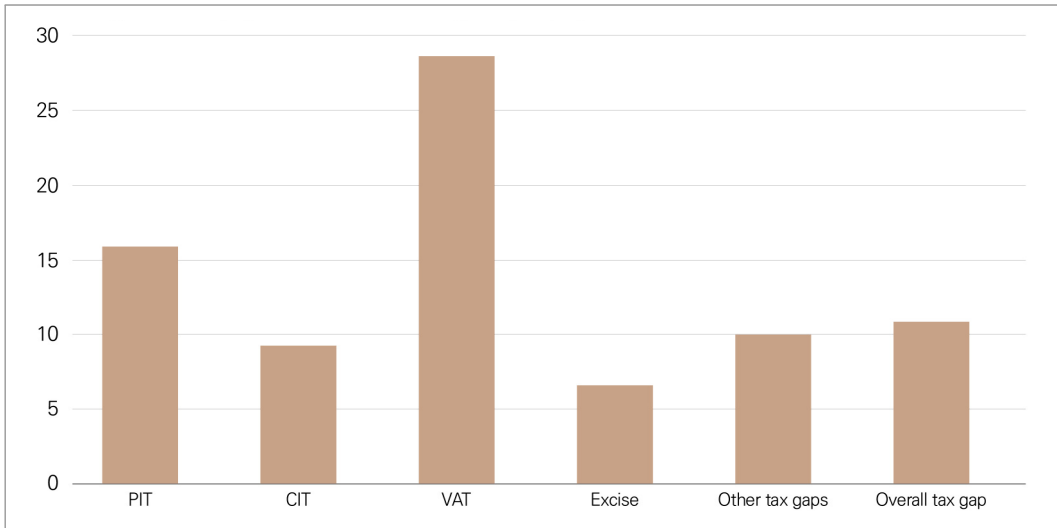
 - ▶ 설문에 응답한 모든 관할권은 부가가치세 갭을 추정하고 있음
 - ▶ 그러나 전체 택스 갭(Tax Gap)을 추정하는 관할권은 39%에 불과하며, 이는 주요 세목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추정 방식임
 - ▶ 일부 관할권은 택스 갭 프로그램 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잘 확립된 하향식 방법론을 통해 부가가치세 택스 갭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택스 갭 연구에 처음 참여하는 관할 구역의 부가가치세 택스 갭 추정을 지원하기도 함
 - ▶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자주 사용되는 택스 갭은 개인 소득세(PIT) 및 법인세(CIT) 갭으로, 50% 이상의 관할 구역이 이들 중 하나 또는 둘 다의 방법으로 추정하고 있음
 - ▶ 소비세 갭은 관할 구역의 29%로 가장 드물게 추정되며, 일반적으로 여러 소비세 대상 제품에 대한 소비세 및 관세를 포함함
 - ▶ 기타 세금 갭은 관할 구역의 36%가 추정하며 전체 택스 갭에 이바지하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음

30) 일부 관할권의 경우 상품 및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를 의미함

- ▶ 또한 일부 관할 구역은 택스 갭을 세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갭을 추정하기도 함³¹⁾

[그림 1-XI-5] 관련 택스 갭 구성 요소를 측정하는 관할권 수

(단위: 개)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193.

가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gap, PIT) 택스 갭

- ▣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gap, PIT) 택스 갭은 일반적으로 개인(예: 암시장 활동, 해외 투자, 자본 이득 등), 자영업자 또는 비거주자의 비준수를 포함함
 - ▶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체의 택스 갭은 조세 행정의 세제 체계와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개인 소득세 갭 또는 법인세 갭에 포함될 수 있음³²⁾

31) 예를 들어 네덜란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같은 특정 세수에 대해 상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지 않고, 각 납세자 단위(entity)별 총 택스 갭을 추정함

32) 대략 60%의 관할 구역이 개인 소득세 갭을 추정하며, 이 중 88%는 신고 갭을, 69%는 납부 갭을 추정하고, 81%는 총 택스 갭을 추정하며, 이 중 절반은 순 택스 갭을 추정함

- ▶ 상향식과 하향식 방법론³³⁾은 모두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으며, 상향식 방법론에서는 무작위 감사가 널리 활용됨

〈표 1-XI-9〉 미신고 노동으로 인한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PIT) 갭

국가	내용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덴마크 국세청은 무작위 감사를 통해 개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갭을 추정함 • 무작위 감사 프로그램 외에도, 신고되지 않은 노동으로 인한 개인소득세 갭의 일부는 노동 투입 방법을 사용하여 별도로 추정됨 • 노동력 투입 방법(The application of the labour input method)의 적용은 덴마크 노동력 조사(Danish Labour Force Survey)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이 데이터는 덴마크 세금 데이터와 비교됨 • 즉 신고되지 않은 노동은 노동력 조사에서 자가 보고된 근로시간이 세금 데이터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근로시간보다 초과하는 부분으로 간주함 • 이 두 데이터 간의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덴마크 내 신고되지 않은 노동의 보급과 가치, 그리고 이에 따른 개인 소득세 갭을 추정할 수 있음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194, 저자 요약 작성

나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gap, CIT) 텍스 갭

- ▣ 법인세 갭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세금 관련 불이행을 포함하며, 대부분의 관할 구역이 보고 및 납부 갭을 분석하고, 상향식 및 하향식 접근법을 활용하여 추정함³⁴⁾
 - ▶ 법인세 갭은 일반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비준수를 포함함
 - ▶ 전체적으로 상향식 접근법이 더 많이 활용되며, 주로 무작위 감사(Random Audits) 또는 위험 기반 감사(Risk-based Audits) 데이터에 기반을 둠
 - ▶ 반면 하향식 접근법에서는 지역 단위의 집계 데이터(Local Aggregated Data)가 주요 자료로 사용됨

33) 하향식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통계, 지역 집계 데이터, 학술 연구를 포함함

34) 전체 관할 구역의 절반이 법인세 갭을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모든 관할 구역이 보고 갭(Reporting Gap)을 분석하며, 86%는 납부 갭(Payment Gap)도 추정함. 관할 구역들은 하향식(Top-down) 또는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사용하며, 두 가지 접근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곳은 2개 관할 구역이 있음

〈표 1-XI-10〉 법인세 갭 추정 사례

국가	내용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CIT)를 위한 확률적 생산 프론티어(Stochastic Production Frontier, SP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법인세 갭을 추정하는 데 있어 전통적인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확률적 생산 프론티어 모델을 도입함 - 이 모델은 기업의 신고 매출과 예상 매출 경계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비준수 수준을 추정하며, 지리적·산업별 세부 분석도 가능함 - 또한 브라질의 「부가가치세법」 개혁 이후, 이 모델을 부가가치세 갭 분석에도 적용할 예정임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 기반 감사를 활용한 대기업 법인세(CIT) 갭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국세청(CRA)은 위험 기반 감사를 활용하여 비준수 위험이 큰 대기업을 100% 평가하지만, 감사에서 발견된 비준수를 전체 대기업 집단에 직접 적용할 수 없어 선택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가지 통계 방법을 사용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극단값 방법론(Extreme Value Methodology): 소수 기업에 비준수가 집중된다는 가정하에 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택스 갭을 추정하지만, 과소 추정 가능성이 있어 최소 추정값으로 사용됨 2)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 인공지능 기반의 비지도 학습 기법을 사용하여 기업을 클러스터링하고, 각 그룹 내에서 비준수 수준을 추정하지만 과대 추정 가능성이 있음 - 캐나다 국세청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신고 갭을 더욱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음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p. 195~196, 저자 요약 작성

다 부가가치세(VAT) 갭

㉮ 부가가치세 갭은 조세 사기 및 환급 과다 청구 등 비준수와 관련되며, 대부분의 관찰 구역이 하향식 접근법을 활용하여 이를 추정함. 또한 일부는 상향식 접근법을 병행하며, 주요 데이터 소스로 무작위 감사(Random Audits) 및 위험 기반 감사(Risk-based Audits) 데이터를 활용함

▶ 부가가치세 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비준수가 관련되며, 다양한 유형의 조세 사기(예: 회전목마 사기) 및 부가가치세 환급 과다 청구 등을 포함할 수 있음³⁵⁾

35) 택스 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의 모든 관찰 구역이 부가가치세 갭을 추정함. 이들 중 약 3분의 2가 보고 갭(Reporting Gap)을, 59%가 납부 갭(Payment Gap)을 추정함. 또한 등록 갭(Registration Gap)은 19%, 신고 갭(Filing Gap)은 30%가 다른 세목보다 더 일반적으로 추정됨. 74%는 총 갭(Gross Tax Gap)을, 44%는 순 부가가치세 갭(Net Tax Gap)을 산정함. 89%가 하향식(Top-down) 접근법을, 33%가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사용하며, 일부 관찰 구역은 두 접근법을 병행하여 활용함. 다만 순수하게 상향식 접근법만으로 부가가치세 갭을 추정하는 관찰 구역은 거의 없음

- ▶ 부가가치세 갭은 잘 확립된 하향식(Top-down) 방법론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가장 먼저 추정하는 항목임

〈표 1-XI-11〉 부가가치세 갭 추정 사례

국가	내용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리아 국세청은 위험 기반 감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부가가치세 갭 및 MTIC (Missing Trader Intra Community) 사기 갭을 상향식(Bottom-up) 접근법으로 추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갭 분석은 통계 추론(parametric inference methods), 머신 러닝(modern machine learning techniques), 최근접 이웃 대체법(nearest neighbour imputation procedures)을 활용한 3단계 모델로, 선택 편향을 보정하고 감사받지 않은 납세자의 갭을 예측함 • MTIC 사기 갭 분석에서는 사기의 핵심 주체인 실종 거래자에 초점을 맞추고, 로지스틱 모델을 활용해 실종 거래자 확률을 추정한 후, 회피된 세금과 결합하여 사기 갭을 추정함 • 해당 접근법을 통해 선택 편향을 최소화하고, 더 정확한 부가가치세 갭 및 사기 갭 추정이 가능해짐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p. 197~198, 저자 요약 작성

라 소비세(Excise) 갭

- ▣ 소비세 갭은 담배, 주류, 연료 등 소비세 품목의 조세 및 관세 비준수가 관련되며, 비교적 드물게 추정³⁶⁾되지만,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법이 동일한 비율로 활용됨
 - ▶ 소비세 갭은 일반적으로 담배·담배 제품, 주류, 연료, 증류주(spirits), 도박 등 소비세 대상 품목이 관련된 조세 및 관세 비준수를 포함함
 - ▶ 소비세 갭은 하향식(Top-down) 및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이 동일한 비율로 사용되며, 각 관할 구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³⁷⁾

36) 전체 관할 구역의 29%만이 소비세 갭을 추정하고 있음

37) 소비세 갭은 주로 총 텍스 갭(Gross Tax Gap)으로 보고되며(63%), 38%의 관할 구역이 순 텍스 갭(Net Tax Gap)을 추정하고 있음. 보고 갭(Reporting Gap)과 납부 갭(Payment Gap)이 일반적으로 분석되며, 소비세 갭을 추정하는 관할 구역 중 63%가 각각 이 두 가지 갭을 측정하고 있음

〈표 1-XI-12〉 소비세 갭 추정 사례

국가	내용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웨덴 국세청(STA)은 다양한 소비세 품목의 소비세 갭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며, 주류·담배세, 혼합 통행료, 에너지세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함 주류, 담배세 갭은 불법 생산 및 밀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며, 외부 기관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함 혼합 통행료 갭은 교통 카메라에서 가려진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여 평가함 에너지세 갭은 전통적인 무작위 감사(Random Audits)를 통해 평가함 소비세의 구조와 대상이 다양하여 전체 소비세 갭을 평가하는 통합적 접근법은 없으며, 세목별로 개별적인 방법론을 적용해야 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199, 저자 요약 작성

마 기타 택스 갭 구성 요소(Other Tax Gap Components)

- ▶ 기타 택스 갭은 각 관할 구역의 세제에 따라 존재하는 다양한 세목³⁸⁾과 관련된 비준수(non-compliance)를 포함하며, 관할 구역마다 그 유형이 다를 수 있음
- ▶ 전체 관할 구역의 36%가 기타 택스 갭 항목을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보고 갭(Reporting Gap, 90%)과 납부 갭(Payment Gap, 70%)을 주로 추정함
- ▶ 70%의 관할 구역이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40%가 하향식(Top-down) 접근법을 사용하며, 이는 주로 무작위 감사(Random Audits)의 가용성 때문임

〈표 1-XI-13〉 기타 예시

국가	내용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트비아 국세청은 세금 신고 데이터를 활용한 상향식 접근법(Bottom-up)을 통해 미신고 임금으로 인한 사회보장 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SSC) 갭을 추정함 모든 고용주는 매월 직원별 임금 및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활용해 사회보장 기여금 갭을 분석 고위험 산업 및 미신고 임금을 받는 직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식별할 수 있음 신고된 실제 임금이 평균 임금의 70% 미만일 경우, 미신고 임금으로 간주하여 사회보장 기여금 및 개인 소득세(PIT) 갭을 추정 이 접근법을 통해 특정 산업과 직업군의 미신고 임금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택스 갭을 줄이는 정책적 대응이 가능해짐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200, 저자 요약 작성

38) 예를 들어 급여세(Payroll Tax), 지방세(Regional Taxes), 사회보장 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상속세(Inheritance Taxes) 등이 이에 해당함

5 택스 갭의 사용(Tax Gap Use)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 등의 이유로 관할권들은 택스 갭을 추정하며, 주요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입법 요건 충족
- 대중과 국회에 투명성 제공
- 신흥 추세 모니터링 및 세제 시스템의 건전성 점검
- 개선이 필요할 수 있는 세제 시스템 및 행정 영역 식별
- 미준수 위험과 그 근본적인 행동 요인에 대해 준수 부문에 정보 제공
- 추가 준수 연구 촉진
- 정책 입안자에게 정보 제공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 조직의 투자 및 계획 수립 촉진
- 조세행정당국의 장기 성과 또는 기타 지표와 함께 성과 측정

〈표 1-XI-14〉 택스 갭 사용 예시

국가	내용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국세청(ATO)은 택스 갭은 기관의 통제를 벗어난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 전체 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택스 갭 추정치만으로 기관 성과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 또한 택스 갭을 단기 성과 지표로 활용하는 것의 한계와 과거 택스 갭 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택스 갭 추세 분석을 통해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며, 특히 세금 및 연금 시스템 관리에서 중기 성과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택스 갭 수치는 기관의 조치와 무관하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호주 국세청은 성과 평가 시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여 택스 갭 개선이나 유지에 대한 기관의 기여도를 명확히 분석함 • 택스 갭 성과 변화는 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세제 시스템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며 호주 국세청은 택스 갭 추정치를 전략 수립 및 자원 배분 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p. 201~202, 저자 요약 작성

6 COVID-19 팬데믹이 택스 갭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

- ▣ 팬데믹은 정부가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액 징수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함에 따라 각국의 조세행정당국에 영향을 미침
 - ▶ 많은 관할 구역에서는 이미 팬데믹이 택스 갭 추정치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일부는 이에 맞게 방법론을 조정하고 있으나, 택스 갭에 미친 전체적인 영향은 앞으로 더욱 자세히 검토되어야 함

〈표 1-XI-15〉 택스 갭 측정에 대한 COVID-19 팬데믹의 영향

국가	내용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호주 국세청은 외부 데이터의 큰 변동과 내부 감사 건수 감소 등의 기존 택스 갭 추정치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발견함 • 이에 따라 새로운 회귀 모델 도입과 지급 프로그램 택스 갭 추정을 통해 대응 기회를 모색함 • 호주 국세청은 국가 계정 통계 등 외부 데이터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큰 변화를 관찰함 • 또한 소비 패턴의 변화로 부가가치세(GST/VAT) 택스 갭이 크게 축소되었고, 운영 감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내부 데이터 역시 감사 건수 감소로 인해 영향을 받음 • 이에 따라 일부 예비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아졌으며, 중간 규모 사업체의 택스 갭 추정을 위해 기존의 극한값 방법(Extreme Value Method)에서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및 푸아송 의사 최대 우도 회귀 모델(Poisson Pseudo Maximum Likelihood regression model)을 결합한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됨 • 한편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호주 국세청은 경제 부양책에 택스 갭 개념을 적용하여, 기업과 개인 지원 목적 지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급(Payment)' 갭 추정치를 산출함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2024*, 2024, p. 202, 저자 요약 작성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복미

1 미국

가 자사주매입에 대해 소비세 부과

[조세동향 24-07호]

-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4년 6월 28일, IRA에 따라 제정된 자사주매입(Stock Repurchase)에 대한 소비세(Excise Tax) 시행을 확정함³⁹⁾

 - ▶ 소비세 최종 규정은 2024년 6월 28일 발효되고 2024년 7월 3일 연방관보에 게재됨
- ▣ 자사주매입에 대한 소비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자사주매입에 적용되며 공정가치의 1%를 부과함⁴⁰⁾

 - ▶ 과세표준은 재매입한 주식의 공정가치에서 해당 과세 연도 중 대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치를 차감하는 상계 규칙을 적용함
 - ▶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환매, 연간 1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환매,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증권 달러의 환매, 뮤추얼 펀드(RIC)와 부동산 투자 신탁(REIT)의 환매, 배당 분배로 처리되는 환매 등 특정 유형의 취득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음
 - ▶ 2022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되는 과세 연도가 두 개 이상인 법인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하나의 Form 720과 과세 연도별 Form 7208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39) IBFD, "Treasury and IRS Finalize Regulations to Implement 1% Excise Tax on Corporate Stock Repurchases," 2024. 7.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02_us_1.html, 검색일자: 2024. 7. 10.

40) IBFD, "United States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9. Miscellaneous Taxes (Last Reviewed: 1 April 202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a_us_s_9.5.1.%23gtha_us_s_9.5.1., 검색일자: 2024. 7. 10.

나 ▶ **팁 소득(Tip Income) 비과세 법안 관련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24-08호]

- ▣ 미국 의회조사국(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은 2024년 7월 31일, 팁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분배적 영향을 다룬 보고서 IF12728을 발표함⁴¹⁾
 - ▶ 미국 의원들은 제118회 의회에서 팁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여러 법안을 제출했고, 이에 의회조사국은 팁 소득의 현행 세무처리와 비과세할 경우의 잠재적 결과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함
 - ▶ 미국은 현재 팁 소득에 대해 근로자 개인의 소득세와 연방급여세(payroll tax)⁴²⁾ 등을 부과함
 - 팁 소득이 월 2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하고 고용주는 과세 대상 금액에 팁 소득을 포함해야 함
 - 근로자는 개인소득세와 연방급여세 중 근로자 부담분, 그리고 0.9%의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야 함
 - 고용주는 연방급여세 중 고용주 부담분과 연방·주(state) 실업보험세를 납부해야 함
 - ▶ 팁 소득의 비과세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음
 - (수평적 형평성) 근로자 간 소득수준이 유사한 경우 팁 소득의 비과세로 팁 소득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팁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세후 소득이 높아짐
 - (수직적 형평성) 팁을 받는 직종의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보다 평균적으로 소득이 적고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팁 소득 비과세의 영향은 미미함
 - (노동공급) 소득의 비과세로 근로자의 추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가 떨어지고 노동공급 시간에 상향 압력을 가함
 - (재정) 세수가 줄고 사회 보장 및 의료 보험의 상태를 악화시킴

41) IBFD,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Examines Consequences of Excluding Tip Income from Taxation,” 2024. 8.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8-02_us_4.html, 검색일자: 2024. 8. 13.

42) 연방급여세는 임금의 6.2%까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부과하는 세금

다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시행 관련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24-09호]

- ▣ 미국 의회조사국(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은 2024년 8월 1일,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이하 DST) 시행과 관련하여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IN12399를 발표함⁴³⁾

 - ▶ 캐나다는 2024년 6월 28일, DST⁴⁴⁾를 발효함
 - 캐나다 외에도 18개 국가에서 BEPS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DST를 시행하고 있음
 - ▶ DST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대부분이고 DST는 디지털 서비스를 수출하는 데에 장벽이 될 수 있음
 - 산업협회(Industry associations)는 DST로 연간 최대 23억달러⁴⁵⁾의 손실이 발생하고 수천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함
 - DST는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초기의 세부담은 잠재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세금 전가는 소비자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음
 - ▶ 미국이 OECD의 필라1, 2를 채택하는 것은 DST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의회의 합의가 부족한 실정임
 - 일부 의원들은 OECD 프레임워크가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글로벌 조세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DST를 점진적으로 없앨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함
 - ▶ 현재 미국 의회는 기술 부문에 대한 규제 등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입법 활동을 진행 중이며 이는 DST 및 글로벌 조세 프레임워크와 중복될 수 있음
- ▣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4년 8월 30일, 캐나다의 DST 시행에 대해 분쟁 해결 협의를 요청함⁴⁶⁾⁴⁷⁾

43) IBFD, “Members of Congress Express Concern over Newly Enacted Canadian Digital Service Tax, says CRS Report,” 2024. 8.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8-06_us_1.html, 검색일자: 2024. 9. 6.

44) 모든 출처에서 연간 총수익이 미화 8억 1,500만달러 이상이고 캐나다에서 연간 1,5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 DST는 2022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고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2025년 1월 31일 까지 캐나다 국세청(CRA)에 등록해야 하며, 첫 번째 납부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임

45) 2024년 9월 6일 원화 환산 시 3조 659억원임

- ▶ 무역대표부는 캐나다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DST를 적용하는 것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기업을 우대하는 것이므로, DST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 - Mexico - Canada Agreement, USMCA)을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함

라 법인 대체 최저한세(CAMT) 관련 제안 규정 발표

[조세동향 24-10호]

- ▣ 미국 국세청(IRS)은 2024년 9월 12일, 법인 대체 최저한세(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CAMT)에 관한 제안 규정(proposed regulations)을 발표함⁴⁸⁾
 - ▶ CAMT는 조정된 회계상 이익(Adjusted Financial Statement Income, AFSI)이 10억달러를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AFSI의 최소 15%를 세금으로 부과함
 - 2022. 12. 31. 이후 과세 연도부터 AFSI를 계산함
 - CAMT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들이 전부 완성되지는 않았음
 - 이번에 발표된 규정의 실제 도입에 앞서 납세자들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의견을 낼 수 있고, 2025년 1월 16일에 열릴 청문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신청할 수 있음⁴⁹⁾
 - ▶ 해외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Foreign Parented Multinational Group, FPMG)의 경우, 그룹 전체의 AFSI가 10억달러를 초과하고 미국 지사의 이익(profit)이 1억달러

46) USTR, "United States Requests USMCA Dispute Settlement Consultations on Canada's Digital Services Tax," 2024. 8. 30.,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4/august/united-states-requests-usmca-dispute-settlement-consultations-canadas-digital-services-tax>, 검색일자: 2024. 9. 6.

47) IBFD, "United States Requests Dispute Settlement Consultations on Canada's Digital Service Tax," 2024. 9.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9-05_us_2.html, 검색일자: 2024. 9. 6.

48) IRS, "IRS issues proposed regulations for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2024. 9. 12., <https://www.irs.gov/newsroom/irs-issues-proposed-regulations-for-corporate-alternative-minimum-tax>, 검색일자: 2024. 10. 15.

49)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Releases Proposed Rules for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to Address Significant Corporate Tax Avoidance By Companies with \$1 Billion Or More In Annual Profit," 2024. 9. 12.,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574>, 검색일자: 2024. 10. 17.

이상이면 CAMT 부과 대상이 됨⁵⁰⁾

- ▶ 이번 발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CAMT 납부를 위한 AFSI 관련 규정, CAMT의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에 관한 규정, 그리고 연계된 법인들이 공동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에 관한 규정 등이 있음⁵¹⁾
- ▶ 미국 국세청은 2024년 9월 12일, 공지 2024-66을 추가로 발표하며 2023. 12. 31. 이후부터 2025. 1. 1. 이전까지의 과세 연도에 대해 계산상의 착오로 CAMT 납부액에 미달한 경우, CAMT 도입 과도기인 점을 감안하여 추가 납부를 면제한다고 함⁵²⁾ -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반드시 Form 2220을 작성해서 연방 소득세 신고 기간에 제출해야 함
- ▶ 미국은 OECD 필라2의 최저한세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CAMT는 미국이 세수 확보와 세액의 형평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것임⁵³⁾
-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4년 10월 23일,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비과세법인(Tax-Exempt Organization)⁵⁴⁾⁵⁵⁾은 2023년 과세 연도에 대해 CAMT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함⁵⁶⁾⁵⁷⁾

50) Wolters Kluwer, “Minimum tax regulations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U.S: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CAMT) vs. BEPS Pillar Two,” 2024. 5. 7. <https://www.wolterskluwer.com/en/expert-insights/minimum-tax-regulations-for-us-corporation-s-camt-beps>, 검색일자: 2024. 10. 17.

51) Federal Register,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Applicable After 2022,” 2024. 9. 13.,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9/13/2024-20089/corporate-alternative-minimum-tax-applicable-after-2022>, 검색일자: 2024. 10. 17.

52) IRS, “Notice 2024-66,” 2024. 9. 12., <https://www.irs.gov/pub/irs-drop/n-24-66.pdf>, 검색일자: 2024. 10. 15.

53) Bloomberg Tax, “Treasury Proposes Rules on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2),” 2024. 9. 12., Updated: 2024. 9. 13.,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BNA%20000001855a41dc75ada77edb2de30001?bna_news_filter=daily-tax-report&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YyY2gvcmVzdWx0cy9iMzgzZmIwNjVjNDc1NzQ5MGFmNTlhMWIxOGRmNzZmOCJdXQ-2d93b27320de38ef9e1565b8ba79df8fa915b4ae&criteria_id=b383fb065c4757490af59a1b18df76f8, 검색일자: 2024. 10. 15.

54) 예시로 자선 단체, 종교 단체, 선거 관련 단체 등이 있음

55) IRS, “Exempt organization types,”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exempt-organization-types>, 검색일자: 2024. 10. 25.

56) IRS, “Treasury, IRS grant filing exception for tax-exempt organizations from filing new Form 4626, Alternative Minimum Tax - Corporations,” 2024. 10. 23.,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irs-grant-filing-exception-for-tax-exempt-organizations-from-filing-new-form-4626-alternative-minimum-tax-corporations>, 검색일자: 2024. 10. 25.

57) IBFD, “IRS Grants Tax-Exempt Organizations Exemption from Filing CAMT Form for Tax

- 단 비과세법인이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분야 또는 사업에서 얻은 AFSI에 한해서 CAMT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임⁵⁸⁾

마 ▶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최종 규정 발표

[조세동향 24-11호]

- ▣ 미국 국세청(IRS)은 2024년 10월 24일,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Section 45X of the Internal Revenue Code)의 최종 규정(final regulations)을 발표함⁵⁹⁾
 - ▶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이하 IRA)」에 의해 도입됨
 - ▶ 이번에 발표된 최종 규정을 통해 미국 내에서의 태양광 에너지 부품, 풍력 에너지 부품, 배터리 부품 등의 생산과 50여 가지의 핵심 광물 채굴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정함⁶⁰⁾
 - ▶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는 2024년 10월 24일 보도자료에서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 기술을 발전시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내에서 첨단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힘⁶¹⁾
 - ▶ 최종 규정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부품의 정의, 부품 목록, 부품별 세액공제 규모, 핵심 광물 목록, 부품 판매 방식, 세액공제 남용이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⁶²⁾

Year 2023,” 2024. 10.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24_us_3.html, 검색일자: 2024. 10. 25.

58) *id.*

59) IRS, “Treasury, IRS issue final regulations for the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보도자료, 2024. 10. 24.,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irs-issue-final-regulations-for-the-advanced-manufacturing-production-credit>, 검색일자: 2024. 11. 18.

60) *Id.*

61)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Releases Final Rules to Onshore Clean Energy Technologies, Strengthen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and Expand U.S. Manufacturing Base as Part of Investing in America Agenda,” 보도자료, 2024. 10. 24.,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671>, 검색일자: 2024. 11. 20.

62) IBFD, “US Treasury Releases Final Rules for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Tax Credits for Clean Energy Components,” 2024. 10.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28_us_4.html, 검색일자: 2024. 11. 18.

- 세액공제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미국 내에서만 생산된 부품을 대상으로 함⁶³⁾
- 최종 규정의 효력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발생함⁶⁴⁾

바 에너지 세액공제 최종 규정 발표

[조세동향 24-12호]

- ▾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와 국세청(IRS)은 2024년 12월 4일, 에너지 세액공제(Energy Credit/Section 48 of the Internal Revenue Code)⁶⁵⁾의 적용에 대한 최종 규정(final rules)⁶⁶⁾을 발표함⁶⁷⁾⁶⁸⁾
 - ▶ 에너지 세액공제는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로도 알려져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의해 2025년까지 연장됨
 - ▶ 최종 규정은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2023년 11월에 발표한 제안 규정(proposed rules)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제출된 350여 개의 의견을 수렴하여 에너지 세액공제의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였음
 -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⁶⁹⁾
 - 에너지 세액공제 대상에 태양광 에너지 설비, 지열 에너지 설비, 해상풍력발전 설비 (해저케이블 포함), 연료 전지 관련 설비, 바이오가스 설비, 에너지 저장 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이전보다 범위가 넓어짐

63) Federal Register,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10/28/2024-24840/advanced-manufacturing-production-credit>, 검색일자: 2024. 11. 18.

64) *Id.*

65) 에너지 세액공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자 1962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

66) 최종 규정은 시행령과 같으며 법적 효력이 있음

67)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Releases Final Rules on Investment Tax Credit to Produce Clean Power, Strengthen Clean Energy Economy,” 2024. 12. 4.,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736>, 검색일자: 2024. 12. 13.

68) IBFD, “Treasury Finalizes Proposed IRA-Focused Green Energy Credit Guidelines,” 2024. 12. 5.,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12-05_us_5, 검색일자: 2024. 12. 13.

69) Federal Register, “Definition of Energy Property and Rules Applicable to the Energy Credit,” 2024. 12. 12.,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12/12/2024-28190/definition-of-energy-property-and-rules-applicable-to-the-energy-credit>, 검색일자: 2024. 12. 13.

- 기본적인 세액공제액은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설비의 종류에 따라 투자액의 6% 또는 2%에 해당하는 금액임
- 친환경 에너지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등과 같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이 규정에 따라 증가함
-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과 설비는 종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또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을 시작해야 함
- ▶ 미국 재무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사업 투자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으며, 윌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재무부 부장관은 전기·가스·수도 요금을 줄이고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좋은 일 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임

2 캐나다

가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시행 관련 법안 통과

[조세동향 24-07호]

- ▣ 캐나다 국왕은 2024년 6월 20일, 2024회계연도 예산안의 특정 항목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 C-69를 승인함⁷⁰⁾⁷¹⁾⁷²⁾
 - ▶ 법안 C-69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한 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세제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 세계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MNE)을 대상으로 15%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함

70) PARLIAMENT OF CANADA, "BILL C-69," 2024. 6. 19., <https://www.parl.ca/DocumentViewer/en/44-1/bill/C-69/third-reading>, 검색일자: 2024. 7. 10.

71) Government of Canada, "Budget 2024: Legislation to ensure fairness for every generation receives Royal Assent," 2024. 6. 20., <https://www.canada.ca/en/departement-finance/news/2024/06/budget-2024-legislation-to-ensure-fairness-for-every-generation-receives-royal-assent.html>, 검색일자: 2024. 7. 10.

72) IBFD, "Canada Enacts Global Minimum Tax Act, Other Tax Measures in Bill C-69," 2024. 6.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21_ca_1.html, 검색일자: 2024. 7. 10.

- 청정기술 투자는 30%, 청정수소 투자는 최대 40%까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 특정 청정수소 프로젝트의 투자 자격을 갖춘 기업에 환급 가능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함
- 중소기업을 위한 탄소환급을 시작함
- 자원봉사 소방관과 자원봉사 수색 구조원의 세액공제액을 2배로 인상함
- 언론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4년간 25%에서 35%로 일시적으로 늘리고, 대상 언론인 1인당 공제금액 한도는 5만 5천캐나다달러에서 8만 5천 캐나다달러로 상향함
- 15% 광물탐사 세액공제를 1년 연장함
- 직원 소유 신탁에 사업을 매각할 경우 1천만캐나다달러의 자본 이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함

나 ▶ 심플파일(Simple File) 세정지원 서비스 확대

[조세동향 24-08호]

- ▣ 캐나다 국세청은 2024년 7월 30일, 개인납세자 50만 명에게 심플파일 세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함⁷³⁾⁷⁴⁾
 - ▶ 국세청은 2024년 초, 150만명 이상의 개인에게 심플파일서비스를 안내했고 동 서비스를 확대하여 50만명에게 추가로 제공하기로 함
 - 심플파일(SimpleFile)이란 자격을 갖춘 개인납세자에게 전화, 디지털방식 등으로 세금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캐나다 국세청의 세정서비스임
 - ▶ 자격을 갖춘 개인납세자는 2023년 귀속 소득세신고서를 심플파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73) Government of Canada, “Over half a million lower-income individuals will receive a Simple File invitation this summer,” 2024. 7. 30.,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newsroom/tax-tips/tax-tips-2024/over-half-million-lower-income-individuals-receive-simplefile-invitation-this-summer.html?utm_source=mediaroom&utm_medium=eml, 검색일자: 2024. 8. 13.

74) IBFD, “Canada Expands SimpleFile Services, Invites 500,000 More Lower-Income Individuals to File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s,” 2024. 7.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31_ca_1.html, 검색일자: 2024. 8. 13.

- 자격을 갖춘 개인납세자란 연령, 거주지역,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임계값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으로 노령연금, 고용관련 지원 소득, 일부 이자소득 등 특정 출처에서만 수입이 발생한 경우를 충족한 소득자임
- ▶ 국세청은 심플파일을 통해 납세자에게 세무신고의 간소화를 제공하고 중요한 세제혜택과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할 수 있음
- 심플파일은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거나 신고의 공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많은 저소득층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녀수당, GST/HST 크레딧 등 중요한 세제혜택을 놓치고 있기 때문임

다 미국과의 분쟁 해결 협의에 대한 성명 발표

[조세동향 24-10호]

- ㉓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는 2024년 8월 30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요청한 분쟁 해결 협의에 대해 성명을 발표함⁷⁵⁾⁷⁶⁾
 - ▶ 미국 무역대표부는 캐나다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DST(Digital Service Tax)를 적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기업을 우대하는 것이므로, DST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을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함⁷⁷⁾
 - ▶ 이에 캐나다는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어디에서 사업을 하든 공정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
 - 캐나다는 2024년까지 다자간 협약이 발효되지 않을 경우 2024년부터 DST를 시행할 예정이었음
 - 또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DST를 시행하고 있어 캐나다는 이러한 국가에 비해 불리한 입장임

75) Government of Canada, "Statement by the Government of Canada on international tax reform," 2024. 8. 30.,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4/08/statement-by-the-government-of-canada-on-international-tax-reform.html>, 검색일자: 2024. 10. 15.

76) IBFD, "Canada Reaffirms DST Stance Following US Dispute Settlement Consultation Request," 2024. 9.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9-06_ca_1.html, 검색일자: 2024. 10. 15.

7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4-09호, 2024. 9., p. 5.

- 캐나다는 미국 관계자들과 수년 전부터 DST 시행에 대해 논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 밝힘

라 온실가스 배출 상한 규정 초안 발표

[조세동향 24-12호]

- ▣ 캐나다 정부는 2024년 11월 4일, 「석유 및 가스 부문 온실가스 배출 상한 규정(the Oil and Gas Sector Greenhouse Gas Emissions Cap Regulations)」 초안을 발표함⁷⁸⁾⁷⁹⁾
 - ▶ (적용 대상) 동 규정은 상류(upstream) 석유 및 가스 시설과 LNG 시설의 운영자에게 적용됨
 - 대규모 배출자는 2027년부터, 소규모 배출자는 2029년부터 적용됨
 - ▶ (등록) 적용 대상자는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금지됨
 - ▶ (배출 허용량) 매년 비례 배분함
 - 규정에 명시된 배분율과 각 시설의 3년 평균 생산이력에 따라 배분됨
 - 배분된 허용량 외에도 배출권이 필요한 경우, 탈탄소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획득한 상쇄(offset) 크레딧, 다른 운영자에게 구입한 배출권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음
 - ▶ (보고의무) 각 시설에 대한 정보가 담긴 「연례보고서」와 누적 생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누적생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연례보고서」는 공인된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제출자는 제출 후 5년 이내에 오류나 누락에 대해 수정할 책임이 있음
 - ▶ 초안에 대한 협의는 2024년 11월 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진행되고 협의내용을 반영한 최종안은 2025년에 발표될 예정임

78) 캐나다정부, “Canada Gazette, Part I, Volume 158, Number 45: Oil and Gas Sector Greenhouse Gas Emissions Cap Regulations,” 2024. 11. 9., <https://canadagazette.gc.ca/rp-pr/p1/2024/2024-11-09/html/reg1-eng.html>, 검색일자: 2024. 12. 10.

79) IBFD, “Canada Introduces Regulations to Limit Greenhouse Gas Emissions,” 2024. 11.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1-12_ca_1.html, 검색일자: 2024. 12. 10.

II 유럽

1 영국

가 에너지 이익 부담금 인상안 발표

[조세동향 24-08호]

- ▣ 영국 재무부는 2024년 7월 29일, 에너지 이익 부담금(Energy(Oil and Gas) Profits Levy, EPL) 세율을 2024년 11월 1일부터 기존 35%에서 38%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발표함⁸⁰⁾
 - ▶ 이에 따라 업스트림(upstream)⁸¹⁾ 석유 및 가스 활동에 대한 기본 세율(headline rate of tax)은 78%에 달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현재 영국은 석유 및 가스 업체에 대해 30%의 링 펜스 법인세율(Ring Fence Corporate Tax, RFTC)에 10%의 추가요금 세율(Supplementary Charge, SC)을 가산한 40%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여기에 에너지 이익 부담금(EPL) 세율 35%를 가산하여 총 75%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 이번 발표한 인상안은 에너지 이익 부담금(EPL) 세율 35%를 38%로 3%p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 부담금 적용 종료일 또한 2029년 3월 31일에서 2030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될 예정임
 - ▶ 한편 2024년 1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적격 지출(qualifying expenditure)에 대한 29%의 투자 공제(investment allowance)는 삭제될 예정임

80) IBFD, "United Kingdom - Treasury Proposes to Raise Energy Profits Levy Rate to 38%," 2024. 7.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30_uk_2.html, 검색일자: 2024. 8. 8.

81) 석유산업은 원유의 생산 단계의 부문을 업스트림(upstream), 정제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을 판매 단계의 부문을 다운스트림(downstream)으로 구분하여 나눌 수 있음

- ▶ 이번 조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24년 10월 30일 발표 예정인 예산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나 디지털 플랫폼 보고 규칙에 대한 지침 발표

[조세동향 24-08호]

- ▣ 영국 국세청(HMRC)은 2024년 8월 1일, 디지털 플랫폼 보고 규칙(reporting rules for digital platforms)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보고 대상 정보의 성격, 실지조사 요건, 일정 및 과태료 등의 내용이 포함됨⁸²⁾⁸³⁾
 - ▶ 영국의 디지털 플랫폼 보고 규칙 도입은 OECD가 2020년 발표한 「공유·임시 경제 판매자 관련 플랫폼 보고 모델 규정(OECD Model Rules for Reporting by Platform Operators with respect to Sellers in the Sharing and Gig Economy)」⁸⁴⁾에 따른 것임
 - ▶ 디지털 플랫폼 보고 규칙에 따르면, 영국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거나, 관리 장소를 둔 디지털 플랫폼은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자와 고객을 연결하여 상품·서비스를 공급하여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상품·서비스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디지털 플랫폼 보고 대상이 됨
 - ▶ 보고 대상 판매자는 영국 또는 다른 국가에 거주하며 플랫폼에서 상품·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거나 대가를 받아야 함
 - ▶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회계연도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 보고는 2025년 1월 31일 까지 완료되어야 함
 - ▶ 기한 내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됨

82) IBFD, “United Kingdom - Tax Authority Publishes Guidance on Reporting Rules for Digital Platforms,” 2024. 8.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8-06_uk_1.html, 검색일자: 2024. 8. 9.

83) GOV.UK., “Guidance - Reporting rules for digital platforms,” 2024. 8. 1., <https://www.gov.uk/guidance/reporting-rules-for-digital-platforms>, 검색일자: 2024. 8. 9.

84) OECD, *Model Rules for Reporting by Platform Operators with respect to Sellers in the Sharing and Gig Economy*, OECD, Paris, 2020, <https://www.oecd.org/en/topics/sub-issues/international-tax-compliance-policies-and-best-practices/model-reporting-rules-for-digital-platforms.html>, 검색일자: 2024. 8. 9.

- 보고 대상 플랫폼 운영자 또는 보고 제외 대상 플랫폼 운영자가 HMRC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파운드⁸⁵⁾
-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파운드⁸⁶⁾의 초기 과태료가 부과되고, 매일 최대 6천파운드⁸⁷⁾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됨
- 부정확·불완전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판매자의 기록을 보고한 것에 대하여 건당 최대 100파운드⁸⁸⁾
- ▶ HMRC는 디지털 플랫폼 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추후 추가적인 지침이 발표될 예정임

다 2024년 가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4-11호]

- ▣ 영국은 2024년 10월 30일, 2024년 가을 예산안(Autumn Budget 2024)을 발표하였음⁸⁹⁾
 - ▶ 이번 예산안에는 송금기준 제도 폐지 및 거주지 기반 제도로의 대체, 에너지 이익 부담금 인상, 유류세 동결 등의 내용이 포함됨
- ▣ 개인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발표함⁹⁰⁾
 - ▶ 2025년 4월 6일부터 영국 비거소 개인(Non-UK domiciled individuals)에 대한 현행 소득세 제도가 폐지되고, 거주지 기반 제도로 대체될 예정임
 - 현행 제도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총 소득 및 이익에 대한 소득세가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에 영국으로 송금하는 해외 소득 및 이익에 대한 소득세

85) 2024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5만원임

86) 2024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77만원임

87) 2024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52만원임

88) 2024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만원임

89) GOV.UK., "Autumn Budget 2024 speech," 2024. 10. 30.,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autumn-budget-2024-speech>, 검색일자: 2024. 11. 4.

90) IBFD, "United Kingdom - Budget 2025 in Depth: Personal Tax Proposals Include Abolition of Non-Domicile Regime, Increase in Capital Gains Tax Rates," 2024. 10.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31_uk_2.html, 검색일자: 2024. 11. 1.

납부를 선택할 수 있음⁹¹⁾

- 지난 10년간 영국 거주자가 아니었던 신규 입국자에게 4년간 해외 소득 및 이익 (foreign income and gains, FIG)에 대해 100%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거주지 기반 제도로 대체될 예정임
- 이에 따라 2025년 4월 6일 이전에 발생한 비과세 및 미송금 FIG를 영국으로 송금 하고 2025년 4월 6일부터 3년간 낮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
- ▶ 2024년 10월 30일 이후 처분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어 하위 세율은 10%에서 18%로, 상위 세율은 20%에서 24%로 인상됨

▣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발표함⁹²⁾

- ▶ 고용주가 부담하는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이하 NIC) 부담금은 2025년 4월 6일부터 1.2%p 인상되어 15.0%로 인상될 예정임
- 다만 소규모 사업체에 경감을 제공하고자 고용 수당(employment allowance)을 연간 5천파운드에서 1만 500파운드로 인상할 예정이며, 10만파운드 기준은 삭제될 예정임
- ▶ 현 의회 임기 동안 법인세율 최고 한도를 25%로 제한하는 한편, 공장 및 기계 지출에 대한 전액 즉시비용처리(full expensing), 연간 100만파운드의 투자 공제 및 현행 R&D 감면을 유지를 재확인함

▣ 국제조세 및 기타 세목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발표함

- ▶ 글로벌최저한세(필라2)와 관련하여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이하 UTPR) 시행을 확인함⁹³⁾

91) IBFD, “United Kingdom - HMRC Issues Technical Note for Proposed Change to Taxation of Non-UK Domiciled Persons,” 2024. 11.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1-05_uk_1.html, 검색일자: 2024. 11. 11.

92) IBFD, “United Kingdom - UK Budget 2024 Would End Non-Dom Regime, Hike Capital Gains Tax Rates, Increase Employers’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2024. 10.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10-30_uk_1%23tns_2024-10-30_uk_1, 검색일자: 2024. 11. 4.

93) IBFD, “United Kingdom - Budget 2025 in Depth: UK Confirms Implementation of Pillar Two Undertaxed Profits Rule,” 2024. 11.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1-01_uk_2.html, 검색일자: 2024. 11. 4.

- ▶ 2027년 1월 1일부터 영국 탄소국경 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이 도입될 예정임을 밝힘⁹⁴⁾
 - 이를 통해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및 철강 부문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탄소 누출 위험이 있는 상품에 탄소 가격을 부과할 예정이며, 유리 및 세라믹 부문 제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에너지(석유 및 가스) 이익부담금(energy(oil and gas) profits levy, 이하 EPL)이 현행 35%에서 38%로 인상되고 부과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30년 3월까지 연장할 예정임
 - 이에 따라 40%의 표준세율에 38%의 EPL까지 더하면 총세율은 현행 75%에서 78%로 인상될 것이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 또한 영국 정부는 유류세 동결 기간을 1년 연장할 것이라고 밝힘
 - 영국 유류세는 2011년부터 동결되어 왔는데, 러-우 전쟁 이후 2022/23년도에 일시적으로 5펜스 인하되었음⁹⁵⁾

라 필라2 추가세액 납부에 대한 지침 발간

[조세동향 24-12호]

- ▣ 영국은 2024년 11월 20일, 필라2 추가세액 납부에 대한 지침⁹⁶⁾을 발간함⁹⁷⁾
 - ▶ 특정 상황에서 영국 기업이 필라2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납부기한에 대해 설명함
 - 그룹이 필라2 추가세액을 보고해야 하는 첫 번째 회계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및

94) IBFD, "United Kingdom - Budget 2025 in Depth: Announcements on Duties, Levies Include Increase in Air Passenger Duty, Stamp Duty Land Tax for Additional Properties," 2024. 11. 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11-01_uk_1%23tns_2024-11-01_uk_1, 검색일자: 2024. 11. 4.

95) 에너지경제연구원, 「영국 정부, 가을 예산안에 북해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횡재세 인상 및 유류세 인하 발표」, 2024. 11. 11.,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4-22호, https://www.keei.re.kr/pdfOpen?bid=0014&list_no=123889&seq=1, 검색일자: 2024. 11. 22.

96) GOV.UK., "Guidance - Pay Pillar 2 top-up taxes (Domestic Top-up Tax and Multinational Top-up Tax)," 2024. 11. 20., <https://www.gov.uk/guidance/pay-pillar-2-top-up-taxes-domestic-top-up-tax-and-multinational-top-up-tax>, 검색일자: 2024. 12. 2.

97) IBFD, "United Kingdom - HMRC Issues Guidance on Payment of Pillar Two Top-Up Taxes," 2024. 11.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1-22_uk_3.html, 검색일자: 2024. 12. 2.

- 그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 납부되어야 함
- 그룹이 필라2 추가세액을 보고해야 하는 첫 번째 회계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이 지난 후에 종료되는 경우,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18개월 후까지 납부되어야 함
- 상기 이외의 모든 경우 2026년 6월 30일과 그룹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후 중 늦은 날까지 납부되어야 함
- ▶ 동 지침은 기업이 납부를 위해 필요한 정보, 납부 방법 및 계좌 정보 또한 설명하고 있으며 납부는 영국 파운드화(GBP)로 이루어져야 함

2 아일랜드

가 2024년 여름 경제 성명서 발표

[조세동향 24-07호]

- ▣ 아일랜드 정부는 2024년 7월 9일, 69억유로⁹⁸⁾ 규모의 추가 공공지출과 14억유로⁹⁹⁾ 규모의 과세 조치가 포함된 「2024년 여름 경제 성명서(Summer Economic Statement Paper)」를 발표함¹⁰⁰⁾¹⁰¹⁾
 - ▶ 금번 성명서의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인 2025년 예산안에도 담길 예정임
 - 아일랜드의 2025년 예산안은 총 83억유로¹⁰²⁾ 규모의 패키지로, 2024년 10월 1일에 아일랜드 의회에 제출될 예정임
 - ▶ 추가 공공지출(additional public spending)은 69억유로, 과세 조치(taxation measures)는 14억유로 규모로 이루어질 예정임

98) 2024년 7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조 3,182억원임

99) 2024년 7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조 935억원임

100) IBFD, "Ireland - Government Proposes Tax Package of EUR 1.4 Billion in Budget 2025," 2024. 7.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10_ie_1.html, 검색일자: 2024. 7. 11.

101) 아일랜드 정부, "Ministers Chambers and Donohoe publish Summer Economic Statement 2024," 2024. 7. 9., <https://www.gov.ie/en/press-release/ed03d-ministers-chambers-and-donohoe-publish-summer-economic-statement-2024/>, 검색일자: 2024. 7. 11.

102) 2024년 7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조 4,081억원임

- 69억유로 규모의 추가 공공지출에는 보육, 의료, 주택,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증가가 포함될 예정이며, 의료 서비스를 위한 15억유로¹⁰³⁾의 추가 지출 등도 포함될 예정임
-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세율 부과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14억유로 규모의 조세 패키지를 통해 세액공제 및 세율 구간을 조정할 계획임

나 R&D 세액공제 인상 발표

[조세동향 24-07호]

- ▣ 아일랜드는 2024년 7월 10일, 적격 R&D 지출에 대한 R&D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0%로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함¹⁰⁴⁾
 - ▶ 1차 연도에 적용 가능한 R&D 세액공제 금액을 2만 5천유로¹⁰⁵⁾에서 5만유로¹⁰⁶⁾로 상향 조정함
 - ▶ 신고 전 통지 요건(pre-filing notification requirement)을 도입함
 -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일랜드 국세청에 R&D 세액공제 신청 의향을 통지하여야 함
 - 신고 전 통지 요건은 R&D 세액공제를 처음 적용하는 기업 및 과거 3개 회계기간 동안 R&D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 적용됨

다 은행 부담금 적용기한 2025년으로 연장 발표

[조세동향 24-09호]

- ▣ 아일랜드 재무부는 2024년 8월 27일, 은행 부담금(bank levy) 적용을 2025년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함¹⁰⁷⁾

103) 2024년 7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조 2,430억원임

104) IBFD, "Ireland - Revenue Raises R&D Tax Credit to 30% from 2024," 2024. 7.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15_ie_2.html, 검색일자: 2024. 7. 16.

105) 2024년 7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74만원임

106) 2024년 7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549만원임

- ▶ 은행 부담금은 2014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연장된 바 있음
- ▶ 은행 부담금은 2022년 말 기준 은행의 총예금보유 잔액의 0.112%의 인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과됨
- ▶ 아일랜드 재무부 장관은 이 은행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2025년 예산에서 가계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세 패키지 도입 여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 동 연장안은 2025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임

라 2025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4-10호]

- ▣ 아일랜드 정부는 2024년 10월 10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함¹⁰⁸⁾¹⁰⁹⁾

 - ▶ 이번 예산안에는 지분면세제도 도입, R&D 세액공제 확대, 개인소득세 관련 세액공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 (법인세) 법인세 측면에서는 지분면세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외국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분면세제도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EU/EEA 및 조세조약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특정 외국 배당 및 분배소득에 대해 적용됨
 - ▶ R&D 세액공제의 연 한도 금액을 5만유로에서 7만 5천유로로 확대함
- ▣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측면에서는 개인소득세 세액공제 강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07) IBFD, "Ireland - Finance Minister Announces Plans to Extend Bank Levy Through 2025," 2024. 8.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8-30_ie_1.html, 검색일자: 2024. 9. 6.

108) IBFD, "Budget 2025 in Depth: Draft Finance Bill Details Previous Announcements, Including Participation Exemption, Angel Investor Relief," 2024. 10.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14_ie_1.html, 검색일자: 2024. 10. 21.

109) 아일랜드 국세청, "BUDGET 2025 SUMMARY," 2024. 10. 2., <https://www.revenue.ie/en/corporate/press-office/budget-information/current-year/budget-summary.pdf>, 검색일자: 2024. 10. 21.

▶ 개인소득세 관련 세액공제를 강화함

- 소득 표준세율 구간을 미혼 개인의 경우 4만 2천유로에서 4만 4천유로로 인상함
- 미혼 개인에 대한 개인 세액공제(personal tax credit)를 1,875유로에서 2천유로로 인상하였으며, 기혼 부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3,750유로에서 4천유로로 인상함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환급 한도를 1,875유로에서 2천유로로 인상함
- 또한 가정 간병인 세액공제(home carer tax credit)를 1,800유로에서 1,950유로로 인상함

▾ (기타) 이 외의 세목에 대해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앤젤 투자자(angel investors)를 위한 자본이득 세금 감면을 시행하며, 앤젤 투자자의 최대 감면 금액을 300만유로에서 1천만유로로 확대함
- ▶ 가스 및 전기 공급품(gas and electricity supplies)에 대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9%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을 추가적으로 6개월 연장하여 2025년 4월 30일까지로 적용함
- ▶ 필라1 Amount B(즉 특정 마케팅 및 유통 계약의 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간소화된 이전가격 접근방식)를 도입하였으며, 관련 조항에 포함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은 필라1 Amount B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규정함¹¹⁰⁾

110) IBFD, “Government Proposes Changes to Pillar Two Global Minimum Tax, Application of Amount B Under Pillar One,” 2024. 10.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11_ie_1.html, 검색일자: 2024. 10. 21.

3 스위스

가 암호화자산 관련 자동정보교환 파트너 국가 결정에 대한 의견수렴 개시

[조세동향 24-08호]

- ▣ 스위스 연방의회(Federal Council)는 2024년 8월 14일, 암호화자산(crypto asset) 관련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이하 AEOI)을 위한 파트너 국가 결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개시함¹¹¹⁾¹¹²⁾
 - ▶ 스위스 연방의회는 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rypto - Asset Reporting Framework, 이하 CARF)에 따른 요건을 채택할 계획인 기존 111개 파트너 관할권 국가와만 정보교환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또한 연방의회는 해당 파트너 관할권 국가가 데이터 보안 및 기밀성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 ▶ 이번 의견수렴은 해당 국가 외에도 향후 암호화자산 관련 AEOI를 진행할 추가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됨
 - ▶ 스위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암호화자산 관련 AEOI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며, 정보교환은 CARF를 기반으로 함
 - ▶ 이번 의견수렴은 2024년 11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나 소득산입규칙(IIR) 2025년부터 적용 및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연기 발표

[조세동향 24-09호]

- ▣ 스위스 연방의회는 2024년 9월,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이하 IIR)을

111) IBFD, "Switzerland - Switzerland Initiates Consultation on Determination of Partner States for AEOI Concerning Crypto Assets," 2024. 8.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8-15_ch_1.html, 검색일자: 2024. 8. 19.

112) 스위스 연방의회, "Federal Council initiates consultation on determination of partner states for the AEOI concerning cryptoassets," 2024. 8. 14., <https://www.admin.ch/gov/en/start/documentation/media-releases.msg-id-102063.html>, 검색일자: 2024. 8. 19.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이하 UTPR)은 당분간 적용을 연기하기로 결정함¹¹³⁾¹¹⁴⁾

- ▶ 스위스 연방의회는 2025년 1월 1일부터 IIR을 시행하기로 결정함
 - IIR 도입을 통해 2024년에 기 도입된 스위스 적격소재국추가세(이하 QDMTT)를 보완하게 될 것임
 - 스위스가 IIR을 발효하지 않으면 타 관할국에서 UTPR을 적용하여 해당 수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됨
- ▶ 또한 스위스 연방의회는 UTPR과 관련된 리스크가 UTPR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잠재 수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당분간 UTPR을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함¹¹⁵⁾
 - 스위스 연방의회는 UTPR은 법적 관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OECD/G20 필라2 시행과 관련한 국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힘
- ▶ 한편 영국, 캐나다, 호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2024년에 IIR과 QDMTT를 모두 도입한 후 2025년부터 UTPR을 적용할 계획임

다 노령유족연금(AHV) 자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금융거래세 제정 반대

[조세동향 24-10호]

- ▣ 스위스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는 2024년 10월 9일, 노령유족연금(Alters- und Hinterlassenenversicherung, AHV)¹¹⁶⁾¹¹⁷⁾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

113) IBFD, “Switzerland - Federal Council Decides to Apply Income Inclusion Rule from 1 January 2025, Delays UTPR Implementation,” 2024. 9.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9-05_ch_1.html, 검색일자: 2024. 9. 6.

114) 스위스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FDF), “IIR international supplementary tax to come into force in 2025,” 2024. 9. 4., <https://www.efd.admin.ch/en/nsb?id=102345>, 검색일자: 2024. 9. 10.

115) Deloitte, “Switzerland to introduce IIR in 2025, but not UTPR,” 2024. 9. 5., <https://blogs.deloitte.ch/tax/2024/09/switzerland-to-introduce-iir-in-2025-but-not-utpr-.html>, 검색일자: 2024. 9. 10.

116) 노령유족연금(AHV)은 스위스 사회 보험의 일종으로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고령,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죽음, 장애 등의 이유로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국가에서 기초적인 생활비를 지급함

117) The Information Centre OASI/DI,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OASI),” <https://www.ahv-iv.ch/en/Social-insurances/Old-age-and-survivorss-insurance-OASI>, 검색일자: 2024. 10. 21.

- ▶ 프랑스 또는 외국의 온라인 플랫폼(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프랑스 내에서 개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음악 및 뮤직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과세함¹²⁴⁾
 -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용자 및 광고주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스트리밍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한 대금이 연 2천만유로¹²⁵⁾를 초과하는 경우 그 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의 34%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2%임
- ▶ 음악 및 뮤직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과세제도는 2024년도 재정법(예산안)에 의해 「조세일반법」에 도입되었으며,¹²⁶⁾ 행정지침은 과세제도의 적용 사례 등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함

나 ◀ 역외 탈세 방조 처벌 규정에 대한 행정지침 발표

[조세동향 24-09호]

- ▣ 프랑스 과세당국은 2024년 8월 28일, 역외 탈세 방조 처벌 규정의 상세한 설명을 담은 행정지침을 발표함¹²⁷⁾¹²⁸⁾
 - ▶ 프랑스는 2023년 12월 「조세기본법」 제1744조에 역외 탈세 방조 처벌 규정을 도입하였고,¹²⁹⁾ 이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행정지침을 발표함

123) Bofip, “AIS - Culture, communication et numérique - Taxes portant sur l’utilisation finale des réseaux de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 Taxe sur les locations en France de phonogrammes et de vidéomusiques destinés à l’usage privé du public dans le cadre d’une mise à disposition à la demande sur les réseaux en ligne,” <https://bofip.impots.gouv.fr/bofip/14282-PGP.html/identifiant=BOI-AIS-CCN-30-60-20240619>, 검색일자: 2024. 7. 9.

124) IBFD, “Tax Authorities Launch Public Consultation on Administrative Guidelines on Tax on On-Demand Music Streaming Services,” 2024. 6. 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20_fr_1.html, 검색일자: 2024. 7. 9.

125) 2024년 7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9억 460만원임

126) 프랑스 「조세일반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Article 1609 sexdecies C

127) IBFD, “Tax Authorities Publish Administrative Doctrine on New Criminal Offence of Facilitating International Tax Fraud,” 2024. 8.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8-30_fr_1.html, 검색일자: 2024. 9. 4.

128) bofip.impots.gouv.fr, “CF - Infractions et sanctions - Infractions et sanctions pénales - Délit de mise à disposition d’instruments de facilitation de la fraude fiscale,” <https://bofip.impots.gouv.fr/bofip/14379-PGP.html/identifiant=BOI-CF-INF-40-40-20240828>, 검색일자: 2024. 9. 4.

129) Légifrance, “LOI n° 2023-1322 du 29 décembre 2023 de finances pour 2024 (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article_jo/JORFARTI000048727466, 검색일자: 2024. 9. 4.

- 규정은 역외의 세무상 허위 거주지 제공, 부당하게 비용을 높이거나 회사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는 계획, 허위 공제 자료 준비, 국외 면세 사기 계획을 제안하는 중개인 및 SNS에서 대가를 받고 소득세 환급을 공개적으로 권고하는 자를 처벌하고자 도입됨
- 과거에는 방조 행위로 인해 다수의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더라도 각 납세자의 행위에 대한 사건별로만 기소할 수 있었음
- ▶ 행정지침은 역외 탈세 방조 처벌 규정의 물적·인적 범위, 절차, 형량 등에 대해 다름
 - 역외 탈세 방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인(개인 및 법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행위는 은행 계좌 개설, 외국 기업과의 계약 체결, 국외의 자연인 또는 법인 개입, 프랑스 외의 가상 또는 가공의 세무상 거주지 제공임
 - 일반 조세 사기 범죄와 달리 검찰은 과세당국의 사전 절차 없이 재량에 따라 기소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6년임
 - 처벌 내용은 3년의 징역형과 25만유로¹³⁰⁾의 벌금형이며,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5년의 징역형 및 50만유로¹³¹⁾의 벌금형에 처하고, 법인의 경우 해산, 불법 행위 금지, 사업장 임시 또는 영구 폐쇄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

다 2025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4-10호]

- ▣ 프랑스 정부는 2024년 10월 10일, 2025년 예산안(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을 발표하고 하원에 제출함¹³²⁾¹³³⁾
 - ▶ 프랑스 내 매출액이 연 10억유로¹³⁴⁾를 초과하는 기업(약 440개)을 대상으로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종료되는 첫 회계연도 동안 특별 부담금(contribution exceptionnelle)을 부과하며, 두 번째 회계연도에는 1/2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함

130) 2024년 9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7,065만원임

131) 2024년 9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4,153만원임

132) IBFD, "Finance Bill for 2025 Proposes Corporate Income Tax Surcharges, Tax on Share Buybacks, Minimum Taxation of High-Income Earners," 2024. 10.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11_fr_1.html, 검색일자: 2024. 10. 14.

133) Assemblée nationa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7/textes/117b0324_projet-loi.pdf, 검색일자: 2024. 10. 14.

134)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4,800억원임

- 연 매출액이 10억유로 이상 30억유로¹³⁵⁾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종료되는 첫 번째 회계연도에는 20.6%,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종료되는 두 번째 회계연도에는 10.3%로 특별 부담금 비율이 설정됨

- 연 매출액이 30억유로 이상인 기업의 경우 위 비율은 각각 41.2%와 20.6%임

- ▶ 연 소득이 25만유로¹³⁶⁾를 초과하는 개인, 50만유로¹³⁷⁾를 초과하는 부부 및 평균세율이 20% 미만인 납세자(약 6만 5천명)에게 최소 2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2024년 과세소득부터 2026년 과세소득까지 적용되는 ‘고소득자 특별 부담금(Contribution Exceptionnelle sur les Hauts Revenus, CEHR)’을 도입함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이하 CARF)를 국내 법으로 입법하고, 기업부가가치분담세(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 CVAE)의 폐지를 연기하며, 조세조약상 거주자 관련 규정을 둠

- ▶ OECD CARF와 관련하여 2023년 개정된 EU 디지털자산 관련 조세정보교환 지침(2023/2226)을 프랑스 국내법으로 입법하여 정보교환의무 및 벌금 등을 규정함

- ▶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업부가가치분담세를 2027년에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2030년으로 연기함¹³⁸⁾

- ▶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 목적상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개인이 프랑스 국내법에 따라 프랑스 거주자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규정을 둠

▣ 예산안에 포함된 위 개인소득세, 법인세 및 기타 신규 조치는 각 명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임

- ▶ 개인소득세의 경우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발생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에 적용됨

- ▶ 법인세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에 적용됨

135)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조 4,539억원임

136)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7,090만원임

137)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4,195만원임

138)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업부가가치분담세의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여 2027년 전면 폐지할 예정이었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3-10호, 2023, p. 9.)

- ▶ 기타 신규 조치의 경우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관련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됨

라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정보교환 관련 법령 발표

[조세동향 24-12호]

- ▣ 프랑스 정부는 2024년 12월 4일, EU 글로벌최저한세 지침(2022/2523)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이 적용되는 기업의 신고의무 및 정보교환의 내용을 담은 법령을 발표함¹³⁹⁾
 - ▶ 법령은 2024년 「재정법」에 의해 도입된 「조세일반법」상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및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신고서의 상세한 내용을 규정함
 - ▶ 법령은 GloBE 규칙 관련 정보를 상대 관할국과 교환하도록 하고, 상대 관할국에 적격 소득산입규칙, 적격 소득산입보완규칙 또는 적격 소재국추가세액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교환되는 정보의 유형을 규정함

5 벨기에

가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중간예납 개시 발표

[조세동향 24-09호]

- ▣ 벨기에 재무부는 2024년 9월 2일, 등록 및 신고 후 번호를 발급받은 다국적기업그룹과 대규모 국내 그룹에 대해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를 원칙적으로 중간예납하도록 함(140)141)

139) IBFD, "Government Publishes Filing Obligations for MNEs Subject to Minimum Taxation Rules," 2024. 12.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2-06_fr_2.html, 검색일자: 2024. 12. 16.

140) IBFD, "Ministry of Finance Announces Start of Advance Payments for Minimum Tax by

- ▶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과 대규모 국내 그룹은 기업은행(BCE)에 등록된 후 XML 파일 형식으로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며, 중간예납 기한은 2024년 12월 20일임¹⁴²⁾
 - 벨기에에 하나의 최종모기업이 설립된 경우는 최종모기업이, 여러 최종모기업이 설립된 경우 대리인으로 지정된 최종모기업이, 하나의 구성기업이 설립된 경우 그 구성기업이, 여러 구성기업이 설립된 경우 대리인으로 지정된 구성기업이 신고해야 함
 - 2024년에 중간예납을 하지 않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2024년 9월 16일까지 기업은행에 등록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 지불 방식은 MyMinfin 계정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하도록 함¹⁴³⁾
 - MyMinfin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 'module VA Pilier 2'를 활용하도록 하고, 계좌이체의 경우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소득산입규칙(IIR)의 납부 계좌를 구별하여 안내함

나 DAC 6 및 DAC 7 관련 개정 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4-12호]

- ▣ 벨기에 정부는 2024년 12월 3일, EU 행정협력지침과 관련하여 DAC 6 및 DAC 7과 관련한 개정사항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¹⁴⁴⁾
 - ▶ DAC 6(2018/822)은 조세 영역 및 국경 간 계약의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지침이며, DAC 7(2021/514)은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의 보고의무에 관한 지침임

Multinationals and Large Domestic Groups,” 2024. 9.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9-02_be_1.html, 검색일자: 2024. 9. 4.

141) Service Public Fédéral FINANCES, “Pillar 2,” <https://finances.belgium.be/fr/E-services/pillar-2>, 검색일자: 2024. 9. 4.

142) Service Public Fédéral FINANCES, “S’enregistrer pour l’inscription auprès de la BCE,” <https://finances.belgium.be/fr/E-services/pillar-2/enregistrer-inscription-bce>, 검색일자: 2024. 9. 4.

143) Service Public Fédéral FINANCES, “Effectuer des versements anticipés,” <https://finances.belgium.be/fr/effectuer-des-versements-anticip%C3%A9s>, 검색일자: 2024. 9. 4.

144) IBFD, “Government Submits Bill Including Changes to DA6 and DAC 7 Penalties, Introducing Data Protection Provisions,” 2024. 12.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2-04_be_1.html, 검색일자: 2024. 12. 16.

- 정보 보고의무가 있는 자에게 납세자의 정보가 수집되어 벨기에 과세당국에 보고된다는 사실을 납세자 본인에게 사전 통지할 의무를 도입함
- ▶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의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등록, 등록 취소, 서류 보관, 정보보호, 제재 규정에 대한 내용이 개정됨
 - 벨기에 또는 다른 회원국에서 등록이 취소된 플랫폼 운영자는 보고의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재등록이 허용됨
 -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① 플랫폼 운영자가 운영 활동 종료를 과세당국에 통보한 경우 ② 플랫폼 운영 활동 종료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③ 플랫폼 운영자가 보고의무가 부과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플랫폼 운영자의 보고의무 불이행으로 과세당국이 직접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임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에 대한 서류를 36개월 동안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폐지함
 - 「소득세법」, 「상속세법」 등에 보고의무가 있는 금융기관, 중개인, 플랫폼 운영자 및 벨기에 유관 당국의 정보보호 관련 조항이 도입될 예정임
 - 국경 간 계약 미신고, 플랫폼 운영자의 정보 보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기존에 의무 불이행 시 자동으로 제재가 부과되던 것을 과세당국의 재량 사항으로 개정함

6

룩셈부르크

가 「글로벌최저한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조세동향 24-07호]

-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24년 6월 12일, OECD 필라2와 관련하여 EU 최저한세지침(2022/2523)을 이행하는 「글로벌최저한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법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임¹⁴⁵⁾

145) IBFD, "Bill on Amendments to Minimum Taxation Law Submitted to Parliament," 2024. 6.

- ▶ 다국적기업그룹 또는 국내 대규모그룹의 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회계연도가 다른 경우,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사용된 방법에 따라 회계기간의 차이를 조정해야 함
- ▶ 기업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납부한 적격소재국 추가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효세율은 적격소재국 추가세액을 과세소득으로 나눈 것임
 - 유로 이외의 통화를 사용하는 구성원이 있는 다국적기업그룹 또는 국내 대규모그룹의 경우이며, 룩셈부르크에서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구성기업은 적격소재국 추가세액 가산금액을 계산할 통화를 선택해야 함¹⁴⁶⁾
 - 구성기업이 적격소재국 추가세액 가산금액을 계산할 때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적격소재국 추가세액 가산금액 계산에 사용된 회계기준에서 지정한 환산 규정을 적용해야 함
 - 2023년 12월 31일부터 구성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해외 진출 초기의 첫 5년 동안 및 구성기업이 속한 국내 대규모그룹에 법이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첫 5년 동안 적격소재국 추가세액은 부과되지 않음
- ▣ 기타 내용으로 이연법인세자산, 전환기사업연도 개시 전 자산 이전, 신고 기한이 있음
 - ▶ 이연법인세자산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전환기 사업연도에 고려되며, 이연법인세자산을 고려하기 위한 사용되는 공식은 ‘이연법인세자산(회계계정)/이전 전환기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임¹⁴⁷⁾
 - ▶ 전환기 사업연도 개시 전, 2021년 11월 30일 이후 자산을 이전하는 구성기업들 사이에서 이전된 자산의 가치를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 다름
 - 자산 이전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취득한 구성기업의 조정된 대상 조세를 감소시키지 않으며,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조정됨
 - ▶ 필라2와 관련한 신고 및 통지의 최종 기한은 2026년 6월 30일임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14_lu_1.html, 검색일자: 2024. 7. 2.

146) 이 선택은 5년간 유효하며, 5년의 기간 종료 시 달리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됨

147) 연도 중에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는 이 공식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세율을 적용해야 함

나 법인세율 인하 관련 세법 개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4-08호]

▣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은 2024년 7월 17일, 법인세율 인하 및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요건 기준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개정안은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임¹⁴⁸⁾

- ▶ 과세소득 구간별로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각 1%p씩 인하함
 - 과세소득이 20만유로¹⁴⁹⁾를 초과하는 경우 세율을 17%에서 16%로 인하함
 - 과세소득이 17만 5천유로 이상 20만유로 이하인 경우, 17만 5천유로를 넘는 소득액(과세소득에서 17만 5천유로를 제외한 금액)에 31%에서 30%로 인하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2만 4,500유로¹⁵⁰⁾를 더하여 세액을 산출함
 - 과세소득이 17만 5천유로¹⁵¹⁾ 미만인 경우 세율을 15%에서 14%로 인하함

〈표 2-II-1〉 룩셈부르크 개정 법인세율

(단위: %)

과세소득	개정 전 세율(2024년)	개정 후 세율(2025년)
20만유로 초과	17	16
17만 5천유로 이상 20만유로 이하	31	30
17만 5천유로 미만	15	14

자료: IBFD, "Finance Minister Presents Bill on CIT Rate Reductions, Group Ratio to Parliament," 2024. 7.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19_lu_1.html, 검색일자: 2024. 8. 14.

148) IBFD, "Finance Minister Presents Bill on CIT Rate Reductions, Group Ratio to Parliament," 2024. 7.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19_lu_1.html, 검색일자: 2024. 8. 14.; Le Gouvernement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Projet de loi portant modification," <https://wdocs-pub.chd.lu/docs/exped/0148/123/297235.pdf>, 검색일자: 2024. 8. 14.

149) 2024년 8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9,909만원임

150) 2024년 8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61만원임

151) 2024년 8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6,170만원임

- ▶ 혼성불일치 규정의 관계기업¹⁵²⁾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의결권, 자산 지분권, 이익 분배권의 직·간접적 지분의 보유 기준을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개정함

다 2025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4-10호]

-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24년 10월 9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함¹⁵³⁾¹⁵⁴⁾
 - ▶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CO2 조세가 인상됨에 따라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소득 구간의 납세자에게 인상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 개인사업자의 연 소득이 936유로¹⁵⁵⁾에서 4만유로¹⁵⁶⁾인 경우 공제액을 168유로¹⁵⁷⁾에서 192유로¹⁵⁸⁾로 인상함
 - 개인사업자의 연 소득이 4만 1유로¹⁵⁹⁾에서 7만 9,999유로¹⁶⁰⁾인 경우 특정 공식(세액 공제액=192-(순이익-40,000)*0.0048)에 따라 산출된 공제액은 192유로에서 0유로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순이익이 연 8만유로¹⁶¹⁾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0임
 - 근로자 및 연금 수급자¹⁶²⁾에 대한 공제액 산출 방식은 위와 동일하며, 총급여액 또는 총연금이 연 8만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0임

152) 관계기업(entreprise associée)은 납세자가 의결권, 자산 지분권, 이익 분배권의 직·간접적 지분을 보유하는 단체(organisme), 납세자의 의결권, 자산 지분권, 이익 분배권의 직·간접적 지분을 보유하는 개인 또는 단체, 납세자와 재무회계상 동일한 연결 그룹에 속하는 단체, 납세자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입(룩셈부르크 「소득세법(Loi modifiée du 4 décembre 1967 concernant l'impôt sur le revenu)」, Art. 168ter (1) 18.)

153) IBFD, "Budget 2025: Government Changes CO2 Tax Credits, Implements Measures to Revive Housing Market," 2024. 10.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11_lu_1.html, 검색일자: 2024. 10. 14.

154) Chambre des Députés, "Projet de loi relative à la programmation financière pluriannuelle pour la période 2024-2028," <https://wdocs-pub.chd.lu/docs/exped/0149/120/299201.pdf>, 검색일자: 2024. 10. 14.

155)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8만 7,292원임

156)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928만 6천원임

157)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만 9,086원임

158)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8만 4,530원임

159)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928만 7,482원임

160)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855만 2,198원임

161)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855만 4,400원임

162) 다만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 수금액이 300만~4만유로인 경우 공제액이 192유로임

- ▶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부동산 등록세·등기세(impôt sur les droits d'enregistrement et de transcription) 과세표준의 일시적 경감 및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도입함
 - 구매자-투자자가 임차인 거주용 건물을 취득하거나, 구매자가 거주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등기세의 과세표준은 50%가 일시적으로 감면되고,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의 공증 서류가 요구됨
 - 구매자-투자자가 임차인 거주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등기세에 대해 임대차 세액공제가 일시적으로 적용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의 공증 서류가 요구됨
 - 주택 세액공제 혜택을 3만유로¹⁶³⁾에서 4만유로로 일시적으로 인상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의 공증 서류가 요구됨
 - 2024년 10월 1일부터 법률 발효일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관할 과세당국에 서면 신청을 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출해야 하며, 세무조사관의 입회하에 조세 특례 조건 수락 신고서에 서명해야 함
- ▶ 소비세와 관련하여 상업적 소비를 위한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 코크스 및 갈탄에 대한 세율은 1천kg당 115유로¹⁶⁴⁾이며, 제조 담배의 경우 최소 세율은 1kg당 296유로¹⁶⁵⁾임
- ▣ 룩셈부르크 국세청은 2024년 11월 6일, 국가별보고(Country-by-Country Reporting, 이하 CbCR)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개정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함¹⁶⁶⁾
 - ▶ CbCR의 세전이익(손실)에 지급인의 조세 관할국에서 배당으로 처리되는 다른 구성 기업으로부터 받은 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보고 회계연도에 적용되도록 함
 - ▶ 이러한 개정은 OECD가 2024년 5월에 발표한 CbCR 이행 지침에 근거함¹⁶⁷⁾

163)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453만 8,900원임

164)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만 472원임

165)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3만 8,781원임

166) IBFD, "Tax Administration Updates CbCR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24. 11. 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1-07_lu_1.html, 검색일자: 2024. 11. 11.

- OECD BEPS Action 13 보고서는 CbCR의 매출액에서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의 배당이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세전이익(손실)에서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의 배당 제외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었음
- 이에 따라 관할국 및 다국적기업그룹은 다양한 접근법을 채택하였고,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및 기타 BEPS 관련 위험 평가, 경제 및 통계 분석에 CbCR 정보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음
-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회원국은 구체적인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지침을 적용할 것이 권장되었으며, 지침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보고 회계연도에 적용될 예정임

라 CbCR 질의응답 개정

[조세동향 24-11호]

- ▣ 룩셈부르크 국세청은 2024년 11월 6일, 국가별보고(Country-by-Country Reporting, 이하 CbCR)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개정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함¹⁶⁸⁾
 - ▶ CbCR의 세전이익(손실)에 지급인의 조세 관할국에서 배당으로 처리되는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보고 회계연도에 적용되도록 함
 - ▶ 이러한 개정은 OECD가 2024년 5월에 발표한 CbCR 이행 지침에 근거함¹⁶⁹⁾
 - OECD BEPS Action 13 보고서는 CbCR의 매출액에서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의 배당이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세전이익(손실)에서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의 배당 제외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었음

167) OECD,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Country-by-Country Reporting BEPS ACTION 13*, 2024, p. 12.

168) IBFD, "Tax Administration Updates CbCR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24. 11. 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1-07_lu_1.html, 검색일자: 2024. 11. 11.

169) OECD,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Country-by-Country Reporting BEPS ACTION 13*, 2024, p. 12.

- 이에 따라 관할국 및 다국적기업그룹은 다양한 접근법을 채택하였고,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및 기타 BEPS 관련 위험 평가, 경제 및 통계 분석에 CbCR 정보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음
-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회원국은 구체적인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지침을 적용할 것이 권장되었으며, 지침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보고 회계연도에 적용될 예정임

7 독일

가 세법개정안 연방정부 승인

[조세동향 24-08호]

- ▣ 독일 연방정부는 2024년 7월 24일 소득세 관련 기준액 조정 등을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초안을 승인함¹⁷⁰⁾
- ▣ 소득세와 관련한 공제액, 면제 기준액 및 한도 금액 등을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함
 - ▶ 기본 수당을 2025년 1만 2,084유로,¹⁷¹⁾ 2026년 1만 2,336유로¹⁷²⁾로 인상할 예정임
 - ▶ 자녀 공제(Kinderfreibetrag)를 2025년 3,336유로,¹⁷³⁾ 2026년 3,414유로¹⁷⁴⁾로 인상함
 - ▶ 아동 1인당 월별 아동구호금(Kindergeld)을 현재 250유로¹⁷⁵⁾에서 2025년 255유로¹⁷⁶⁾로, 2026년에는 259유로¹⁷⁷⁾로 인상함

170) IBFD, "Germany - Government Approves Draft Bill on Further Development of Tax Law and Adjustment of Income Tax Brackets," 2024. 7.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7-29_de_2, 검색일자: 2024. 8. 19.

171)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93만원임

172)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31만원임

173)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95만원임

174)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07만원임

175)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만 1천원임

176)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만 8천원임

- ▶ 연대 할증료의 면제 한도를 단독 과세의 경우 1만 8,130유로¹⁷⁸⁾에서 1만 9,950유로¹⁷⁹⁾(2025년) 및 2만 350유로¹⁸⁰⁾(2026년)로, (부부) 합산 과세의 경우 3만 6,260유로¹⁸¹⁾에서 3만 9,900유로¹⁸²⁾(2025년) 및 4만 700유로¹⁸³⁾(2026년)로 인상함
 - ▶ 적격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의 평가 한도액을 1천만유로¹⁸⁴⁾에서 1200만유로¹⁸⁵⁾로 확대함
 - ▶ 최고 구간(27만 7,826유로¹⁸⁶⁾ 이상)을 제외한 2025/2026 과세연도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함
- ▣ 조세 협정의 통지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동산 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일부 규정을 변경함
- ▶ 국경 간 조세 협정에 대한 통지 의무를 국내 협정까지 확대함
 - ▶ 현재 취득 또는 생산 비용이 250유로¹⁸⁷⁾에서 1천유로¹⁸⁸⁾ 사이로 설정된 동산 고정 자산에 대한 선택적 감가상각의 기준액을 800유로¹⁸⁹⁾에서 5천유로¹⁹⁰⁾ 사이의 자산으로 확대함
 - ▶ 매입 또는 제조된 감가상각비 산출과 관련하여, 동산 자산에 대한 정률법¹⁹¹⁾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5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함

177)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만 4천원임

178)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91만원임

179)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61만원임

180)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20만원임

181)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381만원임

182)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922만원임

183)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040만원임

184)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8억 4,090만원임

185)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8억 908만원임

186)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억 1,232만원임

187)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만 1천원임

188)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8만원임

189)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9만원임

190)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42만원임

191) 고정자산의 기초 장부가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매기의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방법

나 ▶ 전기자동차 인센티브 추가 발표

[조세동향 24-10호]

- ▣ 독일 연방 내각(Bundesregierung)은 세법 개정안(Steuerfortentwicklungsgesetz) 초안에 전기자동차 세제 혜택을 추가 발표함¹⁹²⁾¹⁹³⁾
 - ▶ 2024년 9월 중 독일 정부는 2024년 7월 중 발표했던 세법 개정안에 전기자동차 수요 촉진을 위하여 전기차 구입과 관련한 세제 혜택을 추가하여 발표함
 - ▶ 전기차를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였을 때 구매가의 40%를 첫 해에 감가상각액으로 상각할 수 있으며, 해당 감가상각률은 이후 6년에 걸쳐 구매가격이 전액 상각될 때까지 적용됨
 - ▶ 전기차에 대한 비과세 혜택(Benefit in kind)은 차량 구매액의 25% 금액인 7만유로¹⁹⁴⁾ 미만에서 2024년 7월 이후 취득한 회사 차량의 경우 9만 5천유로¹⁹⁵⁾ 미만까지 확대함
 - 이러한 혜택은 순수 전기차(Electric vehicles) 및 무공해 차량(Zero-emission vehicles)에 한함
 - 또한 해당 세제 혜택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새로 등록된 차량에만 적용됨

다 ▶ 필라2 규칙에 따른 모회사 통지를 위한 공식 양식 발표

[조세동향 24-11호]

- ▣ 독일 재무부는 EU 「최저한세법(Minimum Taxation Law)」 지침(2022/2523)의 국내 이행을 위한 「최저한세법」 제3조에 따른 그룹 모회사 통지(Group Parent Notification) 공식 양식을 발표함¹⁹⁶⁾

192) IBFD, "Government Adds Incentives for E-Vehicles to Draft Tax Bill," 2024. 9.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9-09_de_1.html, 검색일자: 2024. 10. 17.

193) Tax note, "Germany Launches New Tax Incentives for EVs," 2024. 9. 16., p. 1872.

194) 2024년 10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77만원임

195) 2024년 10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085만원임

196) IBFD, "Ministry of Finance Publishes Official Specimen Form for Group Parent Notification

- ▶ 독일의 「최저한세법」 제3조에 따르면, 최저한세 대상이 되는 국내 법인 그룹은 최저한세 그룹을 형성해야 하며 다국적 기업(MNE) 그룹의 최종 모회사(The Ultimate parent entity, UPE)가 독일에 있는 경우 독일 그룹 모회사로 간주함
-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독일 내 모회사가 그룹 모회사로서 역할을 하거나 최종 모회사가 그룹 모회사를 지정하여야 함
- ▶ 그룹 모회사는 그룹 모회사로서의 지위를 연방 중앙 세무청에 전자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세금 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공식 양식을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 전자 제출은 2025년 1월 2일부터 가능할 예정이며, 공식 양식은 독일 연방 세무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라 최저생계비 면제 관련 법안 발효

[조세동향 24-12회]

- ▣ 독일 재무부는 「최저생계비 면제에 관한 법안(Gesetz zur steuerlichen Freistellung des Existenzminimums 2024)」을 2024년 11월 22일 연방의회(Bundesrat)가 승인하여 2024년 12월 5일 관보에 게재 후 12월 6일 발효함¹⁹⁷⁾
 - ▶ 해당 법안은 최저생계비에 관한 제15차 보고서의 결과 이행을 목표로 납세자를 위한 기본 수당과 자녀공제(Kinderfreibetrag)를 인상하며 2024년도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함
 - ▶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기본 수당을 현행 1만 1,604유로¹⁹⁸⁾에서 1만 1,784유로¹⁹⁹⁾로, (2) 자녀공제를 현행 3,192유로²⁰⁰⁾에서 3,306유로²⁰¹⁾로 2024년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for Domestic Pillar Two Rul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22_de_1.html, 2024. 10. 22., 검색일자: 2024. 11. 18.

197) IFBD, “Bill on Exempting Minimum Subsistence Level Enters Into Force,” 2024. 12.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2-10_de_1.html, 검색일자: 2024. 12. 16.

198) 2024년 12월 16일 환율 기준 약 1,751만원

199) 2024년 12월 16일 환율 기준 약 1,778만원

200) 2024년 12월 16일 환율 기준 약 481만원

201) 2024년 12월 16일 환율 기준 약 498만원

8 포르투갈

가 자본 시장 강화 및 경제 활성화 관련 세금 패키지 승인

[조세동향 24-07호]

- ▣ 포르투갈 의회는 2024년 6월 14일에서 7월 4일까지 자본 시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금 패키지에 포함된 관련 조세 조치들을 승인함
- ▣ 2024년 6월 25일 국내 자본 시장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 조치를 통과시킴²⁰²⁾
 - ▶ 장기 보유 증권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치를 통해, 거래가 허용된 증권 또는 기업 형태의 공개 집합 투자로 실현된 자본 이득에 대해 아래와 같은 비율로 개인소득세 소득공제를 적용함

〈표 2-II-2〉 포르투갈 장기 보유 증권 개인소득세 소득공제 비율 및 실효세율

(단위: %)

보유 기간	개인소득세 공제 비율	실효세율(근사치) (기본세율 28%)
2년 이상 5년 미만	10	25
5년 이상 8년 미만	20	22
8년 이상	30	20

자료: IBFD, "Portugal - Parliament Approves Additional Tax Measures to Encourage Investment in Pan-European Retirement Products," 2024. 7. 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7-04_pt_1%23tns_2024-07-04_pt_1, 검색일자: 2024. 7. 12.

- ▶ 범유럽 개인 퇴직 상품 취득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가 도입됨
 - 납세자 또는 그 가족의 영주권을 위한 처분을 통해 획득한 자본 이득으로 범유럽 개인 퇴직 상품 취득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202) IBFD, "Portugal - Parliament Approves Additional Tax Measures to Encourage Investment in Pan-European Retirement Products," 2024. 7. 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6-25_pt_2%23tns_2024-06-25_pt_2, 검색일자: 2024. 7. 12.

- 공제 한도가 있는 범유럽 개인 퇴직 상품에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에 대해 과세 소득에서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또한 6월 28일에는 퇴직 저축 플랜 및 범유럽 개인 퇴직 상품과 관련한 상속 및 기부 금액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승인함²⁰³⁾
- ▶ 증권 투자사 및 대출 펀드에 대한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과세함
 - 증권사 및 펀드의 주식 혹은 지분과 관련한 소득은 해당 소득을 다른 유형의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배당 또는 상황에 관계 없이 10%의 세율로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됨
 - 그러나 포르투갈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개인 또는 법인에 지급되는 소득은 과세가 면제됨
- ▶ 저가 임대 프로그램에 포함된 주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제도에 대해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조세 혜택을 적용함
 - <표 2-II-3>과 같이 저가 임대에 할당된 적격 자산 비중에 따라 일정 수준의 소득을 공제함

<표 2-II-3> 저가 임대에 할당된 적격 자산 비중에 따른 소득공제율

(단위: %)

적격 자산	소득공제율
5% 초과 10% 이하	2.5
10% 초과 15% 이하	5
15% 초과 25% 이하	7.5
25% 초과	10

자료: IBFD, “Portugal - Parliament Approves Additional Tax Measures to Encourage Investment in Pan-European Retirement Products,” 2024. 7. 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7-04_pt_1%23tns_2024-07-04_pt_1, 검색일자: 2024. 7. 12.

- 또한 집합투자제도와 관련하여 25% 초과 투자금액에 적용되는 0.0125%의 인지세 감면세율이 25%를 초과하는 적격 자산에까지 적용됨

203) IBFD, “Portugal - Parliament Approves Additional Tax Measures to Encourage Investment in Pan-European Retirement Products,” 2024. 7. 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7-04_pt_1%23tns_2024-07-04_pt_1, 검색일자: 2024. 7. 12.

- ▣ 2024년 7월 4일 법인세 세율 인하 및 부가가치세 그룹 제도를 신설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금 패키지를 승인함²⁰⁴⁾
 - ▶ 법인세 세율을 2027년까지 15%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 소득의 첫 5만유로²⁰⁵⁾에 대해 3년에 걸쳐 현재 세율 17%에서 12.5%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함
 - ▶ 2025년부터 중점 사업(concentration operation) 영업권 공제 제도의 적용 범위를 지분 취득과 같은 자산 및 영업 분야까지 확대함
 - ▶ 익금불산입(participation exemption) 제도와 관련하여 최저 보유 금액을 최소 2년간 10%에서 5%로 축소하여 접근성을 확대함
 - ▶ 기업 자본화에 기여하는 개인의 자본 이득 및 배당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됨
 - ▶ 중앙 집중식 재무 관리 운영에 대한 인지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회사 간 자금을 공유하여 활용하는 캐시 풀링(cash pooling)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함
 - ▶ 2025년부터 부가가치세 그룹 개념을 도입하여 부가차치세 환급 절차 축소 및 가속화를 통해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함
 - ▶ 부가가치세 현금 회계시스템 매출액 기준이 현행 50만유로²⁰⁶⁾ 미만에서 200만유로²⁰⁷⁾로 확대됨
 - ▶ 기업 R&D에 대한 세제 혜택제도(Sistema de Incentivos Fiscais à I&D Empresarial, 이하 SIFIDE)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관련 사업이 SIFIDE 기금 또는 타국의 R&D 프로그램에 의해 인증되거나 자금이 조달된 경우, SIFIDE 기금 투자의 20%를 혁신 투자 공제에 적용할 수 있음
 -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R&D 지출 요건을 전년도 매출액의 7.5%에서 5%로 인하함
 - SIFIDE 기금의 R&D 기업 투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투자대상기업이 R&D 투자를 실현할 수 있는 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204) IBFD, "Portugal - Government Approves Tax Package to Boost Economy, Proposals Include CIT Rate Reduction, Formation of VAT Groups," 2024. 7.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7-05_pt_1, 검색일자: 2024. 7. 12.

205) 2024년 7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천 460만원임

206) 2024년 7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4,600만원임

207) 2024년 7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억 8,490만원임

- ▶ 2025년부터 회사 자본금 및 의결권의 50% 이상을 취득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 비용의 공제액을 100만유로²⁰⁸⁾에서 200만유로로 인상함

나 원천세 세율 변경안 발표

[조세동향 24-09호]

- ▣ 포르투갈 재무부는 2024년 8월 26일 포르투갈 거주자가 벌어들인 고용 및 연금 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세 세율의 변경안을 발표함²⁰⁹⁾
 - ▶ 2024년 8월 8일 개인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변경에 따라 원천세 세율 또한 함께 변경함
 - 9개의 소득세 구간 중 하위 6개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고 상위 3개 구간의 금액 범위를 하향 조정함
- ▣ 2024년 9월 1일과 1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된 안이 적용됨
 - ▶ 기본적으로는 부양 가족, 장애 여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3~5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안의 경우 미혼이나 부양 가족이 두 명인 기혼, 한 명 이상의 부양 가족이 있는 미혼, 부양 가족이 없는 기혼 등의 경우 원천세 과세표준의 하위 다섯 번째 구간까지 영세율을 적용함²¹⁰⁾
 - 개인소득세 세율 변경 후 9월 1일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원천징수 세액의 상쇄를 목적으로 함
 - ▶ 11월 1일부터는 원안대로 첫 번째 구간까지만 영세율을 적용함

208) 2024년 7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억 9,245만원임

209) Bloomberg Tax, "Portugal Makes 2 Updates to Mainland Withholding Tables," 2024. 8. 30., <https://news.bloombergtax.com/payroll/portugal-makes-2-updates-to-mainland-withholding-tables>, 검색일자: 2024. 9. 10.

210) 상세 세율은 Gabinete da Secretária de Estado e dos Assuntos Fiscais, *Finanças*, pp. 9~19. (<https://aboutbtax.com/bftN>, 검색일자: 2024. 9. 20.) 참조

다 2025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4-11호]

- ▣ 포르투갈 정부는 2024년 10월 10일, 2025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²¹¹⁾
 - ▶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인상과 각종 공제금액 인상 등으로 세부담 완화, 청년 근로자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을 제안함²¹²⁾
 -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전반적으로 약 4.6% 증가함²¹³⁾
 -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식대의 면제 한도를 9.60유로에서 10.20유로로 인상함
 - 고용 및 연금 소득에 대한 연간 공제금액을 4,104.00유로에서 4,349.08유로로 인상함
 -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연간 최저임금을 1만 1,480유로에서 1만 2,180유로로 인상함
 - 현행 28세 이하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를 35세 이하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전문직 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영업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5%에서 23%로 인하함
 - 비거주자가 100시간(50시간에서 최대 100시간)까지 보충 근로로 얻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함
 - ▶ (법인세) 법인세율 인하, 직원 비용공제 인상 등을 제안함²¹⁴⁾
 - 일반세율은 21%에서 20%로 인하, 중소기업의 세율은 17%에서 16%로 인하함
 - 경승용차, 특정 경화물차, 오토바이와 관련된 비용에 부과되는 자율세율은 0.5% 인하함

211) IBFD, “Budget 2025: Portugal Proposes Changes to PIT, CIT, Other Tax Measures,” 2024. 10.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10_pt_1.html, 검색일자: 2024. 11. 18.

212) IBFD, “Budget 2025 in Depth: PIT Proposals Include Increase in Tax Brackets and New Benefits for Young Workers,” 2024. 10.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11_pt_2.html, 검색일자: 2024. 11. 18.

213) 과세표준의 인상으로 일부 납세자의 경우 적용받는 누진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세부담이 완화됨

214) IBFD, “Budget 2025 in Depth: CIT Proposals Include Rate Reductions, Increased Deduction for Employee Expenses,” 2024. 10.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10-11_pt_5%23tns_2024-10-11_pt_5, 검색일자: 2024. 11. 18.

- 근로자, 연금수급자 또는 그 가족을 위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으로 발생한 비용이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간주될 경우 그 가치의 120%를 비용으로 인정함
- ▶ (부가가치세 및 기타 간접세) 비친환경적인 제품 사용에 대한 세금 면제 폐지, 담배의 소비세 인상 등을 제안함²¹⁵⁾
 - 석유 등 비친환경적 제품이 전기, 난방, 도시가스 생산에 사용될 경우 현재 부분적으로 세금 면제를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석유 및 에너지 세금을 부과함
 - 담배와 시가릴로에 대한 소비세를 전반적으로 인상함²¹⁶⁾
 -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는 비료, 토양 개량제 및 기타 제품을 농업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 (재산세) 특정 인지세 면제, 취득세 완화 등을 제안함²¹⁷⁾
 -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대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영구 거주지로만 사용되는 재산,²¹⁸⁾ 주거용으로 간주되는 재산, 10만 4,261.00유로 이하의 취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함

215) IBFD, “Budget 2025 in Depth: Portugal Proposes to Remove Exemption for Certain Non-Environmentally-Friendly Products,” 2024. 10.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10-11_pt_1%23tns_2024-10-11_pt_1, 검색일자: 2024. 11. 18.

216) 담배의 경우 전국 평균 담배세를 참고하고 시가릴로의 경우 각각의 최소 세금을 최소 담배세의 50% 까지 인상함

217) IBFD, “Budget 2025 in Depth: Government Proposes to Relax Stamp Duty, Transfer Tax on Property Acquisitions,” 2024. 10.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10-11_pt_3%23tns_2024-10-11_pt_3, 검색일자: 2024. 11. 18.

218) 35세 이하가 취득한 영구거주지로만 사용되는 부동산은 32만 4,058유로 이하의 취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함

9 스웨덴

가 소규모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맥주에 대한 세금 감면 제안

[조세동향 24-07호]

- ▣ 스웨덴 재무부는 2024년 6월 27일, 소규모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맥주에 대한 주류세 인하를 제안하는 공개 협의용 법안 초안을 발표함²¹⁹⁾
 - ▶ (적용 대상 양조장) 감면 혜택은 법적,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면허 없이 생산하지 않으며 별도의 시설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로 제한됨
 - 협력하는 소규모 양조장은 총생산량이 300만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단일 법인으로 간주됨
 - ▶ (적용 대상 주류) 연간 생산량이 최대 300만리터인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맥주에 적용됨
 - ▶ (감면 세율) 제조업체는 생산량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되며, 가장 작은 그룹은 50%의 세금을 감면받고, 각 그룹별로 10%p씩 감면 세율이 낮게 적용됨

〈표 2-II-4〉 연간 맥주 생산량에 따른 세금 감면율

(단위: %)

연간 생산량	세금 감면율
~ 500,000리터 이하	50
500,000리터 초과 750,000리터 이하	40
750,000리터 초과 1,000,000리터 이하	30
1,000,000리터 초과 2,000,000리터 이하	20
2,000,000리터 초과 3,000,000리터 이하	10
3,000,000리터 초과	0

자료: 스웨덴 재무부 배포자료, "Sänkt alkoholskatt för öl från oberoende småbryggerier," 2024. 6. 27.,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departementsserien-och-promemorior/2024/06/sankt-alkoholskatt-for-ol-fran-oberoende-smabryggerier/>, 검색일자: 2024. 7. 29.

219) IBFD, "Government Proposes to Reduce Tax on Beer Produced by Microbreweries," 2024. 6.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27_se_1.html, 검색일자: 2024. 7. 11.

- ▶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며, 협의에 대한 회신은 2024년 8월 30일 까지 접수되어야 함

나 2025년 예산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4-10호]

☐ 스웨덴 정부는 2024년 9월 19일, 2025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²²⁰⁾

- ▶ 노동소득 및 연금에 대한 세금 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감면 폐지, 출퇴근 비용 공제 한도 상향, 투자 저축 계좌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 도입, 무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공제 축소, 풍력 터빈에 대한 재산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음
 - (노동소득 및 연금에 대한 세금 감면) 주로 저소득 및 중위소득의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 근로소득 세액공제 및 기본 세액공제를 상향하여 세금을 감면할 것을 제안함
 - (근로소득 세액공제 감면 폐지) 현행 근로소득 세액공제, 고령자 대상 근로소득 세액공제 및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증가된 기본 세액공제 등을 폐지할 것을 제안함
 - (출퇴근 비용 공제 한도 상향) 출퇴근 비용에 대한 공제 한도를 기존 1만 1천크로나²²¹⁾에서 1만 3천크로나²²²⁾로 2천크로나²²³⁾ 인상함
 - (투자 저축 계좌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 도입) 투자 저축 계좌, 양로보험 및 개인연금상품(Pan-European Personal Pension, PEPP)의 저축 계약을 보유한 자연인에 대한 비과세 한도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한도는 2025년 1월 1일에는 15만크로나,²²⁴⁾ 2026년 1월 1일에는 30만크로나²²⁵⁾임
 - (무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공제 축소) 무담보 대출의 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 주택, 유가증권, 차량, 보트,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무담보 대출에

220) IBFD, "Government Presents Budget Proposal for 2025 - Detailed Measures," 2024. 9.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9-23_se_1.html, 검색일자: 2024. 10. 16.

221)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4만 1,770원임

222)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0만 3,910원임

223)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만 2,140원임

224)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66만원임

225)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33만원임

대한 이자비용의 공제율을 50%로 제한하고, 2026년부터는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함
 - (풍력 터빈에 대한 재산세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풍력 터빈에 대한 재산세를
 평가액의 0.2%에서 0.5%로 0.3%p 인상할 것을 제안함

▶ 예산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다 글로벌최저한세 개정안 승인

[조세동향 24-11호]

▣ 스웨덴 정부는 2024년 10월 15일, 스웨덴의 「글로벌최저한세법」을 개정하는 법안에 서명함²²⁶⁾

- ▶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 법안은 대기업 그룹의 글로벌 이익에 대해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OECD의 최근 행정지침을 반영함
- ▶ 이 법안은 인위적 조치(konstlade arrangemang)의 처리 방식,²²⁷⁾ 특정 저위험 관할국에서 간소화된 세금 계산의 가능성 등 다양한 과도기적 세이프하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포함함
- ▶ 또한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 관리, 세액공제의 사용, 외화 환산 등에 대한 규칙을 포함함
- ▶ 새로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영향을 받는 그룹은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음

226) Bloomberg Tax, “Swedish Government Approves Global Minimum Tax Amendments,” 2024. 10. 16.,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SS5R8K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OL3RheC9zZWZyY2gvcmVzdWx0cy9hNmFjZjRhMmQyNDNhMjM0NjQ2YTdkOGZlMjYwMmIzNyJdXQ—611afc6d52bb1c422e7b9cd162a5bf227b2aac4a&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criteria_id=a6acf4a2d243a234646a7d8fe2602b37, 검색일자: 2024. 11. 4.

227) 스웨덴은 복잡한 계산횟수를 줄이고 대신 간소화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구적 세이프 하버를 허용하는데, 이때에 간소화된 계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 방식을 다룸

10 노르웨이

가 필라2에 대한 협의 개시

[조세동향 24-07호]

- ▣ 노르웨이 재무부는 2024년 6월 19일, 2025년부터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을 포함하는 노르웨이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Suppleringskatt)과 관련된 변경사항에 대한 공개 협의 법안 초안을 발표함²²⁸⁾²²⁹⁾

 - ▶ 제안된 과세 모델은 15%의 세율을 달성하기 위해 공제를 제한하는 대신 별도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며, 소득산입규칙(IIR)과 적격내국최저한세(QDMTT)의 도입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이하 UTPR)을 포함함
 - ▶ 노르웨이 기업 간 세액 배분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 간 배분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발표함
 - 즉 정규직 종업원 수 및 유형자산의 가액에 따라 세액을 배분함
 - ▶ 모델규정 제9.3절과 관련해서는 해당 관할국이 노르웨이에 위치해 있는 경우 선택규정을 포함하지만, 선택규정(모델규정 제9.3.5조)에 대한 예외는 포함하지 않음
 - 모델규정 제9.3절은 국제활동 초기 단계에 있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UTPR 적용 제외에 대해 다룸
 - ▶ 또한 재무부는 노르웨이 국외에서 납부한 최저한세의 처리에 관한 일반세법 개정도 제안함
 -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칙에 국외 최저한세액은 노르웨이 법인세에 대해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제안됨
 - 제안된 변경 사항은 또한 기업 소득을 결정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내 규칙에 새로운 예외를 도입하여 국외 최저한세액을 공제

228) IBFD, “Norway Opens Consultation on Undertaxed Profits Rule (Pillar Two),” 2024. 6.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19_no_1.html. 검색일자: 2024. 7. 11.

229) 노르웨이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을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법률 No. 2024-01-12-1을 관보에 게재한 바 있음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 ▶ 의견은 2024년 9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TPR은 2025년 1월 1일부터이며, 일반세법의 변경 사항은 2024년 1월 1일(소급 적용)부터 발효될 예정임

11 덴마크

가 필라2에 대한 협의 개시

[조세동향 24-07호]

- ▣ 덴마크 의회는 2024년 5월 30일,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 등 덴마크 시청각 콘텐츠를 장려하기 위해 ‘문화 기여금(kulturbidrag)’을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킴²³⁰⁾
 - ▶ (납세의무자) 문화 기여금은 덴마크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덴마크 및 EU 기반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되며, 연간 매출이 1,500만덴마크크로네²³¹⁾ 미만이거나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인 업체는 기여금 납부 의무가 면제됨
 - ▶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해당 미술품 등에는 핀란드의 마진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 ▶ (적용 세율) 적용 세율은 2%이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가 세율이 적용됨
 - 덴마크 소재가 75% 이상 포함된 제작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덴마크 콘텐츠에 수익의 5% 미만을 투자하는 기업에는 3%의 추가 세율이 적용됨
 - ▶ (조세행정 주무기관) 징수 기관은 덴마크 문화청임
 - ▶ (기타) 덴마크 정부는 이 문화 기여금이 OECD 필라2 협약과 디지털 서비스세(DST)에 관한 ‘정지’ 및 ‘롤백’ 의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문화 기여금을 적절히 조정하는 데에도 합의함

230) IBFD, “Parliament Introduces Cultural Contribution on Streaming Services Retroactively from 2024,” 2024. 7.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01_dk_1.html, 검색일자: 2024. 7. 11.

231) 2024년 7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억 1,035만원임

- ▶ (적용 기간) 이 법안은 이전에 채택된 2023년 12월 19일의 법안을 대체하는 것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됨
 - 유럽위원회에 통보한 후 정지기간에 관한 절차적 및 행정적 오류로 인해 철회된 바 있음

나 2025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4-09호]

- ▣ 덴마크 정부는 2024년 8월 30일, 2025년 예산안 초안을 발표함²³²⁾
 - ▶ 주요 세금 조치로는 주택 개량 공제(håndværkerfradrag) 재도입, 청년 노동시장 기여금 폐지 등이 포함됨
 - 주택을 개량할 때 드는 청구서상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주택 개량 공제를 재도입할 예정이며, 청소 등의 서비스에 대한 공제도 확대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서비스 및 건설 부문의 노동수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18세 미만의 개인에 대한 노동시장 기여금을 폐지할 계획이며, 청년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시간제 취업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구체적 개정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세부사항은 2024년 9월 10일 의회의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쳐 2024년 12월 말에 채택될 예정임

다 국내 항공 여객 운송에 0%의 부가가치세율 적용에 대한 공개 협의 개시

[조세동향 24-09호]

- ▣ 덴마크 정부는 2024년 8월 27일, 국내 항공 여객 운송에 대한 0%의 부가가치세율 적용을 위한 입법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함²³³⁾

232) IBFD, "Denmark 2025 Budget: Government to Reintroduce Home Improvement Deductions, Eliminate Labour Market Contribution for Youth," 2024. 9.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9-02_dk_1.html, 검색일자: 2024. 9. 4.

233) IBFD, "Government Opens Public Consultation on Zero VAT Rate for Domestic Air Travel," 2024. 9.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9-03_dk_1.html, 검색 일자: 2024. 9. 4.

- ▶ 법안은 국내선 또는 국제선 여부에 관계 없이 덴마크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사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현행 법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는 국내선 항공편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액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항공사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음
- ▶ 이 조치는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9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라 2024/25년 정부 입법프로그램 발표

[조세동향 24-10호]

- ㉓ 덴마크 정부는 2024년 10월 1일, 2024/25년 의회의 입법 프로그램을 발표함²³⁴⁾
 - ▶ 조세분야에는 20개의 입법 제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주주 및 법인 과세와 관련된 것으로, OECD의 최저한세 모델규정에 부합하도록 최저한세법 및 이전가격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OECD의 최저한세 모델규정에 관한 행정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저한세법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이행함
 - 덴마크가 OECD의 Amount B 보고서에서 따른 정치적 공약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전가격 규칙을 조정함
 - 그룹 이전가격 산출 근거에 대한 문서화 요건을 완화하고, 혼성기업과 관련된 투자자에 관해서는 OECD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역혼성기업에 대한 법인세법 조항을 조정함
 - ▶ 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노하우 및 특허권의 즉시 감가상각 폐지, 연구 개발 비용에 대한 공제액 인상, 비과세 포트폴리오 주식에 대한 배당금 과세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함

234) IBFD, “Government’s Legislative Programme for 2024/25 Includes Changes to Minimum Taxation, Transfer Pricing Provisions to Align With OECD’s Rules” 2024. 10.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02_dk_1.html, 검색일자: 2024. 10. 16.

- ▶ 입법 프로그램에 발표된 제안 중 일부는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정부 플랫폼 ‘덴마크에 대한 책임’의 후속 조치이며,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진행상황은 추후 발표될 예정임

12 핀란드

가 2025년 예산안 초안 발표

[조세동향 24-08호]

- ▣ 핀란드 재무부는 2024년 8월 9일, 2025년 예산안 초안을 발표함²³⁵⁾
 - ▶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육비 공제 혜택 폐지,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인상 등의 개정 방향을 발표함
 - ▶ 구체적 개정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세부사항은 정부의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쳐 2024년 9월 중에 공표될 예정임
- ▣ (법인세)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육비 공제 혜택을 폐지할 예정임
 - ▶ 기존에는 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교육으로 인해 발생한 근무시간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과세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었음²³⁶⁾
 - 최대 3일을 한도로 직원의 평균 일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 (개인소득세) 소득세 세율구간을 물가상승율에 연동하여 상향 조정하고, 최고 소득 등급에 적용되는 세율을 인상할 예정임

235) IBFD, “Ministry of Finance Publishes Its Draft Budget Proposal for 2025,” 2024. 8.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8-09_fi_1.html, 검색일자: 2024. 8. 19.

236) IBFD, “Finland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Corporate Income Tax (Last Reviewed: 5 August 202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a_fi_s_1.3.3.%23gtha_fi_s_1.3.3., 검색일자: 2024. 8. 21.

- ▶ 세율 적용 표는 통상적으로 매년 갱신되며, 2025년도에는 연간 2만 1,200유로²³⁷⁾ 이상의 소득에 대해 6구간으로 나누어 12.64~4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 ▶ 최고 소득 등급은 연간 15만유로²³⁸⁾ 이상의 소득을 뜻하며, 적용세율을 기존 44%에서 44.5%로 0.5%p 인상할 예정임
- ▣ (부가가치세) 표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고, 특정 상품에 적용되는 감면 부가가치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 계획을 발표함
- ▶ 2024년 9월 1일부터 표준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24%에서 25.5%로 1.5%p 인상함
 - ▶ 2025년 1월 1일부터 특정 상품에 적용되는 감면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10%에서 14%로 4%p 상향함
 - ▶ 2025년 6월 1일부터 과자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기존의 감면 세율인 10%가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함
 - ▶ 생리대, 어린이용 기저귀 등에는 표준 부가가치세율이 아닌 14%의 감면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예정임
 -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혜택을 폐지하고, 기타 혜택 적용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 1만 5천유로²³⁹⁾ 이상에서 2만유로²⁴⁰⁾ 이상으로 5천유로²⁴¹⁾ 상향 조정함
- ▣ (소비세) 알코올 음료 및 담배소비세를 인상할 예정임
- ▶ 2024년 11월 1일부터 청량음료 및 알코올 음료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할 예정임
 - ▶ 2025년 7월 1일부터 담배소비세가 인상됨

237) 2024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157만원임

238) 2024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2,339만원임

239) 2024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34만원임

240) 2024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79만원임

241) 2024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45만원임

나 TV세 및 공영방송서비스에 대한 VAT 개정안 공개 협의 개시

[조세동향 24-10호]

- ▣ 핀란드 재무부는 2024년 9월 4일, TV세²⁴²⁾ 및 공영 방송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개정하는 제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개시함²⁴³⁾
 - ▶ 이 조치는 핀란드 공영방송(Yleisradio, 이하 YLE)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에 맞춰 세수를 늘릴 것을 권고하는 국회 위원회 보고서에 근거한 것임
 - ▶ 개인의 경우 TV세가 부과되는 소득 기준이 기존 1만 4천유로²⁴⁴⁾에서 1만 5,150유로²⁴⁵⁾로 1,150유로²⁴⁶⁾ 인상되고, 부과세액 최대 한도는 기존 163유로²⁴⁷⁾에서 160유로²⁴⁸⁾로 3유로²⁴⁹⁾ 인하될 예정임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 YLE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10%가 아닌 14%의 감면세율을 적용받게 됨
 - ▶ 이해관계자는 2024년 10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다 2025년 예산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4-10호]

- ▣ 핀란드 재무부는 2024년 9월 23일, 2025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²⁵⁰⁾

242) 핀란드는 2013년부터 TV 수신료에 더하여 YLE세의 명칭으로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일정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및 기업에 부과됨

243) IBFD, "Finance Ministry Opens Public Consultation on TV Tax, VAT on Broadcasting Services," 2024. 10.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08_fi_1.html, 검색일자: 2024. 10. 16.

244)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82만원임

245)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53만원임

246)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1만원임

247)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만원 2,387원임

248)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만원 7,926원임

249)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461원임

250) IBFD, "Government Presents 2025 Budget to Parliament," 2024. 9.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9-24_fi_1.html, 검색일자: 2024. 10. 16.

- ▶ 개인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의 1~3번째 구간의 기준액을 3.28~3.4% 인상하고, 세율은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나 5~6구간의 세율은 소폭 조정함
 - 소득구간별로 기본소득세가 부과되고, 최저소득기준 초과액에 대해서는 구간별 누진세율이 추가 적용됨

〈표 2-II-5〉 핀란드 2025년 소득세 소득기준 및 누진세율 변화

(단위: 프랑, %)

소득구간	종류	2024년	2025년	변화
1	과세소득	0~20,500	0~21,200	3.4%
	세율	12.64%	12.64%	-
2	소득기준	20,500~30,500	21,200~31,500	3.28%
	세율	19%	19%	-
3	소득기준	30,500~50,400	31,500~52,100	3.37%
	세율	30.25%	30.25%	-
4	소득기준	50,400~88,200	52,100~88,200	-
	세율	34%	34%	-
5	소득기준	88,200~150,000	88,200~150,000	-
	세율	42%	41.75%	-0.25%p
6	소득기준	150,000 초과	150,000 초과	-
	세율	44%	44.25%	+0.25%p

자료: IBFD, "Finland~Individual Taxation sec. 1.9. Rates," Country Tax Guides IBFD(accessed 16 October 202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b_fi_s_1.3.2.%23gthb_fi_s_1.9., 검색일자: 2024. 10. 16.

- ▶ 근로소득공제(työtulovähennys) 최대금액을 기존 2,140유로²⁵¹⁾에서 3,225유로²⁵²⁾로 1,085유로²⁵³⁾ 인상함
 - 다만 순 근로소득이 약 12만 5,200유로²⁵⁴⁾ 이상인 경우 해당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251)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18만 1,623원임

252)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79만 4,736원임

253)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1만 3,113원임

254)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8,611만원임

라 DAC 8 이행에 관한 공개 협의 개시

[조세동향 24-12호]

- ▣ 핀란드 국세청은 2024년 11월 18일, 2011년 행정협력지침(2023/2226)의 개정 지침인 DAC 8²⁵⁵⁾의 이행에 관한 공개 협의를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²⁵⁶⁾

 - ▶ 이 법안은 특히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DAC 8을 이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조세분야에서 DAC 8에 부합하는 기타 개정안을 시행할 것을 제안함
 - ▶ 해당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됨
 - DAC 8 및 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규정된 암호화자산 거래와 관련된 보고 의무 및 실사 요건의 이행
 - DAC 8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교환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확대
 - ▶ DAC 8에 따라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암호화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후 해당 정보를 EU 회원국 간에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 ▶ 또한 DAC 8은 EU 회원국 간의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전자화폐에 대한 보고 및 데이터 교환으로 확대하는 등 정보교환 및 행정협력에 관한 기존 조항의 일부를 수정함
 - ▶ 제안된 조치는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공개 협의 기간은 2024년 12월 13일에 종료됨

255) DAC 8은 암호화폐 거래 정보교환 및 보고에 관한 조세분야 행정협력지침의 개정지침 이행에 관한 법안임

256) IBFD, “Ministry of Taxation Opens Public Consultation on Implementation of DAC 8,” 2024. 11. 2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1-26_dk_1.html, 검색일자: 2024. 12. 13.

13 네덜란드

가 전력 생산자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도입 법안 승인

[조세동향 24-08호]

- ▣ 네덜란드 의회는 2024년 7월 9일, 최근 전력 생산자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도입하는 법안(Tijdelijke wet inframarginale elektriciteitsheffing)을 승인함²⁵⁷⁾
 - ▶ 법안 도입 배경은 2022년 9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긴급 시장 개입 규정 Regulation on an Emergency Intervention to Address High Energy Prices(2022/1854)에 따라,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를 이행하기 위함임
 - ▶ 제안된 법안은 메가와트시(MWh)²⁵⁸⁾당 130유로²⁵⁹⁾를 초과하여 판매되는 전기에 대한 전기 생산업체의 초과이익에 대해 9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임
 - ▶ 해당 부담금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적격 생산업체가 얻은 초과이익에 적용됨

나 뮤추얼펀드에 대한 조세 중립적 전환 승인 법령 개정

[조세동향 24-09호]

- ▣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2024년 9월 2일, 2025년부터 뮤추얼펀드(fonds voor gemene rekening, FGR)가 잠재적·가정 이익 및 준비금에 과세하지 않고 조세 중립적인 방식으로 법인세 납세의무를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는 법령을 개정(update)함²⁶⁰⁾

257) IBFD, "Netherlands Enacts Temporary Contribution on Surplus Revenues of Electricity Producers," 2024. 7.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25_nl_1.html, 검색일자: 2024. 8. 19.

258) 메가와트시(MWh): 배터리 용량을 1메가와트(MW)의 전력을 1시간 동안 사용하거나 생산한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259) 2024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만 3,480원임

260) IBFD, "GNetherlands Updates Decree Approving Tax Neutral Conversions for Mutual Funds," 2024. 9.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9-03_nl_1.html, 검색일자: 2024. 9. 4.

- ▶ 개정(update) 법령에 따르면, 주식 합병의 결과로 인수회사가 FGR 또는 비과세 투자기관(vrijgestelde beleggingsinstelling, 이하 VBI)의 유일한 수혜기업인 경우, 일반적으로 FGR 또는 VBI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언급함
- ▶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법인세 납세의무 종료를 의미하므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유예 가능성 없이 기업에 대한 최종 과세가 이루어지게 됨
- ▶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개정(update) 법령을 통해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러한 주식 합병도 조세 중립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승인함
- ▶ 개정(update) 법령은 2024년 9월 3일부터 적용됨

다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24-10호]

-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4년 9월 17일, 2025년 세법개정안(2025 Tax Plan)을 발표함²⁶¹⁾
 -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abuse Rule, 이하 GAAR) 시행, 보다 완화된 EBITDA 기반 이자공제한도 등의 개정 방향을 발표함
 - ▶ 동 조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 (법인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GAAR 시행 등이 있음
 - ▶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 ATAD 2016/1164)에 따라 GAAR을 시행함
 - ▶ 2025년부터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따른 의제바당에 대한 원천징수가 계획은 시행되지 않을 예정임
 - ▶ EBITDA 기준 이자공제한도를 완화하여 이자비용의 최대 25%까지 공제 가능(현재 20%)하게 됨
 - ▶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이익공제 혜택이 축소되어 2024년 13.31%에서 2025년 12.7%로 축소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수익에서 12.7%의 중소기업 이익 면세액을

261) IBFD, "2025 Tax Plan Highlights ATAD GAAR, Relaxed Interest Deductions and More Attractive Expat Regime," 2024. 9.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9-17_nl_2.html, 검색일자: 2024. 10. 21.

공제할 수 있게 됨

- ▾ (개인소득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Box 1 세율 인하 및 Box 3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있음
 - ▶ Box 1²⁶²⁾에 적용되는 첫 번째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36.93%에서 35.82%로 인하고,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의 적용 대상 금액을 기존 7만 5,624유로에서 7만 6,817유로로 인상함
 - ▶ Box 2 최고세율을 33%에서 31%로 인하하고, Box 3에 적용되는 세율을 36%로 유지함

- ▾ (기타) 이 외의 세목에 대해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숙박(호텔) 및 특정 문화 상품 및 서비스(미디어, 서적, 스포츠 등)에 대한 부가가치 세율을 현재 9%에서 표준세율인 21%로 인상함
 - ▶ 주거용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양도세율을 10.4%에서 8%로 인하함
 - ▶ 도박 세율을 2024년 30.5%에서 2025년 34.2%, 2026년 37.8%로 인상함

라 필라1 Amount B 채택에 따른 세금 영향 발표

[조세동향 24-12호]

-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4년 11월 27일, 필라1에 따른 Amount B 도입의 세금 영향에 대한 결정문(decision)을 발표하고 2024년 12월 4일 관보 제38369호(Official Gazette No. 38369)에 게재함²⁶³⁾
 - ▶ 네덜란드는 ‘적용 대상 관할국(covered jurisdictions)’에 의해 적용된 범위 내에서 Amount B의 적용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음을 확인함

262) 네덜란드의 소득세는 세 가지 범주(Box)로 구분되며, 각각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름. Box 1은 근로, 사업, 주택 소유로 인한 소득을 다루며, Box 2는 5% 이상의 회사 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며, Box 3는 저축 및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다룸

263) IBFD, “Netherlands: OECD, State Secretary for Finance Clarifies Tax Implications for Adopting Amount B,” 2024. 12.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2-05_nl_1.html, 검색일자: 2024. 12. 11.

- ▶ 네덜란드는 자국 법률 및 규정에 Amount B를 도입하고, 네덜란드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관할권의 Amount B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함을 설명함
 - 네덜란드 과세당국은 대응조정을 통해 해당 관할국에서 Amount B를 적절하게 적용한 결과 네덜란드의 납세자와의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이중과세를 제거할 것임
 - 네덜란드 과세당국은 적용 대상 관할국에서 Amount B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절차(MAP)에 대한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 이중과세를 제거할 것임
 - 네덜란드 과세당국은 Amount B가 올바르게 적용된 경우 해당 관할국에서의 정상적인 마케팅 및 유통 활동에 대한 보수를 조정하지 아니할 것임
- ▶ 상기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14 그리스

가 2024년 8월 한 달 전기 생산자에 대한 특별 징수 제정

[조세동향 24-08호]

- ▣ 그리스 정부는 2024년 8월 한 달간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전기 생산자에게 에너지 전환 기금의 목적으로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 특별 징수 법률을 제정함²⁶⁴⁾
 - ▶ 해당 특별 징수(Special Levy)는 천연가스의 고열량 메가와트시(MWh)당 10EUR²⁶⁵⁾에 해당하며, 각 전기 생산자가 전기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천연가스 양에 따라 계산함
 - ▶ 해당 세수를 통해 2024년 8월 가정용 전기 요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임
 - 이는 환경에너지부 장관과 국가 경제 재정부 장관의 공동 결정에 따라 세금 부과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

264) IBFD, "Government Enacts Special Levy on Electricity Producers for Month of August 2024," 2024. 8. 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8-07_gr_2.html, 검색일자:2024년 8월 19일.

265) 2024년 8월 19일 환율 기준 1만 4,700원임

15 오스트리아

가 2025년 세금 감면 법안 승인

[조세동향 24-11회]

▣ 오스트리아 연방의회(Bundesrat)는 2024년 10월 3일,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5년부터 세금을 감면하는 법안(Progressionsabgeltungsgesetz 2025)을 승인하고, 2024년 10월 9일, 관보에 법안의 내용을 게재함²⁶⁶⁾

▶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²⁶⁷⁾

- 최상위 구간을 제외하고 개인소득세 소득 구간 확장
-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또는 외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아동 1명당 60유로²⁶⁸⁾의 세액공제
- 판매세와 소득세 관련 영세사업 수익 기준을 4만 2천유로²⁶⁹⁾에서 5만 5천유로²⁷⁰⁾로 상향
-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를 대상으로 km당 0.5유로²⁷¹⁾의 세액공제
- 국내 출장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증액

266) IBFD, “Bill on Inflation Relief for 2025 Enters Into Force,” 2024. 10.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17_at_1.html, 검색일자: 2024. 11. 13

267) Bloomberg Tax, “Austria Gazettes Law on Tax Relief Measures for 2025,” 2024. 10. 31.,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EIOBSF4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OL3RheC9zZWZyY2gvcmluZDw0cy84MWMzNjFlNjNjMjQwM2RiOGYyYTNlNmQ5NzY0M2QwZCJdXQ-1fa3ebba9425ee6f74ce6cfa7899704bb933caa8&criteria_id=81c361e63c2403db8f2a3e6d97643d0d&search32=0Vtva-TWqLLwb4l7EqTCQ%3D%3DwnHiUx_Ae95LIEYDkfDoKJO9ib3Hj5tvul0r3XYzG4nsw_ANFRkXshdLqedc0l09dgkrLv_kxAd-QNPAhwHw%3D%3Dm, 검색일자: 2024. 11. 13.

268) 2024년 11월 19일 환율 기준 약 8만 8,477원임

269) 2024년 11월 18일 환율 기준 약 6,191만원임

270) 2024년 11월 18일 환율 기준 약 8,107만원임

271) 2024년 11월 18일 환율 기준 약 737원임

나 필라2 CbCR 세이프하버 규정 관보 게재

[조세동향 24-12호]

- ▣ 오스트리아 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는 2024년 12월 5일, 필라2 CbCR 세이프하버²⁷²⁾ 규정(Verordnung des Bundesministers für Finanzen zum temporären CbCR-Safe-Harbour)을 관보에 게재함²⁷³⁾²⁷⁴⁾

 - ▶ 해당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에 발효한 오스트리아의 최저한세법(MinBestG)²⁷⁵⁾으로 인한 행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²⁷⁶⁾
 - ▶ 해당 규정은 2023년 12월 15일에 발행된 OECD 행정지침(OECD Administrative Guidelines)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적격재무제표(qualified financial statements)와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s)에 대한 요건을 나열함²⁷⁷⁾²⁷⁸⁾
 - ▶ 해당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의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됨²⁷⁹⁾

272) 필라2 도입 초기에 다국적 기업과 행정청의 부담을 줄이고자 필라2 요건을 일시적으로 간소화시켜 적용하는 것을 뜻함

273) Bundesministerium Finanzen, <https://www.bmf.gv.at/rechtsnews/stuern-rechtsnews/neue-verordnungen.html>, 검색일자: 2024. 12. 16.

274) Rechtsinformationssystem Des Bundes, "BGBl. II Nr. 357/2024," <https://www.ris.bka.gv.at/eli/bgbl/II/2024/357/20241205>, 검색일자: 2024. 12. 16.

275) 오스트리아의 「최저한세법」은 이전 4개의 회계연도 중 직전 2개의 회계연도에서 매출액이 최소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적용됨

276) Regfollower, "Austria: Pillar Two CbCR Safe Harbour Regulation enters into force," 2024. 12. 13., <https://regfollower.com/austria-pillar-two-cbcr-safe-harbour-regulation-enters-into-force/>, 검색일자: 2024. 12. 16.

277) *Id.*

278) IBFD, "Pillar Two CbCR Safe Harbour Regulation Enters into Force," 2024. 12.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2-09_at_1.html, 검색일자: 2024. 12. 16.

279) *Id.*

16 스페인

가 DAC8 시행을 위한 초안 발표

[조세동향 24-10호]

- ▣ 스페인은 2024년 9월 17일, 2011년 행정협력지침에 대한 개정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DAC8 초안을 발표함²⁸⁰⁾²⁸¹⁾

 - ▶ 암호자산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사, 기록보관, 정보보고 의무를 부여함
 - 실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적용할 벌금 제도를 도입함
 - 일반적인 벌금은 법인당 200유로임
 - 사용자와 통제 법인이 공급자에게 부정확하거나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반으로 보아 3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 실사, 기록보관, 정보보고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는 개발될 예정임
 - ▶ 암호화폐 자산과 지불 기관, 전자화폐 사업체가 보유한 자금을 압수 대상 자산으로 인정함
 - ▶ 현재 일반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사용되는 ‘virtual currency’ 용어를 ‘crypto-asset’ 용어로 대체함
 - ▶ (소멸시효에 따른 납세 책임) 책임 있는 당사자(responsible party)의 납세 책임에 대해 두 가지 행정 권한인 ① 신고 권한과 ② 기신고된 금액에 대한 납부 요구 권한을 인정함
 - ▶ 이러한 행정 처분이 연대 책임 당사자와 관련된 것인지 또는 보조 책임 당사자와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소멸시효를 도입함
 - ▶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는 2024년 10월 9일까지 진행됨

280) IBFD, “Council of Ministers Approves Draft Bill to Implement DAC8 Rules,” 2024. 9.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9-19_es_1.html, 검색일자: 2024. 10. 15.

281) IBFD, “MoF Opens Public Consultation on Draft Bill to Implement DAC8,” 2024. 9.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9-30_es_1.html, 검색일자: 2024. 10. 15.

-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고 ‘소멸시효에 따른 납세 책임’은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임

나 ◀ 황재세 연장 등 세법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24-12호]

- ▣ 스페인 정부는 2024년 10월 30일, 황재세 연장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함²⁸²⁾
 - ▶ (황재세) 수수료 및 이자의 이익에 대해 1~6%(현재 4.8%) 세율로 부과함
 - 수익성이 감소되는 경우 추가 특별공제를 적용함
 - 개정을 통해 스페인 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황재세를 외국법인을 포함한 모든 은행에 적용할 예정임
 - ▶ (법인세) 통합그룹이 공제할 수 있는 자회사 결손금의 한도를 50%로 제한하는 규정을 연장함
 - ▶ (개인소득세) 연간 30만유로²⁸³⁾를 초과하는 저축 소득에 대한 세율을 28%에서 29%로 인상함
 - ▶ (연료세) 디젤에 적용되는 연료세를 리터당 0.307유로²⁸⁴⁾에서 0.40069유로²⁸⁵⁾로 인상함
 - 디젤 연료에 대한 세금을 가솔린 연료와 동일하게 조정할 계획임
 - ▶ (담배세) 전자담배와 베이프용 액체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함

282) IBFD, “Government Proposes Tax Package, Extends Windfall Tax on Banks, Institutions, Abandons Extension on Energy Companies,” 2024. 11.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1-01_es_1.html, 검색일자: 2024. 12. 10.

283) 2024년 12월 26일 환율 기준 약 4억 5,523만 8,000원임

284) 2024년 12월 26일 환율 기준 약 465.86원임

285) 2024년 12월 26일 환율 기준 약 608.03원임

17 이탈리아

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규칙 발표

[조세동향 24-07호]

- ▣ 이탈리아 재무부는 2024년 7월 3일, 제209/2023호에 의해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규칙을 발표함²⁸⁶⁾²⁸⁷⁾
 - ▶ 납세대상자는 이탈리아에 위치한 다국적기업과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회계연도의 연간 수익이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대규모 국내 그룹에 속한 구성 법인임
 -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을 경우 총 국내 초과이익에서 해당 법인의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부과함
 - ▶ 적격소재국 추가세(domestic minimum top-up tax, DMTT)는 IIR(income inclusion rule) 및 UTPR(undertaxed profits rule)과 동일한 규칙에 따라 계산됨
 - DMTT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함
 - 이탈리아에 위치한 모든 구성 법인은 DMTT 납부 기한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짐

나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지침 발표

[조세동향 24-08호]

- ▣ 이탈리아는 2024년 7월 24일,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세부 사항을 발표함²⁸⁸⁾²⁸⁹⁾

286)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Global minimum tax: disposizioni attuative riguardanti l'imposta minima nazionale," 2024. 7. 3., <https://www.finanze.gov.it/inevidenza/Global-minimum-tax-disposizioni-attuative-riguardanti-limposta-minima-nazionale/>, 검색일자: 2024. 7. 10.

287) IBFD, "Ministry of Finance Issues Decree on Domestic Minimum Top-Up Tax," 2024. 7.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05_it_1.html, 검색일자: 2024. 7. 10.

288) 이탈리아 관보(GAZZETTA UFFICIALE), "DECRETO 24 luglio 2024," 2024. 7. 24., <https://www.gazzettaufficiale.it/eli/id/2024/08/06/24A04160/SG>, 검색일자: 2024. 8. 13.

289) IBFD, "Government Implements Tax Credit for Investments Achieving Energy Savings,"

- ▣ 2024년과 2025년에 이탈리아에 위치한 생산 시설의 유·무형 자산에 투자하는 거주기업과 비거주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생산 시설의 경우 3%, 생산 공정의 경우 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유·무형 자산에는 에너지 대시보드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며 조건에 따라 생산 공정의 디지털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술개발 교육비용도 포함됨
 - ▶ 투자세액공제율은 에너지 절감이 클수록 증가함

〈표 2-II-6〉 에너지 절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단위: %)

투자에 대한 취득비용 \ 에너지 절감율	시설의 3%/공정의 5%	시설의 6%/공정의 10%	시설의 10%/공정의 15%
250만유로 이하	35%	40%	45%
250만유로~1,000만유로	15%	20%	25%
1,000만유로~5,000만유로	5%	10%	15%

자료: IBFD, "Government Implements Tax Credit for Investments Achieving Energy Savings," 2024. 8.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8-12_it_2.html, 검색일자: 2024. 10. 16. 참고로 저자 작성

다 2024년도 일부 세법개정안 승인

[조세동향 24-10호]

- ▣ 이탈리아 의회는 거주 이전 고액 자산가 대상 대체 세금 인상, 일부 부가가치세 감면 추가 등을 포함한 2024년도 세법개정안을 일부 승인하여 2024년 10월 9일부로 시행함²⁹⁰⁾

2024. 8.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8-12_it_2.html, 검색일자: 2024. 8. 13.

290) IBFD, "Parliament Enacts Increase in Lump-Sum Tax for New High-Net-Worth Residents, Amendments to VAT Rat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10_it_2.html, 2024. 10. 10., 검색일자: 2024. 10. 17.

- ▶ 이탈리아 의회는 2024년 8월 10일 이후 이탈리아로 거주지를 이전한 적격 고액 자산 보유자가 유리한 세제 혜택을 선택할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단일 대체세(Flat Substitute Tax)를 기존 10만유로²⁹¹⁾에서 20만유로²⁹²⁾로 인상함
 - 이는 이탈리아 내 투자를 강화하고 이탈리아로 고액 자산가들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다음해 12월 31일까지 거래되는 비 식품용 살아있는 말의 공급과 동계 스포츠 강습²⁹³⁾에 부가가치세율²⁹⁴⁾ 5%를 적용함(단 면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함)

[조세동향 24-11호]

- ▣ 이탈리아 각료회의는 2025년 예산법 초안을 승인하며, 디지털 서비스세(이하 DST)와 암호화폐 자산 처분으로 실현된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개정함²⁹⁵⁾
 - ▶ 2024년 10월 16일 기자 회견에서 이탈리아 경제 및 재정 장관은 2025년 예산법 초안에 포함된 주요 세금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자본 이득세) 암호화폐 처분으로 실현된 자본 이득에 대한 대체 세율을 기존 26%에서 42%로 인상
 - (디지털 서비스세(DST) 적용 변경) 2020년부터 적용해 온 기준인 DST의 적용 대상에서 전 세계 매출이 7억 5천만유로,²⁹⁶⁾ 이탈리아 내 매출이 550만유로²⁹⁷⁾ 이상인 기준을 삭제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함

291) 2024년 10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825만원임

292) 2024년 10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9,655만원임

293) 이탈리아 국가올림픽위원회(CONI)가 인정하는 동계 스포츠 연맹등록 회원이 제공하여야 하며 적용할 수 있는 스포츠에는 스키, 스노보드 등이 포함됨

294) 기존 이탈리아 부가가치세는 22%임

295) Tax Note, Italian Budget Delays Bank Deferred Tax Credits, "Strengthens DST," <https://www.taxnotes.com/tax-notes-today-international/budgets/italian-budget-delays-bank-deferred-tax-credits-strengthens-dst/2024/10/17/7m6k0>, 2024. 10. 17., 검색일자: 2024. 11. 18.

296) 2024년 11월 25일 환율 기준 약 1조 1천억원임

297) 2024년 11월 25일 환율 기준 약 80억 7천만원임

라) 동일 납세자 명의 계좌 간 단순 외화 이전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 제외

[조세동향 24-12호]

- ▣ 이탈리아 과세 당국은 동일한 거주자에 의해 보유된 계좌 간 이루어지는 특정 외화 이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 이득(capital gains)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발표함²⁹⁸⁾
 - ▶ 이탈리아 「소득세법(TUIR)」 제67조(1)(c-ter)에 따르면, 외화의 유상 양도(매매)나 예금 또는 당좌 계좌에서의 외화 인출로 발생한 자본 이득은 특정 요건 충족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세무 당국 지침 발표를 통해 동일 납세자 명의로 된 재무 모니터링 대상 계좌 간의 외화 이동은 환전이나 금융 상품 취득 없이 단순 계좌 간 이전일 때 투자 목적으로 이루어진 외화 인출로 보지 않음을 공고함

298) IBFD, "Tax Authorities Clarify Capital Gains Realized from Certain Transfers of Foreign Currency Are Not Subject to Tax," 2024. 12.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2-12_it_1.html, 검색일자: 2024. 12. 16.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1 일본

가 이노베이션 박스 관련 규정 공포

[조세동향 24-07호]

- ▣ 일본 정부는 2024년 6월 21일, 지적재산권 관련 소득에 대한 조세 우대 제도인 이노베이션 박스에 대한 정부 규정을 관보에 공포함²⁹⁹⁾³⁰⁰⁾
 - ▶ 본 제도의 도입은 2024년 3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에 근거함
 - ▶ 특수 관계자 대상이 아닌 적격 지적 재산의 라이선싱(licensing) 또는 국내 판매에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발생 소득 중 국내 자체 개발 부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 이때 국내 자체 개발 부분은 저격 지식재산과 직접 관련된 연구개발비에서 국내 또는 자체 개발 성격이 없는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비율에 따라 결정됨
 - 이에 본 규정은 적격 지식재산 소득에서 국내 자체 개발 부분을 식별하기 위한 세부 계산법을 설명함
 - ▶ 이노베이션 박스의 최대 공제 한도는 총소득의 30%이며, 본 상한선을 결정하기 위한 총소득의 의미 역시 본 규정을 통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
 - ▶ 이노베이션 박스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32년 3월 31일 사이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 가능함

299) 国立印刷局, 「官報」 号外 第149号, p. 43, 2024. 6. 21.(令和 06. 06. 21.)

300) IBFD, "Japan - Japan Enacts New Regulations on Innovation Box Regime," 2024. 6.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6-26_jp_1, 검색일자: 2024. 7. 12.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개정 제안

[조세동향 24-10호]

- ▣ 일본 금융청(FAS)은 러시아가 조세조약의 특정 조항 적용을 일시 중단한 것과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완화를 제안함³⁰¹⁾
 - ▶ 일본은 러시아와 유효한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나, 러시아는 2023년 8월 8일 법령 제585호에서 일본, 한국을 포함한 38개의 비우호적 국가에 대하여 조세조약 일부 조항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함³⁰²⁾
 - 러시아의 조세조약 일부 조항 적용 중단 결정에 따라 일본-러시아 조세조약은 계속 유효하나, 제5-21조(고정사업장 및 대상소득), 제23조(차별금지), 제26조 제1-3항(조세징수협조) 규정의 적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이는 배당금, 이자 및 로열티 소득에 대한 감세율에 영향을 미침
 - ▶ 현행법에 따르면 조세조약 체결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러시아 계열사로부터 대출이자를 받는 일본 금융기관들은 러시아 과세당국에 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일본 과세당국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으로써 양국에서 이중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함
 - ▶ FAS는 2024년 8월 30일 조세조약의 일부 조항이 상대국에서 정지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개정안을 제출함³⁰³⁾

301) IBFD, “Japanese Financial Services Agency Proposes Amending Foreign Tax Credit Rules in Response to Russia’s Suspension of Tax Treaties,” 2024. 9.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9-13_jp_1, 검색일자: 2024. 10. 15.

302) IBFD, “Russia Temporarily Suspends Certain Provisions of 38 Tax Treaties with ‘Unfriendly’ States,” 2023. 8. 8.,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8-08_ru_2%23tns_2023-08-08_ru_2, 검색일자: 2024. 10. 15.

303) 일본 재정부, 「國際情勢を考慮した國際租税に係る所要の措置」,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5/request/fsa/07y_fsa_k_06.pdf, 검색일자: 2024. 10. 24.

2 중국

가 NEEQ³⁰⁴⁾ 거래 주식 배당금, 양도소득 감면 혜택 연장 발표

[조세동향 24-07호]

- ▣ 중국 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7년 말까지 장외 주식 거래소인 National Equities Exchange and Quotations(NEEQ)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 배당금,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연장을 2024년 6월 28일 발표함
 - ▶ 중국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National Equities Exchange and Quotations(NEEQ)에서 거래되는 중소기업의 주식으로부터 개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액 감면을 유지할 것을 발표함
 - 1년 이상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배당금이나 양도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면제
 - 1개월 이상 1년 미만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배당금이나 양도 소득의 50%만 과세 소득에 포함되며 1개월 미만 보유 주식의 경우 배당금이나 양도 소득의 20% 세금 부과
 - 투자 펀드로 발생한 배당금이나 이익에도 적용될 예정임³⁰⁵⁾

나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및 토지 부가세 규정 완화

[조세동향 24-12호]

- ▣ 중국 재무부(MOF), 국가세무총국(STA) 및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2024년 11월 13일 주거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4년 12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및 토지 부가가치세 규정을 완화할 것을 공고함³⁰⁶⁾

304) NEEQ(National Equities Exchange and Quotations): 신삼판(新三板)으로 알려진 이 거래소는 중국의 장외 주식 거래 시장이며 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됨

305) 국가세무총국, 「财政部 税务总局关于延续实施全国中小企业股份转让系统挂牌公司股息红利差别化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32671/content.html>, 검색일자: 2024. 7. 10.

306) Tax Note, "China Lowers Deed Tax and VAT on Residential Purchase," William Hoke,

- ▶ (취득세)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주택의 면적과 소재지 기준을 완화하고 면적 기준을 초과한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인하함
 - (면적) 당초 90㎡ 이하의 주택에만 1%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면적 기준을 140㎡로 완화하였으며,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을 3%에서 1.5%로 인하함
 - (소재지) 당초 1%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대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소재 주택 취득 시에도 1%의 세율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됨
 - (다주택자)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14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며, 140㎡ 이하의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1%의 세율이 적용됨
- ▶ (토지부가세)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해 부과하는 토지 부가가치세³⁰⁷⁾의 최소 사전 징수 세율(the minimum pre-collection rate for land VAT)을 0.5%p 인하하고,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의 구분을 폐지하여 고급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도 기존 토지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음

3

싱가포르

가 2025년 다국적 기업 최저한세 세부 사항 발표

[조세동향 24-07호]

- ▣ 싱가포르 재무부는 필라2 이행을 위한 2025년 다국적 기업 최저한세 주요 예정 사항을 발표함³⁰⁸⁾

<https://www.taxnotes.com/tax-notes-international/legislation-and-lawmaking/china-lowers-deed-tax-and-vat-residential-purchases/2024/11/18/7n59h>, 2024. 11. 18., 검색일자: 2024. 12. 10.

307) 국유토지사용권, 지상건물 및 그 부속물을 양도하고서 취득하는 가치증가액(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wli/rsrchReprtReadPage.do?CTS_SEQ=46556&AST_SEQ=56, 검색일자: 2024. 12. 31.

308) IBFD, "Singapore - Ministry of Finance Consultation: Details of New Multinational Enterprise (Minimum Tax) Bill 2024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Minimum Tax) Regulations 2025," 2024. 6.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

- ▶ 싱가포르 정부는 2024년 6월 10일, 최종 모회사의 통지의무, 관련 소득세법 개정, 다국적기업의 세금 책임 강화, 외국에서 부과된 특정 세금을 공제 및 외국 세액공제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한 다국적기업 최저한세 주요 개정 사항을 담은 법안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함
- ▶ 최종 모회사(The Ultimate Parent Entity, UPE) 통지의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국세청에 등록, 통지 및 필요 정보 제출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다국적기업 추가세(Multinational enterprise Top-up Tax, MTT), 국내 추가세(Domestic Top-up Tax, DTT) 과세액의 10%를 추가 부과 예정임
- ▶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 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 GIR)는 지정된 지역 법인이 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불이행 또는 거짓 정보 제공 시 범죄로 간주함
- ▶ 다국적 기업 추가세(Multinational enterprise Top-up Tax, MTT), 국내 추가세(Domestic Top-up Tax, DTT) 관련 금액은 공제 불가능한 것으로 「소득세법」 개정 예정
 - 재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발표한 날짜에 시행될 예정이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임

나 「경기 부양 인센티브법」 개정안 의회 통과

[조세동향 24-11호]

- ▾ 싱가포르 의회는 2024년 10월 15일 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경기 부양 인센티브법」의 개정안을 통과시킴³⁰⁹⁾³¹⁰⁾

24_sg_1.html, 검색일자: 2024. 7. 4.

- 309) Singapore Parliament,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Relief from Income Tax) (Amendment) Bill (Bill No, 41/2024)," [https://www.parliament.gov.sg/docs/default-source/bills-introduced/economic-expansion-incentives-\(relief-from-income-tax\)-\(amendment\)-bill-41-2024.pdf?sfvrsn=69e55708_1](https://www.parliament.gov.sg/docs/default-source/bills-introduced/economic-expansion-incentives-(relief-from-income-tax)-(amendment)-bill-41-2024.pdf?sfvrsn=69e55708_1), 검색일자: 2024. 11. 18.
- 310) IBFD, "Parliament Passes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Relief from Income Tax) (Amendment) Bill 2024, Amends 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11-14_sg_1, 검색일자: 2024. 11. 18.

- ▶ 본 개정안은 2024년 예산안에서 발표한 ‘개발 및 확장 인센티브(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 이하 DEI)’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하여, 1967년 「경기 부양 인센티브법」의 투자 공제와 관련한 제41조 및 제43조에 대한 개정안을 제공함
- ▶ DEI를 부여받은 회사에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회사의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감면 세율이 2024년 2월 17일 이후부터 5% 및 10%뿐만 아니라 15%까지 확대됨
- 각 세율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차등 적용됨
- ▶ 상기한 DEI 수령자의 소득세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가능함

다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법 관보 발표

[조세동향 24-12호]

- ▣ 싱가포르 정부는 2024년 11월 27일 「2024년 다국적기업(최저한세)법(The Multinational Enterprise (Minimum Tax) Act 2024)」을 정부 관보에 게재함³¹¹⁾
 - ▶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을 적용하는 ‘다국적기업 추가세(multinational enterprise top-up tax, MTT)’와 ‘적격소재국(국내) 최저한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를 시행함
 - ▶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영향을 받는 다국적기업에 적용됨
 - ▶ GloBE 규칙을 구현하기 위한 상세 규칙 및 요건 등을 명시한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추가 정보는 추후 발표할 예정임

311) IBFD, “Singapore Gazettes Multinational Enterprise (Minimum Tax) Act 2024,” 2024. 12.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12-03_sg_1, 검색일자: 2024. 12. 16.

4 인도

가 직접세 세금 조정 제도(VSV) 시행

[조세동향 24-10호]

- ▣ 인도 중앙 직접세 위원회(The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직접세 세금 조정 제도(Direct Tax Vivad Se Vishwas Scheme, VSV)를 시행함³¹²⁾
 - ▶ VSV제도는 2024년 7월 22일 현재 계류 중인 조세 불복 사건에 대하여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으로 분쟁을 종결시키는 제도임³¹³⁾
 - ▶ 인도 CBDT는 2024년 9월 19일 103/2024에서 VSV제도를 도입하였고, 2024년 9월 20일 104/2024에서 VSV제도 시행에 관한 세부적 지침을 발표함³¹⁴⁾³¹⁵⁾
 - ▶ 동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CBDT가 2024년 9월 30일 발표한 4/104 규정에 따라 신고서 및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함³¹⁶⁾
 -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고서 및 약정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그 이후 제출분에 비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임

312) IBFD, “India Publishes Effective Date and Rules for Tax Amnesty Scheme for Settling Disputes,” 2024. 10.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02_in_1.html, 검색일자: 2024. 10. 14.

313) 인도 재정부, “THE FINANCE (NO. 2) BILL, 2024,” https://www.indiabudget.gov.in/doc/Finance_Bill.pdf, 검색일자: 2024. 10. 14.

314) 인도 재정부, “S.O. 4016(E).-In exercise of the powers conferred by sub-section (2) of section 88 of the Finance (No. 2),” 2024. 9. 19., <https://incometaxindia.gov.in/communications/notification/notification-103-2024.pdf>, 검색일자: 2024. 10. 14.

315) 인도 재정부, “G.S.R. 584(E).-In exercise of the powers conferred by section 99 of the Finance (No. 2) Act, 2024 (15 of 2024),” 2024. 9. 20., <https://incometaxindia.gov.in/communications/notification/notification-104-2024.pdf>, 검색일자: 2024. 10. 14.

316) 인도 재정부, “Procedure for making declaration and furnishing undertaking in Form-1 under Rule 4 of The Direct Tax Vivad Se Vishwas Rules, 2024,” 2024. 9. 30., <https://incometaxindia.gov.in/communications/notification/notification-no-4-2024-25.pdf>, 검색일자: 2024. 10. 14.

나 2024~2025년도 「소득세법」에 따른 공정가액 범위 명확화

[조세동향 24-11호]

- ▣ 인도 중앙 직접세 위원회(The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는 2024년 10월 18일 116/2024를 통해 공정가액 범위를 명확히 함³¹⁷⁾
 - ▶ 2024~2025년 기간 중 「소득세법」 제92C조에 따라 결정된 가액과 국제거래 또는 특정 국내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가액의 차이가 도매거래의 경우 1%, 기타 거래의 경우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모두 공정가액으로 간주함³¹⁸⁾
 - 완제품의 매입원가가 총매입원가의 80% 이상이며, 해당 상품의 월말 재고가 해당 거래와 관련된 매출의 10% 이하인 경우를 도매거래로 정의함
 - ▶ 본 개정 사항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때는 소급 적용되지 아니함

5 인도네시아

가 선도 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 연장

[조세동향 24-11호]

- ▣ 인도네시아 재무부(MoF)는 2024년 10월 8일 특정 선도 산업 신규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함³¹⁹⁾
 - ▶ 당초 조세 감면 규정은 MoF 규정 130/PMK.010/2020(PMK-130)에 따라 2024년 10월 9일까지 적용되며, MoF 규정 69/2024(PMK-69)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317) Bloomberg Tax, “India Tax Agency Clarifies Calculation Procedure of Arm’s Length Price Under Income Tax Act for AY 2024-2025,” 2024. 11. 1.,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 /XEUCR8DC000000?bc>, 검색일자: 2024. 11. 12.

318) 인도국세청, “Notification,” 2024. 10. 18., <https://incometaxindia.gov.in/communications/notification-116-2024.pdf>, 검색일자: 2024. 11. 12.

319) IBFD, “Indonesia Extends Tax Holiday Incentive for Pioneer Industries until 31 December 2025,” 2024. 11.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1-06_id_1.html, 검색일자: 2024. 11. 13.

까지 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연장됨

- 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전 규정(MoF 규정, 150/PMK. 010/2018)의 자격 기준을 갖추는 것 외에도 자본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면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자본투자계획을 실행하여야 함³²⁰⁾
 - 자본투자계획에 따른 감면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특정 사업 또는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인 경우, 순이익이 감소하는 신규사업 또는 노동집약산업의 경우, 특별 경제 구역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에 감면 적용이 제한됨
- ▶ 특정 선도 산업에 투자하여 조세 감면 자격을 갖춘 기업은 주요 사업 활동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표 2-III-1>과 같이 조세 감면이 적용됨

<표 2-III-1> 투자 수준에 따른 조세 감면

(단위: IDR, %, 년)

구분	투자수준	면세비율	적용기간
1	1,000억~5,000억 미만 ³²¹⁾	50	5
2	5,000억~1조 미만 ³²²⁾	100	5
3	1조~5조 미만 ³²³⁾	100	7
4	5조~15조 미만 ³²⁴⁾	100	10
5	15조~30조 미만 ³²⁵⁾	100	15
6	30조 이상 ³²⁶⁾	100	20

자료: IBFD, "Indonesia Updates the Tax Holiday Incentive for Pioneer Industries," 2020. 11. 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11-02_id_1%23%20tns_, 검색일자: 2024. 11. 13.

320) IBFD, "Indonesia Updates the Tax Holiday Incentive for Pioneer Industries," 2020. 11. 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11-02_id_1%23%20tns_, 검색일자: 2024. 11. 13.

321) 2024년 11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8억 2,657만원~441억 3,286만원 미만임

322) 2024년 11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41억 3,286만원~882억 6,572만원 미만임

323) 2024년 11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82억 6,572만원~4,413억 2,860만원 미만임

324) 2024년 11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413억 2,860만원~1조 3,239억 8,580만원 미만임

325) 2024년 11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3,239억 8,580만원~2조 6,479억 7,160만원 미만임

326) 2024년 11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조 6,479억 7,160만원 이상임

- ▶ PMK-69에 따라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인도네시아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PMK-69 시행 전 조세 감면 적용대상 시설을 취득한 경우 소득산입 규칙(top-up tax)³²⁷에 따라 추가 과세될 수 있음

327) 해외 자회사 소득이 최저한세 이하로 과세되는 경우, 최저한세율까지의 자회사 소득을 지분비율에 따라 모회사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것

6

뉴질랜드

가 ▶ 경차 유류소비세 도로사용료(RUC)로 전환

[조세동향 24-09호]

- ▣ 뉴질랜드 교통부 장관은 2024년 8월 29일 모든 경차의 유류소비세를 2027년까지 도로사용료(Road User Charges, 이하 RUC)로 전환할 예정임을 발표함³²⁸⁾³²⁹⁾
 - ▶ RUC는 구매한 연료의 양이 아닌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도로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관계없이 도로 유지에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게 됨
 - 현행 유류소비세 제도는 연비가 떨어지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구조이며, 이들은 구형 차량을 운전하는 저소득층인 경향이 있음
 - ▶ 전환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내각에서 통행료 입법에 대한 개혁안을 모색 후 연중 결정을 내려 2025년 권한 부여 입법을 진행할 예정임
 - ▶ 경형 전기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유류소비세는 2024년 4월 1일부터 이미 RUC로 전환됨

나 ▶ 독립계약자 지위 관련 「고용관계법」 개정 계획 발표

[조세동향 24-10호]

- ▣ 뉴질랜드 노동부 장관은 2024년 9월 15일, 2025년 「고용관계법」 개정안 도입을 통해 독립계약자의 지위를 명확히 할 예정임을 발표함³³⁰⁾

328) New Zealand Government, Release - “Revenue Action Plan to support delivering infrastructure sooner,” 2024. 8. 29., <https://www.beehive.govt.nz/release/revenue-action-plan-support-delivering-infrastructure-sooner>, 검색일자: 2024. 9. 10.

329) IBFD, “New Zealand - Government Plans Transition to Road User Charges by 2027,” 2024. 8.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8-30_nz_1, 검색일자: 2024. 9. 20.

330) Beehive.govt.nz, “Increased certainty for contractors coming,” <https://www.beehive.govt.nz/release/increased-certainty-contractors-coming>, 검색일자: 2024. 10. 16.

- ▶ 독립계약자 계약에 명시적으로 서명한 근로자가 나중에 고용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방정부 및 ACT주의 2차 협정에 따른 결과임
 - ▶ 2024년 8월 26일 운전자가 계약서에 독립계약자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법 해석에 따라 직원이라고 판결한 항소법원의 판결³³¹⁾에 따라 발표됨
 - ▶ 깃(gig) 경제 관련 사업체 내에서 근로자 혹은 독립계약자의 신분을 확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과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 행정상의 의의가 있음
- ▣ 개정안에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간주함
- ▶ 근로자가 독립계약자임을 명시한 서면 계약이 존재함
 - ▶ 특정 사업체가 근로자가 경쟁사를 포함한 다른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음
 - ▶ 사업체는 근로자에게 하루 중 특정 시간이나 특정 요일 또는 최소 근무 시간 동안 일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 또한 근로자는 작업을 하청할 수 있음
 - ▶ 근로자가 추가적인 업무나 계약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계약을 종료할 수 없음

다 과세 목적 거주 관련 해석서 초안 발표

[조세동향 24-11호]

- ▣ 뉴질랜드 국세청은 2024년 10월 30일 과세 목적 거주에 대한 해석서인 “PUB00483: Tax residence” 초안을 발표함³³²⁾
- ▶ 본 해석서는 2007년 「소득세법」의 과세 목적 거주 규칙을 설명하고 개인 및 회사의 세무 거주와 신탁과 관련된 거주 의미를 다루며, “IS 16/03: Tax residence”를 업데이트하고 대체함

331) Rasier Operations BV & Ors v. E Tū Incorporated & Anor [2024] NZCA 403 (26 August 2024)

332) IBFD, “Inland Revenue Issues Draft Updated Interpretation Statement on Tax Residence,”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11-12_nz_1, 검색일자: 2024. 11. 18.

- ▣ 뉴질랜드의 거주자로서의 과세 범위와 국외원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 자격의 내용 등을 다루고 있음³³³⁾
 - ▶ 개인의 거주와 관련하여서는 뉴질랜드 내국세 관련 거주자 규정과 뉴질랜드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DTA)에 포함된 거주 조항 간의 관계 등을 확인함
 - 신규 이민자 및 귀국한 뉴질랜드인에게는 과도기적 거주자 규정을 통해 일시적인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을 포함함
 - ▶ 법인의 조세 목적상 거주지와 관련하여 본사의 위치 판단 방법 및 거주지 변경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때 법인에 대한 이중과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DTA보다 BEPS 조치 관련 다자간 협정이 우선할 수 있음
 - ▶ 수익자 혹은 수탁자와 같은 소득 수혜자의 유형과 신탁 관계자의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신탁 소득 관련 과세와 관련됨
 - 뉴질랜드 거주 신탁 관리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비거주 신탁 관리인은 뉴질랜드 소스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일반적인 입장을 수정하여, 수탁자의 세무 거주지에 따라 신탁 관리인의 소득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됨

7 호주

가 국세청 내 필라2 컨설팅 관련 실무단 설치

[조세동향 24-08호]

- ▣ 호주 국세청은 2024년 7월 31일 다국적기업에 글로벌 및 국내 최저한세 시행 관련 컨설팅 지원을 위한 컨설팅 실무단 설치를 발표함³³⁴⁾

333) Inland Revenue, “PUN00483: Tax Residence,” <https://www.taxtechnical.ird.govt.nz/-/media/project/ir/tt/pdfs/consultations/current-consultations/pub00483/pub00483-is.pdf?modified=20241030011128&modified=20241030011128>, 검색일자: 2024. 11. 18.

334) Australian Taxation Office, “Pillar Two Global and Domestic Minimum Tax Working Group,”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business-bulletins-newsroom/>

- ▣ 본 실무단은 협의를 통해 새로운 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행정적 측면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할 예정임
 - ▶ 국내의 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 세금의 평가 및 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양식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새로운 세금 신고서 설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함
 - 호주 소득 포함 규칙 및 과소 이익 규칙 세금 신고서(Australian income inclusion rule and undertaxed profits rule tax return, AIUTR)
 - 국내 최저한세 신고서(Domestic minimum tax return, DMTR)
 - ▶ 각 다국적기업이 필라2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리소스, 시스템 및 프로세스 등을 검토함
 - ▶ 국세청은 공개 자문 및 지침, 고객 참여 접근 방식 등 도입 지원 방식에 대해 논의함

- ▣ 실무단 가입 희망자에 대해 2024년 8월 9일까지 한 페이지 분량의 의향서(EOI)를 제출 받음
 - ▶ 의향서에는 글로벌 및 국내 최저한세 조치와 관련된 가입 지원자의 경험과 지식과 필라2 관련 규정이 지원자의 조직이나 조언자로서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함

나 대규모 납세자 대상 신규 GST 보충 신고 관련 지침 제공

[조세동향 24-10호]

- ▣ 호주 국세청은 2024년 10월 3일, 대규모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GST 보충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³³⁵⁾
 - ▶ 본 신고는 납세자가 연중 주요 GST 관리 방식과 변경 사항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관련 사항 검토 시 자원의 소모를 줄일 수 있게 함

pillar-two-global-and-domestic-minimum-tax-working-group, 검색일자: 2024. 8. 19.
 335) Australian Taxation Office, Compliance and governance, "Supplementary annual GST return," 2024. 10. 3.,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corporate-tax-measures-and-assurance/large-business/compliance-and-governance/supplementary-annual-gst-return>, 검색일자: 2024. 10. 15.

- ▣ GST 보충 신고는 보증 보고서를 받은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작하며, 2024년 6월 30일 이전까지 다음 중 하나를 받은 경우 2024/25 회계연도에 대한 GST 보충 신고 대상이 됨
 - ▶ 상위 100위까지의 GST 보증 보고서(GST Assurance Report)
 - ▶ GST 보증 등급이 포함된 상위 1,000위까지의 결합 보증 검토(Combined Assurance Review) 보고서
 - ▶ 상위 1,000위까지의 간소화된 GST 보증 검토(GST Streamlined Assurance Review)

- ▣ 호주 국세청은 새로운 신고서 작성의 보증 검토를 위해 납세자 일부에게 신고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요청할 예정임
 - ▶ 응답 대상은 상기한 상위 100위권과 1,000위권 납세자 중 소수에 해당함
 - ▶ 보증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 납세자가 최근의 GST 보증 검토에서 설명한 권장 사항, 낮은 보증 분야 또는 위험 신호에 대해 호주 국세청과의 상호 작용 등을 포함하여 취해진 조치
 - 납세자가 GST 관리 수준을 유지 혹은 향상시켰는지 여부, 마지막 GST 보증 검토 이후 GST 통제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사업 또는 시스템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 감사 재무제표와 연간 사업활동 명세서 간의 조정 사항의 존부
 - 납세자가 해당 기간 실질적으로 GST와 관련하여 불확실한 입장을 취하였는지 여부
 - 납세자가 해당 기간 실질적인 GST 관련 오류를 발견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오류가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전 기간과 관련된 실질적인 금액의 세액공제를 해당 기간에 청구했는지 여부

다 필라2 관련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안 승인

[조세동향 24-12호]

- ▣ 호주 정부는 2024년 12월 10일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이하 GloBE 규칙)의 틀을 구현하는 기본 법안들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

은 필라2 관련 주요 사항들을 이행할 것임을 발표함³³⁶⁾³³⁷⁾

- ▶ 호주 정부는 필라2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법안을 승인함
 - 「2024년 조세법(다국적, 글로벌 및 국내 최저한세)(Taxation (Multinational-Global and Domestic Minimum Tax) Act 2024)」
 - 「2024년 조세부과법(다국적, 글로벌 및 국내 최저한세)(Taxation (Multinational-Global and Domestic Minimum Tax) Imposition Act 2024)」
 - 「2024년 재무부 법률개정(다국적, 글로벌 및 국내 최저한세)(Treasury Laws Amendment (Multinational-Global and Domestic Minimum Tax) (Consequential) Act 2024)」
- ▶ 다만 GloBE 규칙의 상세 내용 대부분은 이후 제정될 하위 법률에 포함될 예정임

▣ 이번 승인된 법안들을 통해 연간 글로벌 수익이 7억 5천만유로³³⁸⁾ 이상인 대형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및 국내 최저한세를 적용함

- ▶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호주 거주 다국적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추가 세금을 적용할 수 있게 함
 -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는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는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UTPR)’이 적용됨
- ▶ 또한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호주 실효세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국내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타국의 글로벌 최저한세로 징수되었을 수익만큼을 징수함
 -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336) Australian Taxation Office, “Implementation of a global minimum tax and a domestic minimum tax”, <https://www.ato.gov.au/about-ato/new-legislation/in-detail/international/implementation-of-a-global-minimum-tax-and-a-domestic-minimum-tax>, 검색일자: 2024. 12. 16.

337) IBFD, “Australia Enacts Pillar Two Global Minimum Tax Legislation.” 2024. 12.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12-13_au_1, 검색일자: 2024. 12. 16.

338) 2024년 12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1,464억원임

IV 국제기구

1 OECD

가 필라1 Amount B 문서 및 필라2 행정지침·GloBE 규칙 Q&A 발간

[조세동향 24-07호]

- ▣ 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2024년 6월 17일, 필라1 Amount B 관련 문서를 발표함³³⁹⁾

 - ▶ 필라1 Amount B에 대한 추가적인 문서는 관할국과 관련한 정의규정을 다루고 있음
 - Amount B 지침의 제5.2절의 적격 관할국의 정의(영업비용 교차 검토) 및 제5.3절의 적격 관할국의 정의(데이터 가용성 메커니즘)³⁴⁰⁾
 - Amount B에 대한 포괄적 이행체계의 정치적 약속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대상 관할국의 정의³⁴¹⁾
- ▣ 포괄적 이행체계는 2024년 6월 17일, 필라2와 관련한 행정지침을 네 번째로 발간하고, 질의응답 문서를 통해 추가적인 관련 정보를 제공함

 - ▶ 필라2 행정지침은 모델규정 및 주석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향후 주석서 개정본에 통합될 예정임³⁴²⁾

339) EY, "OECD/G20 Inclusive Framework releases documents on Pillar One Amount B and Pillar Two," 2024. 6. 20., https://www.ey.com/en_gl/tax-alerts/oecd-g20-inclusive-framework-releases-documents-on-pillar-one-am, 검색일자: 2024. 7. 1.

340) OECD, "Statement on the definitions of qualifying jurisdiction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5.2 and section 5.3 of the simplified and streamlined approach," <https://search.oecd.org/tax/beps/statement-qualifying-jurisdiction-definitions-section-5-2-section-5-3-simplified-streamlined-approach.pdf>, 검색일자: 2024. 7. 1.

341) OECD, "Statement on the definition of covered jurisdiction for the Inclusive Framework political commitment on Amount B," <https://search.oecd.org/tax/beps/statement-covered-jurisdiction-definition-inclusive-framework-commitment-amount-b.pdf>, 검색일자: 2024. 7. 1.

- 주요 내용은 이연법인세부채 재계산 규칙에 대한 설명, GloBE 규칙과 회계상 장부 가액의 차이,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의 국가 간 배분, 도관기업을 포함한 기업 구조의 이익 및 조세의 배분, 자산유동화 기구의 취급임
- ▶ 필라2 GloBE 규칙에 대한 질의응답 문서는 이행 관할국의 소득산입규칙, 소득산입 보완규칙,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의 적격 지위 및 적격소재국추가세액 세이프하버의 적격을 판단하기 위한 상호검토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³⁴³⁾
- 전반적인 상호검토 결과 법률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합의된 기간 내에 법률이 발의되지 않아 전환기(transitional)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자격 상실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음
- 포괄적 이행체계는 적용 개시일과 종료일을 포함하여 전환기 자격이 있는 법률을 입법한 관할국의 목록을 OECD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행 관할국 또한 이 목록에 포함된 다른 관할국의 전환기 적격을 인정해야 함

나 BEPS Action 5 유해조세환경 관련 최근 진행 상황 발표

[조세동향 24-09호]

- ▣ OECD는 2024년 8월 27일, 유해조세환경포럼(Forum on Harmful Tax Practices, 이하 FHTP)을 통해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최근 진행상황을 발표하여 각 관할국이 BEPS Action 5의 국제표준에 따라 유해조세환경 해소에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함³⁴⁴⁾
- ▶ BEPS Action 5는 각 관할국의 조세특례제도가 다른 관할국의 과세권에 해로운 영

342)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Administrative Guidance on the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June 2024,"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global-minimum-tax/administrative-guidance-global-anti-base-erosion-rules-pillar-two-june-2024.pdf>, 검색일자: 2024. 7. 1.

343) OECD, "Qualified Status under the Global Minimum Tax - QUESTIONS AND ANSWERS,"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global-minimum-tax/qualified-status-under-the-global-minimum-tax-questions-and-answers.pdf>, 검색일자: 2024. 7. 1.

344) OECD, "Inclusive Framework Members make further progress in addressing harmful tax practices," <https://www.oecd.org/en/about/news/announcements/2024/08/inclusive-framework-members-make-further-progress-in-addressing-harmful-tax-practices.html>, 검색일자: 2024. 9. 4.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며, 조세특례제도가 투명성과 실질적 활동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함(최소 기준)³⁴⁵⁾

- FHTP는 2024년 4월 회의에서 6개의 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함
- 아르메니아 경제자유구역 중 IP(Intellectual Property) 이외의 부문, 불가리아의 톨세, 크로아티아의 톨세 등에 대해 유해하지 않다는 의견 및 크로아티아의 「투자 진흥법」에 대한 검토 필요 의견이 있음
- ▶ FHTP가 검토한 조세특례제도는 현재까지 326개에 달하며, 그중 40% 이상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 중임

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XML 스키마 보고서 발간

[조세동향 24-11호]

- ▣ OECD는 2024년 10월 2일,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이하 CARF)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을 위한 사용자 지침인 XML 스키마 보고서를 발간함³⁴⁶⁾
 - ▶ OECD는 2023년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자(Reporting Crypto-Asset Service Provider)’에게 사용자들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각 과세당국 간 교환하도록 하는 CARF를 승인함
 - 후속 조치인 XML 스키마는 구체적인 데이터 요소와 각 데이터를 설명하는 속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XML 스키마는 과세당국 간의 CARF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관할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국내 보고에도 사용할 수 있음
 - ▶ 보고서는 ‘CARF XML 스키마 제공 정보’ 및 ‘정정(correction)’으로 구성되고, 부록에서 정보교환 다이어그램을 제공함
 - ‘정정’은 정보를 보내는 과세당국이 부정확한 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하는 것임

345) OECD, “Harmful tax practices,” <https://www.oecd.org/en/topics/sub-issues/harmful-tax-practices.html>, 검색일자: 2024. 9. 4.

346) OECD,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XML Schema,”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crypto-asset-reporting-framework-xml-schema_578052ec-en.html, 검색일자: 2024. 11. 4.

2 EU

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행정협력지침 개정에 관한 이사회 지침 채택

[조세동향 24-11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24년 10월 28일, 조세분야의 행정협력에 관한 지침 2011/16/EU을 개정하는 이사회 지침 No. COM (2024) 497을 채택함³⁴⁷⁾

▶ 제안된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됨

- 이사회 지침(EU) 2022/2523³⁴⁸⁾ 제44조에 따른 추가세액 정보신고서에 관한 정보 교환 조항인 제8ae항을 도입함
- 추가세액 정보신고서와 관련된 수정, 규정 준수 및 집행에 관한 협력 조항인 제9a항을 도입함
- 각 회원국의 관할국이 제8항에서 제8ae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정보 교환을 통해 획득한 정보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명시함
- 위원회가 언어적 합의를 포함한 표준 전산 양식을 수립하는 이행 행위를 채택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함
- 첫 번째 보고 회계연도가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관련 역년 또는 보고 기간이라고 명시함

347) Bloomberg Tax, “European Commission Adopts Proposed Council Directive to Amend Directive on Administrative Tax Cooperation,” 2024. 10. 31.,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11K5TR4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OL3RheC9zZWZyY2gvcmVzdWx0cy9jODQ1NmIyMzdjNmU1MmVlMmZhMGY0YzVkNTY3ZDE0YjJdXQ-a62969ce98491cd90ff27be0f4296ad8081abfab&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criteria_id=c8456b237c6e52ee2fa0f4c5d567d14b, 검색일자: 2024. 11. 4.

348) 이사회 지침 2022/2523은 유럽연합 역내 다국적 그룹 및 역내 대규모 그룹에 대한 글로벌 최소세 수준 확보에 관한 지침을 뜻함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4년 제2호

2024년 12월 28일 인쇄

2024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이 영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주)현대아트컴

ISSN 3058-2059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TEL : 044-414-2114(代), www.kipf.re.kr

